

최종보고서

2009. 03

# 수산물 TRQ의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물 TRQ의 효과적 관리방안”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03월

주관연구기관명 : 인하대학교

총괄연구책임자 : 박 민 규

연 구 원 : 이 홍 식

연 구 보 조 원 : 조 옥 희

연 구 보 조 원 : 이 경 숙

연 구 보 조 원 : 서 립

연 구 보 조 원 : 박 상 열

연 구 보 조 원 : 김 경 은

연 구 보 조 원 : 차 민 경



# 요 약 문

## I. 수산물 TRQ 영향분석

### □ 한국의 새우 생산 및 수입

- 한·아세안 TRQ 새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한국 양식새우 생산은 질병 등의 영향으로 2007년 471톤으로 감소, 2008년 2천톤 수준 회복
- 한국 양식새우는 8월에서 11월에 주로 생산되며 활어나 선어 형태로 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소비

### 한국의 새우류 생산현황

(단위 : M/T, 천원)

| 어업       | 품종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
|          |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 일반<br>해면 | 꽃새우   | 2,575        | 9,876,286     | 3,364        | 11,292,102    | 4,272        | 14,885,590    | 3,259      | 10,668,820    | 2,444        | 11,589,933    |
|          | 닭새우   | 595          | 1,517,794     | 742          | 1,115,242     | 772          | 1,389,526     | 595        | 937,585       | 497          | 767,677       |
|          | 대하    | 848          | 17,956,620    | 989          | 18,540,091    | 1,261        | 17,582,682    | 419        | 6,931,383     | 250          | 5,420,314     |
|          | 보리새우  | 132          | 2,882,686     | 282          | 7,143,204     | 215          | 4,515,194     | 178        | 4,030,653     | 246          | 2,991,074     |
|          | 젓새우   | 7,889        | 22,441,266    | 7,352        | 23,391,931    | 7,810        | 25,556,465    | 5,273      | 16,128,706    | 14,762       | 41,267,858    |
|          | 중하    | 414          | 2,796,867     | 834          | 5,628,172     | 980          | 5,629,626     | 783        | 4,474,732     | 1,631        | 6,344,034     |
|          | 소계    | 12,453       | 57,471,519    | 13,563       | 67,110,742    | 15,310       | 69,559,083    | 10,507     | 43,171,879    | 19,830       | 68,380,890    |
| 천해<br>양식 | 대하    | 2,426        | 39,562,507    | 1,399        | 23,295,510    | 1,022        | 14,786,200    | 105        | 1,454,314     | 130          | 2,114,233     |
|          | 흰다리새우 |              |               |              |               | 661          | 10,835,090    | 366        | 5,625,160     | 1,794        | 25,604,623    |
|          | 소계    | <b>2,426</b> | 39,562,507    | <b>1,399</b> | 23,295,510    | <b>1,683</b> | 25,621,290    | <b>471</b> | 7,079,474     | <b>1,924</b> | 27,718,856    |
|          | 생산단가  |              | <b>16,308</b> |              | <b>16,652</b> |              | <b>15,224</b> |            | <b>15,031</b> |              | <b>14,407</b> |
| 총계       |       | 14879        | 97034026      | 14962        | 90406252      | 16993        | 95180373      | 10978      | 50251353      | 21,754       | 96,099,746    |

### □ 한국의 새우 수입현황

- 한국의 새우 수입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침체로 감소
- TRQ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15%

- 품목별로 냉동새우는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냉새우는 0.9%, 가공새우 16%, 냉동새우살 9% 수준
- 아세안 새우 TRQ 물량은 크기 30마리 이하의 대형 위주로 수입되어 대형 수입새우 가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우 수입업체는 대형 새우는 TRQ 물량을 낙찰 받아 수입하고 소형 새우는 관세(20%)를 납부하고 수입

### 한국의 연도별 새우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
| 냉동 새우 |      | 64,309  | 14,490 | 68,305  | 14,922 | 104,616 | 20,968  | 127,092 | 22,063  | 74,587  | 13,005  | -52,505 | -9,058  |
|       | TRQ  |         |        |         |        |         |         |         | 2,251   |         | 3,217   |         |         |
|       | 비율   |         |        |         |        |         |         |         | 10%     |         | 25%     |         |         |
| 새우 살  |      | 43,412  | 9,656  | 46,553  | 10,604 | 60,496  | 12,518  | 83,003  | 15,755  | 76,918  | 17,087  | -6,085  | 1,332   |
|       | TRQ  |         |        |         |        |         |         |         | 1,342   |         | 1,554   |         |         |
|       | 비율   |         |        |         |        |         |         |         | 8.5%    |         | 9%      |         |         |
| 가공 새우 |      | 29504   | 5,181  | 31594   | 5,525  | 43582   | 7,314   | 52023   | 8,501   | 41619   | 6755    | -10404  | -1746   |
|       | TRQ  |         |        |         |        |         |         |         | 306     |         | 1,085   |         |         |
|       | 비율   |         |        |         |        |         |         |         | 4%      |         | 16%     |         |         |
| 신냉 새우 |      | 32368   | 4117   | 36560   | 5675   | 32074   | 5258    | 33631   | 5614    | 17573   | 3,038   | -16058  | -2576   |
|       | TRQ  |         |        |         |        |         |         |         |         |         | 27      |         |         |
|       | 비율   |         |        |         |        |         |         |         |         |         | 0.9%    |         |         |
| 합계    |      | 169,593 | 33,444 | 183,012 | 36,726 | 240,768 | 46,058  | 295,749 | 51,933  | 210,697 | 39,885  | -85,052 | -12,048 |
|       | TRQ  |         |        |         |        |         |         |         | 3,899   |         | 5,883   |         |         |
|       | 비율   |         |        |         |        |         |         |         | 8%      |         | 15%     |         |         |

### □ 영향 분석

- TRQ 물량이 수입되더라도 공급탄력성이 0이므로 국내 생산량의 변화는 모든 품목에서 발생하지 않음
- TRQ 물량 수입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생산금액은 감소
  - 2007년 TRQ 물량이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새우가격은 36원, 생산금액은 14억 원이 감소
  - 한아세안 TRQ 물량이 모두 수입될 경우 이러한 가격 및 생산액 증감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
  - 실제 TRQ 물량이 모두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새우의 경우 가격은 48원, 생산금액은 19억 원 감소 예상
  - 2007년 TRQ 물량 수입에 따른 생산금액 감소는 2006년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새우는 각 2.3%의 생산금액 감소가 발생

### 2007년 낙찰된 TRQ 물량이 수입될 경우의 효과

| 품 목           | 새우     | 가공새우   | 갑오징어  |
|---------------|--------|--------|-------|
| 공급탄력성         | 0.00   | 0.00   | 0.00  |
| 수요탄력성         | -0.23  | -0.83  | 0.00  |
| 생산량(톤)        | 39,597 | 7,810  | 2,933 |
| 소비량(톤)        | 66,616 | 15,080 | 6,158 |
| 순수입량(톤)       | 27,019 | 7,270  | 3,225 |
| 국내가격(원/kg)    | 1,560  | 3,397  | 4,462 |
| TRQ 증분(톤)     | 3,967  | 374    | 2,000 |
| 가격하락(원/kg)    | 36     | 135    | 0     |
| 생산량 감소(톤)     | 0      | 0      | 0     |
| 소비량 증가(톤)     | 210    | 258    | 0     |
| 생산액 감소(백만원)   | 1,423  | 1,054  | 0     |
| 소비지출액 감소(백만원) | 1,206  | 1,566  | 0     |
| 생산자잉여 감소(백만원) | 1,423  | 1,054  | 0     |
| 소비자잉여 증가(백만원) | 1,479  | 1,748  | 0     |

주: 2007년 TRQ는 2007년의 낙찰물량이며 모든 TRQ는 한아세안 FTA의 총 TRQ 물량임.

- TRQ 수입으로 인해 새우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
- 갑오징어의 경우 공급 및 수요 탄력성이 모두 0으로 TRQ 증가에 따른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

### TRQ 물량에 따른 국내경제 효과

(단위: 백만원)

| 경제효과      |      | TRQ 증분 (톤) | 가격 하락 (원/kg) | 생산량 감소 (톤) | 소비량 증가 (톤) | 생산액 감소 | 소비 지출액 감소 | 생산자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증가 |
|-----------|------|------------|--------------|------------|------------|--------|-----------|-----------|-----------|
| 2007년 TRQ | 새우   | 3,967      | 36           | 0          | 210        | 1,423  | 1,206     | 1,423     | 1,479     |
|           | 가공새우 | 374        | 135          | 0          | 258        | 1,054  | 1,566     | 1,054     | 1,748     |
|           | 갑오징어 | 1,351      | 0            | 0          | 0          | 0      | 0         | 0         | 0         |
| 모든 TRQ    | 새우   | 5,300      | 48           | 0          | 280        | 1,902  | 1,615     | 1,902     | 1,977     |
|           | 가공새우 | 2,000      | 722          | 0          | 1,378      | 5,639  | 9,186     | 5,639     | 9,753     |
|           | 갑오징어 | 2,000      | 0            | 0          | 0          | 0      | 0         | 0         | 0         |

주: 2007년 TRQ는 2007년의 낙찰물량이며 모든 TRQ는 한아세안 FTA의 총 TRQ 물량임.

- 계량분석은 국내 HS 코드와 분석에 활용하는 국제 상품분류가 상이(국내 첫 새우와 수입 가공새우 비교)하여 가공새우 분석이 현실과 다르게 나타남
- TRQ 시행 이후 3년 이상 지난 후에 계량분석을 실시하면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II. 제도개선 건의

### □ FTA TRQ 관리 법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농안법에만 있는 수입이익금 등에 대한 정의, 수입추천에 관한 사항,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품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 농안법 및 FTA 이행 특별법 모두 수입이행보증금 귀속 근거 규정, 추천 물량 수입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및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TRQ 수입관리요령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에는 농산물과 수산물 TRQ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7개의 고시 있음
  - WTO TRQ 2개(농산물, 임산물), 한·아세안 관련 고시 2 개, 한·EFTA 관련 고시 2개, 한·칠레가 1개
  - 향후 FTA가 계속 추가될 때 마다 고시를 2개씩 추가할 수 없으므로 WTO와 FTA를 분류하여 고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관리 요령 개정
  - 자세한 내용 부록 참조
  - 수산물 FTA(한·EFTA, 한·아세안) TRQ 관리 요령 통합 관리 필요

### □ 최소 및 최대 응찰 수량 설정

- TRQ 공매를 2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물량을 나눌 경우 300톤이 전체 물량의 40%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 낙찰 수량을 200톤 이하 또는 입찰물량의 일정수준(20-30%)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농산물 품목별 응찰수량 제한 현황

|     | 품목           | 최소응찰수량                            | 최대응찰수량                            |
|-----|--------------|-----------------------------------|-----------------------------------|
| 농산물 | 강낭콩          | -                                 | -                                 |
|     | 양파           | 업체당 최소 200톤 이상                    | 최대 1,000톤까지 응찰 가능                 |
| 임산물 | 대추(건조)       | 최소 응찰수량은 대추(건조) 10톤 이상 톤 단위       | 1개 업체당 최대 응찰수량은 대추(건조) 100톤       |
|     | 미탈각 밤(신선/건조) | 최소 응찰수량은 미탈각 밤(신선/건조) 10톤 이상 톤 단위 | 1개 업체당 최대 응찰수량은 미탈각 밤(신선/건조) 100톤 |
|     | 깐 잣(신선/건조)   | -                                 | -                                 |
| 수산물 | 새우 및 갑오징어    | -                                 | -                                 |



□ 품목별 표준규격품명 개정

- 현행 표준품명규격은 홍다리새우, 흰다리새우,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새우 등 3개 품목이며 규격은 모두 UL, XL, L, M, S, 2S 등 6개
  - 파운드(Lbs) 당 마리 수는 흰다리새우와 가공새우는 같으나 크기가 큰 홍다리새우의 경우 L 규격이 51마리-100마리로 크기가 작은 흰다리새우의 51마리 - 70마리보다 많게 설정되어 새우 수입업자들이 문제 제기
  - 본 연구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방문을 통한 규격확인, 수출업자 면담, 한국 수입업자의 의견 수렴, 관세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표준품명규격안 마련

표준품명·규격 비교 검토

| 크기      | 크기별 거래 새우종류 | 관세청 |         |    | 베트남              |                     | 한국업체          |              |                   |              |          |           |              |              |           |               |
|---------|-------------|-----|---------|----|------------------|---------------------|---------------|--------------|-------------------|--------------|----------|-----------|--------------|--------------|-----------|---------------|
|         |             | B/T | VANAMEI | 가공 | 수출업자 A           | 수출업자 B              |               |              |                   |              |          |           |              |              |           |               |
| 4 under | 블랙타이거       | UL  | UL      | UL | UL<br>(under 15) | LARGE<br>(under 20) | 3XL<br>(6 이상) |              |                   |              |          |           |              |              |           |               |
| 5/6     |             |     |         |    |                  |                     | 2XL<br>(7-10) |              |                   |              |          |           |              |              |           |               |
| 7/8     |             |     |         |    |                  |                     | XL<br>(11-20) |              |                   |              |          |           |              |              |           |               |
| 9/10    |             |     |         |    |                  |                     | L<br>(21-30)  |              |                   |              |          |           |              |              |           |               |
| 11/15   |             |     |         |    |                  |                     |               |              |                   |              |          |           |              |              |           |               |
| 16/20   |             |     |         |    | XL               | XL                  | XL            | L<br>(31-50) | MEDIUM<br>(21-70) | L<br>(21-30) |          |           |              |              |           |               |
| 21/25   |             |     |         |    |                  |                     |               |              |                   | M<br>(31-40) |          |           |              |              |           |               |
| 26/30   |             |     |         |    |                  |                     |               |              |                   | L(51-100)    | L(51-70) | S(91-110) | M<br>(51-90) | S<br>(41-60) |           |               |
| 31/35   |             |     |         |    |                  |                     |               |              |                   |              |          |           |              | M(71-90)     | M(71-90)  | 2S<br>(61-90) |
| 31/40   |             |     |         |    |                  |                     |               |              |                   |              |          |           |              | S(91-110)    | S(91-110) | S<br>(91 이하)  |
| 41/50   | M(101-200)  | 2S  | 2S      |    |                  |                     |               |              |                   |              |          |           |              |              |           |               |
| 51/60   |             |     |         | 기타 | S                | 2S(301이하)           | 3S<br>(91이하)  |              |                   |              |          |           |              |              |           |               |
| 61/70   |             |     |         |    |                  |                     |               |              |                   |              |          |           |              |              |           |               |
| 71/90   |             |     |         |    |                  |                     |               |              |                   |              |          |           |              |              |           |               |
| 91/120  |             |     |         |    |                  |                     |               |              |                   |              |          |           |              |              |           |               |
| 121/150 |             |     |         |    |                  |                     |               |              |                   |              |          |           |              |              |           |               |
| 151/200 |             |     |         |    |                  |                     |               |              |                   |              |          |           |              |              |           |               |
| 200/250 |             |     |         |    |                  |                     |               |              |                   |              |          |           |              |              |           |               |
| 250/300 |             |     |         |    |                  |                     |               |              |                   |              |          |           |              |              |           |               |
| 301 이하  |             |     |         |    |                  |                     |               |              |                   |              |          |           |              |              |           |               |

참고 : 크기는 파운드 당 마리수를 의미

□ 새우 표준규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우 종류·크기별 규격**은 먼저 수입 신고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수입신고 편의를 위해 블랙타이거, 바나메이, 가공의 크기기준 통일
  - 일반적으로 블랙타이거가 바나메이보다 크지만 새우 종류에 따라 크기 구분이 가능하므로 통일하는 것을 정함

- 표준 규격(안)에서는 30 크기 이하의 세부 규격을 **현행 1단에서 4단계로 세분**
  - 30 이하 크기에서 규격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가 수입 수산물 감시 등의 행정 목적 달성기여
  - 91 이상 크기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하여 효율적인 수입관리 도모

**새우 종류 · 크기별 표준품명규격안**

| 크기      | 표준 규격안         |         |     | 현행 관세청 규격  |           |           |
|---------|----------------|---------|-----|------------|-----------|-----------|
|         | B/T            | VANAMEI | 가공  | B/T        | VANAMEI   | 가공        |
| 6 이상    | 2UL            | 2UL     | 2UL | UL         | UL        | UL        |
| 7/8     | UL             | UL      | UL  |            |           |           |
| 9/12    |                |         |     |            |           |           |
| 13/15   | XL             | XL      | XL  |            |           |           |
| 16/20   |                |         |     |            |           |           |
| 21/25   | L              | L       | L   |            |           |           |
| 26/30   |                |         |     |            |           |           |
| 31/35   | M              | M       | M   | XL         | XL        | XL        |
| 31/40   |                |         |     |            |           |           |
| 41/50   |                |         |     |            |           |           |
| 51/60   | S<br>(51-90)   | S       | S   | L(51-100)  | L(51-70)  | S(91-110) |
| 61/70   |                |         |     |            | M(71-90)  | M(71-90)  |
| 71/90   |                |         |     |            | S(91-110) | S(91-110) |
| 91/120  | 2S<br>(91-150) | 2S      | 2S  | M(101-200) | 2S        | 2S        |
| 121/150 |                |         |     |            |           |           |
| 151/200 |                |         |     |            |           |           |
| 200/250 | 3S<br>(151이하)  | 3S      | 3S  | S          | 2S        | 2S        |
| 250/300 |                |         |     |            |           |           |
| 301 이하  |                |         |     |            |           |           |

비고 : 크기는 파운드 당 마리수 기준

- 크기별 규격을 반영한 **새우 표준품명규격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새우 종류를 1개 더 신설하여 홍다리, 흰다리 새우 외에 기타 새우 규격마련
  - 한국 수입 새우의 95%이상이 홍다리·흰다리 새우이지만 바나나 새우, 핑크 새우 등 다양한 종류의 새우가 수입되고 있어 기타 새우 신설
  - 냉동새우살에서 가격이 높고 수입량이 많은 튀김용 새우(Nobashi) 규격을 신설하여 정확한 수입동향 파악 도모

### 새우 표준품명규격안

| 표준품명<br>(한글) | 표준품명(영문)        | 규격<br>번호 | 규격<br>순번 | 필수규격(한글)     | 필수규격(영문)            | 규격값 | 세부분류내용             |
|--------------|-----------------|----------|----------|--------------|---------------------|-----|--------------------|
| 새우           | Shrimps, prawns | 1        | 1        | 홍다리얼룩새우      | Black tiger shrimps | B   | 블랙타이거              |
| 새우           | Shrimps, prawns | 1        | 2        | 흰다리새우        | Whiteleg shrimps    | W   | 바나메이(VANAMEI)      |
| 새우           | Shrimps, prawns | 1        | 3        | 기타           | Others              | O   | 기타                 |
| 새우           | Shrimps, prawns | 2        | 1        | 양식여부         | Farming             | R   | 양식                 |
| 새우           | Shrimps, prawns | 2        | 2        | 양식여부         | Farming             | N   | 자연산                |
| 새우           | Shrimps, prawns | 3        | 1        | 꼬리 유무        | Tail                | ON  | 꼬리 있는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3        | 2        | 꼬리 유무        | Tail                | OFF | 꼬리 제거              |
| 새우           | Shrimps, prawns | 4        | 1        | 초밥 또는 횡감용 여부 | For sushi           | Y   | 초밥 또는 횡감용          |
| 새우           | Shrimps, prawns | 4        | 2        | 초밥 또는 횡감용 여부 | For sushi           | N   | 초밥 또는 횡감용이 아니면     |
| 새우           | Shrimps, prawns | 5        | 1        | 냉동여부         | Freezing            | Y   | 냉동한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5        | 2        | 냉동여부         | Freezing            | N   | 냉동하지 않은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1        | 1Lbs당 마리수    | Size                | 2UL | 6마리아하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2        | 1Lbs당 마리수    | Size                | UL  | 7마리-12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3        | 1Lbs당 마리수    | Size                | XL  | 13마리-2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4        | 1Lbs당 마리수    | Size                | L   | 21마리-3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5        | 1Lbs당 마리수    | Size                | M   | 31마리-5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6        | 1Lbs당 마리수    | Size                | S   | 51마리-9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7        | 1Lbs당 마리수    | Size                | 2S  | 90마리-15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8        | 1Lbs당 마리수    | Size                | 3S  | 151마리이상            |
| 새우           | Shrimps, prawns | 7        | 1        | 튀김용 여부       | Nobashi             | Y   | 튀김용으로 늘려 놓은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7        | 2        | 튀김용 여부       | Nobashi             | N   | 튀김용으로 늘려 놓은 것이 아니면 |

## □ 갑오징어 새우 품목별 표준규격

- 갑오징어는 손질한 것이 손질하지 않은 것과 가격차이가 크고 피레트(마투카사 포함)는 머리와 라운드의 가격차이가 많아 다음과 같이 표준규격안 설정
  - 킬로그램당 마리수가 작을수록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베트남 현지 공장방문을 통한 조사, 한국 수입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5단계 크기 규격 설정

갑오징어 표준품명규격안

| 표준품명(한글) | 표준품명(영문)                       | 규격번호 | 규격순번 | 필수규격(한글)     | 필수규격(영문)      | 규격값 | 세부분류내용         |
|----------|--------------------------------|------|------|--------------|---------------|-----|----------------|
| 갑오징어     | Cuttlefish (Latin : Sepia ssp) | 1    | 1    | 손질하지 않은 것    | Whole round   | R   | 라운드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2    | 손질한 것        | Whole cleaned | C   | 손질된 것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3    | 피레트          | Fillet        | F   | 피레트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4    | 마추카사         | Matsukasa     | M   | 마추카사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5    | 머리           | Head          | H   | 머리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2    | 1    | 초밥 또는 횡감용 여부 | For sushi     | Y   | 초밥 또는 횡감용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2    | 2    | 초밥 또는 횡감용 여부 | For sushi     | N   | 초밥 또는 횡감용이 아니면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3    | 1    | 냉동여부         | Freezing      | Y   | 냉동한 것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3    | 2    | 냉동여부         | Freezing      | N   | 냉동하지 않은 것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1    | kg당 마리수      | Size          | UL  | 1-2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2    | kg당 마리수      | Size          | XL  | 2-3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3    | kg당 마리수      | Size          | L   | 3-4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4    | kg당 마리수      | Size          | M   | 5-7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5    | kg당 마리수      | Size          | S   | 8 이하           |

## □ 소형 갑오징어 HS 코드 세번 분리 검토

- 소형 갑오징어는 표준규격을 만드는 것보다 세번 분리하는 것이 타당
  - 소형 갑오징어는 학명도 다르고 모양, 단가, 거래단위 등이 모두 달라 일반 갑오징어와 세번을 분류하여 운영 필요
- 세번을 분리할 경우 한·아세안 FTA 갑오징어 TRQ 물량 배분에서 갑오징어와 소형갑오징어 물량 배정은 3:7 또는 2:8로 하면 적절

### III. TRQ 참여자 건의사항 검토

#### □ 냉동새우살 TRQ 공매 물량 증대

- 냉동새우살의 공매 낙찰 비율은 100%이며 한국의 전체 냉동새우살 수입에서 TRQ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냉동새우살 물량 확대 필요
- 냉동새우 TRQ 물량 5000톤(HS 6단위 기준) 가운데 냉동새우와 냉동새우살의 비중을 3:2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냉동새우살 물량에 노바시(nobashi) 제품 물량 500톤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 ※ 노바시 제품은 다른 냉동새우살 제품보다 단가가 높아 냉동새우살과 분리하면 냉동새우살 입찰예정가를 낮추는 동시에 냉동새우살 물량이 증대하여 입찰 참여자들의 민원 해결 가능

#### □ 품목 크기별 물량 배분 필요 여부

- 업계에서는 첫째, 관세청 표준품명 규격을 기준으로 한 대, 중, 소 크기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둘째, 세분화 하여 공매를 할 경우 공매 이행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 셋째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
- 현재 TRQ 물량 대부분이 대형 위주로 수입되고 있고 특히 홍다리새우(블랙타이거)는 중형과 소형의 입찰자 없음
- 현지 생산지와 가공공장 상황에 따라 낙찰 받은 크기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행이 어려워지고 수출입조합에서도 크기별 수입 이행여부 확인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
- 크기별 물량을 배분하면 FTA 상대국(큰 새우를 수입하는 베트남 등)에서 FTA 관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업계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 수입업자의 TRQ 수입이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크기별 공매물량 배정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
- 냉동새우의 크기별 물량배분은 문제가 많지만 가공새우의 스시에비, 냉동새우살의 노바시는 같은 세번의 다른 품목보다 단가가 높아 세번을 분리하거나 물량을 별도로 배분하여 공매 실시 필요

## □ 공매시기와 이행 기간

- 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매 실시 필요
  - 베트남 등 아세안국가의 생산시기(5월-11월)를 고려한 이행기간 부여 필요
  - ‘한·아세안 TRQ 관리 요령’ 제6조 제2항의 ‘수급안정을 위한 다음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미리 추천’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상반기 수입물량에 대한 공매를 11월이나 12월에 실시**하면 수입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 국내 새우 생산시기를 피할 수 있어 적극 활용 필요

## □ 예정가격 산정 관련

- 현행 냉동새우 평균 공매납입금은 평균 수입단가를 기초한 관세액의 70-107%

### 한·아세안 수산물 TRQ 공매납입금 현황

(단위 : 톤, 원)

| 품 목 명 | 톤당 평균 공매납입금 |          |      |           |         |         |     |          |      |           |         |         |      |
|-------|-------------|----------|------|-----------|---------|---------|-----|----------|------|-----------|---------|---------|------|
|       | 관세          | 2007     |      |           |         |         |     | 2008     |      |           |         |         |      |
|       |             | 평균단가(\$) |      | 평균<br>납입금 | 관세액     |         | 비율  | 평균단가(\$) |      | 평균<br>납입금 | 관세액     |         | 비율   |
|       |             | 세계       | 아세안  |           | 세계      | 아세안     |     | 세계       | 아세안  |           | 세계      | 아세안     |      |
| 냉동새우  | 20          | 5800     | 6100 | 901,042   | 1078800 | 1171200 | 77% | 5700     | 6000 | 942,872   | 1242600 | 1308000 | 72%  |
| 냉동새우살 | 20          | 5300     | 7700 | 947,338   | 985800  | 1478400 | 64% | 4500     | 4800 | 1,053,424 | 981000  | 1046400 | 101% |
| 가공새우  | 20          | 6120     | 8800 | 1,185,614 | 1138320 | 1689600 | 70% | 6160     | 7200 | 1,186,785 | 1342880 | 1569600 | 76%  |
| 신냉새우  | 20          | 5990     | 6010 |           |         |         |     | 5760     | 5079 | 1,180,517 | 1255680 | 1107222 | 107% |
| 감오징어  | 10          | 3430     | 3440 | 171,483   | 329280  | 330240  | 52% | 3600     | 3680 | 214,972   | 392400  | 401120  | 54%  |

환율 : 2007년 960원/\$ 2008년 평균관세율 1090원/\$로 계산

- 농안법에서는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참기름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 농안법의 수입이익금 징수 근거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첫 번째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는 판매수입금에서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두 번째 방법은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참기름 공매에 적용

###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

| 품목             | 수입이익금 금액산정방법                                                                                                                                                                       |
|----------------|------------------------------------------------------------------------------------------------------------------------------------------------------------------------------------|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율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체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 참기름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 농산물의 경우 수입이익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매가격과 공매납입금 예정가격 산정방법을 농수산물 유통공사 세부요령에서 규정
  - 예정가격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실제차액의 30-50% 수준에서 결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지원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FTA 관련 TRQ 품목의 수입이익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 FTA 지원 특별법에서는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입금'과 '수입이익금'을 징수가능
  - 공매납입금도 관세차액 범위에서 결정되는 수입이익금의 일부이므로 용어사용에 혼란가능
  - 입법론적으로 법의 정의 규정에 수입이익금, 공매납입금, 판매수입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입추천,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품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농안법 및 FTA 이행 특별법 모두 추천 물량 수입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냉동새우살 예정가격

노바시 제품 수입이행 현황(2008년)

(단위 : 천불, 톤)

|              | 총 중량     | 총 금액   | 평균 단가 | 관세액(원)    | 공매납입금 비율<br>(평균납입금/관세액) |
|--------------|----------|--------|-------|-----------|-------------------------|
| 새우살(Nobashi) | 477(30%) | 3,731  | 7.82  | 1,704,760 | 62%                     |
| TRQ 새우살      | 1,554    | 12,094 | 7.78  | 1,696,040 | 62%                     |
| 아세안          | 9,302    | 44,458 | 4.8   | 1046400   | 101%                    |
| 전체           | 17,087   | 76,918 | 4.5   | 981000    | 107%                    |

환율 : 2008년 평균환율 1090원/\$로 계산

- 2008년 냉동새우살 공매평균 납입금 1백 5만원은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냉동새우살 평균단가의 62% 수준
  - 공매납입금액이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임을 감안할 때 입찰참가자들은 40% 내외의 관세차익 가능

□ 가공새우 예정가격 검토

스시에비 제품 수입이행 현황(2008년)

(단위 : 천불, 톤)

|                 | 총중량      | 총 금액   | 평균 단가 | 관세액       | 공매납입금 비율<br>(평균납입금/관세액) |
|-----------------|----------|--------|-------|-----------|-------------------------|
| 스시에비(Sushi Ebi) | 666(61%) | 6,740  | 10.12 | 3,529,856 | 44%                     |
| TRQ 가공새우        | 1,085    | 9,667  | 8.91  | 3,107,808 | 51%                     |
| 아세안 가공새우        | 3,598    | 25,887 | 7.2   | 2,511,360 | 63%                     |
| 전체 가공새우         | 6,755    | 41,619 | 6.2   | 2,162,560 | 73%                     |

환율 : 2008년 평균환율 1090원/\$로 계산

- 스시에비는 전체 TRQ 물량 가운데 61%를 차지
  - 스시에비의 평균단가는 10.12불로 아세안 평균단가보다 3불이 높고 전체 가공새우 평균 단가보다 4불이 높음
- 가공새우는 10%의 부가세를 감안하면 관세액이 냉동새우류보다 매우 높음
  - TRQ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관세차익의 60% 수준을 예정가격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
  - 결국 전체 수입량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설정하거나 아세안 가공새우 수입가



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면 낙찰 불가

- 작은 크기의 새우살을 수입하는 업체를 고려한다면 스시에비와 기타 새우살을 분리하여 공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 신냉새우 예정가격 검토

- 신냉새우 수입은 90%이상이 태국으로부터 수입
  - 베트남의 경우 새우 양식장과 가공공장이 호치민 남부에 집중되어 있고, 가공 공장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하는 데에 7-8시간 걸리고, 정부 당국의 위생증명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냉새우를 수입하는데 애로
  - 신냉새우의 경우 태국이 FTA를 비준할 경우 TRQ 물량이 전량 소진예상

## □ 수입 불이행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금지 규제 검토

-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추천대행기관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
  -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위반 관련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위반 사실이 있을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b>2년 이내의 범위에서</b>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을 후 지체 없이 <b>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b> 하여야 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여러 위반 행위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을 규정
  - 제한사유 가운데 제한 기간이 가장 긴 2년 동안 낙찰을 할 수 없도록 한 위반 행위는 별표 2 제9호의 ‘담합행위를 한 경우’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2억 이상

의 뇌물을 준 경우'임

- 낙찰 받은 TRQ 물량의 수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제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의하여 6개월로 규정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     |
|-------------------------------------------------------------------------------|-----|
| 8. 영 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b>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b>                              | 6월  |
|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 3월  |
|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
|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3월  |
|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1월  |
|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월  |
|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

- 본 연구과정에서 2008년도 수입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8년 8월말까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 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전체 14개 기업 가운데 2개 기업 이외는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
-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미이행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입찰참가를 규정
  - 행정법상의 일반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가능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요령 개정안을 검토
  - 수입미이행이 확정되면 4회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제한
  -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규정

### 미이행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안

| 사유                                         | 미이행 비율 | 수입이행보증금 귀속 비율 | 제한기간 | 비고                                    |
|--------------------------------------------|--------|---------------|------|---------------------------------------|
|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 0             | 0    | - 전쟁,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br>- 수산물 검사지연 불포함 |
|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 97%이상  | 0             | 0    |                                       |
| 3. 기타 사유                                   | 90-96% | 100           | 0    |                                       |
|                                            | 80-89% | 100           | 1회   |                                       |
|                                            | 70-79% | 100           | 2회   |                                       |
|                                            | 50-69% | 100           | 3회   |                                       |
|                                            | 49% 이하 | 100           | 4회   |                                       |
| 4. 담합                                      |        | 100           | 2년   |                                       |

## IV 한·EFTA TRQ 제도 검토

### □ 노르웨이 고등수입 현황

○ 노르웨이는 생산되는 고등어를 전량 수출

#### EFTA 국가 냉동고등어 생산 및 수출

(단위 : 천만 불, 톤)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노르웨이  | 생산량  | 245,723 | 294,643 | 329,679 | 321,619 | 290,121 | 249,319 | 224,035 | 163,294 | 138,366 |
|       | 수출량  | 245,723 | 294,643 | 329,679 | 321,619 | 290,121 | 249,319 | 224,035 | 163,294 | 138,366 |
|       | 수출금액 | 257,236 | 236,705 | 257,867 | 311,729 | 327,145 | 281,898 | 327,304 | 349,481 | 248,381 |
|       | 단가   | 1.05    | 0.80    | 0.78    | 0.97    | 1.13    | 1.13    | 1.46    | 2.14    | 1.80    |
| 아이슬란드 | 생산량  | 10,738  | 21,599  | 33,942  | 24,575  | 13,764  | 19,677  | 22,719  | 13,037  | 17,205  |
|       | 수출량  | 3,362   | 1,461   | 3,259   | 328     | 2,315   | 3,431   | 2,203   | 1,886   | 3,636   |
|       | 수출금액 | 2,174   | 649     | 1,983   | 269     | 1,953   | 2,990   | 2,005   | 1,935   | 3,953   |
|       | 단가   | 0.65    | 0.44    | 0.61    | 0.82    | 0.84    | 0.87    | 0.91    | 1.03    | 1.09    |

자료출처 : FAO Fishstat plus

- 한국은 노르웨이 고등어를 매년 3천-9천톤 수입
  - TRQ 물량 500톤은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의 7-15% 수준

####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 중국   | 2,592  | 7,141  | 1,273  | 3,094  | 3,827  | 5,595  | 1,228   | 841    | 5,069   | 13,855 | 3,841   | 13,014  |
|      |        | 0.4    |        | 0.4    |        | 0.7    |         | 1.5    |         | 0.4    |         |         |
|      | 6.3%   | 16.8%  | 5.3%   | 16.9%  | 11.0%  | 16.2%  | 2.4%    | 1.8%   | 19.3%   | 52.2%  |         |         |
| 일본   | 5,199  | 7,022  | 2,032  | 4,516  | 12,982 | 19,057 | 30,819  | 33,210 | 12,078  | 8,309  | -18,741 | -24,901 |
|      |        | 0.7    |        | 0.4    |        | 0.7    |         | 0.9    |         | 1.5    |         |         |
|      | 12.6%  | 16.5%  | 8.5%   | 24.6%  | 37.4%  | 55.3%  | 60.5%   | 72.9%  | 46.0%   | 31.3%  |         |         |
| 노르웨이 | 13,180 | 8,898  | 7,285  | 3,145  | 9,651  | 4,481  | 14,266  | 7,212  | 7,342   | 3,262  | -6,924  | -3,950  |
|      |        | 1.5    |        | 2.3    |        | 2.2    |         | 2.0    |         | 2.3    |         |         |
|      | 32.0%  | 20.9%  | 30.6%  | 17.1%  | 27.8%  | 13.0%  | 28.0%   | 15.8%  | 28.0%   | 12.3%  |         |         |
| 대만   | 4,186  | 5,864  | 1,045  | 1,331  | 2,197  | 2,522  | 2,033   | 2,555  | 560     | 471    | -1,473  | -2,084  |
|      |        | 0.7    |        | 0.8    |        | 0.9    |         | 0.8    |         | 1.2    |         |         |
|      | 10.2%  | 13.8%  | 4.4%   | 7.3%   | 6.3%   | 7.3%   | 4.0%    | 5.6%   | 2.1%    | 1.8%   |         |         |
| 네덜란드 | 4,829  | 4,092  | 1,179  | 631    | 0      | 0      | 0       | 0      | 673     | 336    | 673     | 336     |
|      |        | 1.2    |        | 1.9    |        |        |         |        |         | 2.0    |         |         |
|      | 11.7%  | 9.6%   | 5.0%   | 3.4%   | 0.0%   | 0.0%   | 0.0%    | 0.0%   | 2.6%    | 1.3%   |         |         |
| 캐나다  | 2,595  | 2,123  | 1,821  | 1,170  | 1,411  | 805    | 1,252   | 983    | 337     | 190    | -915    | -793    |
|      |        | 1.2    |        | 1.6    |        | 1.8    |         | 1.3    |         | 1.8    |         |         |
|      | 6.3%   | 5.0%   | 7.7%   | 6.4%   | 4.1%   | 2.3%   | 2.5%    | 2.2%   | 1.3%    | 0.7%   |         |         |
| 총계   | 41,226 | 42,626 | 23,800 | 18,351 | 34,743 | 34,470 | 50,949  | 45,527 | 26,234  | 26,519 | -24,715 | -19,008 |
|      |        | 0.97   |        | 1.30   |        | 1.01   |         | 1.12   |         | 0.99   |         |         |

자료출처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 □ 관리제도

### ○ 근거 및 관리 고시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물부 고시 제 2008-4호)에 의해 관리

### 한·EFTA 수산물과 농산물 TRQ 비교

| 품목 구분 | HS 번호        | 기준 세율 | 관세율할당 물량 품명 | 관세율할당 물량배정방식 |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 적용수량                                  | 원산지                                          |
|-------|--------------|-------|-------------|--------------|---------------|---------------------------------------------|----------------------------------------------|
| 고등어   | 0303-74-0000 | 10    | 냉동 고등어      | 지정기관배정       |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 | 500톤(6년부터 검토)                               |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
| 치즈    | 0406.90.0000 | 36    | 기타 치즈       | 수입권공매        |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톤, 2011년 이후 부터는 매년 60톤 | 스위스연방                                        |

### ○ 관리방식과 관리기관

- 관세율할당 물량 배정방식은 지정기관배정방식이며, 추천대행기관은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
- 정부에서 고등어에 대한 TRQ 관리방식을 FTA TRQ 물량의 일반적인 관리방식인 수입권공매가 아닌 지정기관 배정방식을 채택한 근거는 협정문 제2.3조 (관세) 제2항과 제3항

#### 제 2.3조 관세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VI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 부과금을 포함하며,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결국 고등어 TRQ 물량에 대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한국국민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등 세금이나 실비수준의 비용만을 징수가능

### ○ 수입 및 판매현황

(단위:box/20kg, 원)

|      | 수입수량   | 판매수량   | 판매대금          | 판매원가                                                                                     | 판매수익        |
|------|--------|--------|---------------|------------------------------------------------------------------------------------------|-------------|
| 2007 | 24,990 | 24,990 | 1,162,230,000 | 1,061,388,139<br>- 구매대금 : 1,007,002,038원<br>- 통관수수료 : 16,702,659원<br>- 냉장료 : 37,683,442원 | 100,841,861 |
| 2008 | 24,990 | 24,990 |               |                                                                                          |             |

○ 수익금 지출 내용

| 일자                 | 내역                                                                                                               | 금액(원)      |
|--------------------|------------------------------------------------------------------------------------------------------------------|------------|
| 2008.04.21 ~ 04.27 | - 브뤼셀수산물전시회 참관 및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업체 업무협의<br>- 노르웨이(베르겐) Austevoll 공장 어획물자동화 시스템 시찰 및 2008년 TRQ 고등어 사업을 위한 현지 업체 사전 탐방 | 16,830,106 |
| 2008.10.24         | - 강원도매시장 어상자 구입비                                                                                                 | 21,120,000 |
| 2008.11.01 ~ 11.02 | - 2008 고등어 축제 후원<br>·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주체하고 조합과 수협중앙회 등에서 후원으로 (사)아태수산 물류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고등어 축제행사 후원금                     | 50,000,000 |
| 2008.10.31 ~11.05  | - 2008 TRQ 냉동고등어 현지 업무 출장                                                                                        | 3,846,970  |

□ 고등어 TRQ 관리제도 검토

○ 관리기관

- 고등어 TRQ 물량을 관리하는 대형선망수합은 고등어 생산자 단체
- 생산자 단체에 의한 TRQ 운영은 WTO TRO 관리방식 중 약 1% 미만을 점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FTA TRQ 관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WTO TRQ의 경우 일부 품목이 농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 의한 관리

○ 고등어 TRQ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충실히 따르려고 한다면 선착순 실수요자 배정이 가장 적합한 관리방식

○ 관리 고시검토

- 고시에 관리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필요
- 지정기관의 수익금 사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도화 필요

□ 지정기관 손실방지 대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농산물 기금관리자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지정기관배정 방식에 의해 외자구매를 할 경우 구매대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출하고 판매대금도 농안기금에 납입
- 고등어 TRQ 물량 구매대금을 수발기금에서 지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등어 TRQ 물량 이행 과정에서 대형선망수협에서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수익금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대형선망수협에 손해 발생가능

- 지정기관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예정가격을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수입의무 이행 이후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처분 필요



## 주 의

1. 이 보고서는 인하대학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이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인용·발표할 때에는 연구진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내용의 일부를 전제하여 인용할 때에는 연구범위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제한적인 전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제 목 차 례

|                                    |     |
|------------------------------------|-----|
| 요 약 문 .....                        | 5   |
| 제1장 서론 .....                       | 31  |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31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32  |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 34  |
| 제2장 TRQ 제도와 한·아세안 TRQ .....        | 36  |
| 제1절 WTO TRQ 제도 .....               | 36  |
| 제2절 FTA 농산물 TRQ 제도 운용 현황 .....     | 47  |
| 제3절 수산물 FTA TRQ 제도 .....           | 51  |
| 제3장 한·아세안 수산물 TRQ .....            | 53  |
| 제1절 새우 생산과 무역 .....                | 53  |
| 제2절 한국의 새우 생산 및 수입 .....           | 64  |
| 제3절 갑오징어 생산 및 무역 .....             | 75  |
| 제4절 TRQ 입찰결과 분석 .....              | 79  |
| 제5절 TRQ 품목 이행 현황 .....             | 86  |
| 제4장 한·아세안 수산물 TRQ 품목의 경제적 효과 ..... | 94  |
| 제1절 TRQ의 경제적 의미 .....              | 94  |
| 제2절 한·아세안 TRQ의 경제적 효과 .....        | 97  |
| 제3절 계량분석의 시사점 및 한계 .....           | 104 |
| 제5장 한·아세안 수산물 TRQ 관리제도 개선방향 .....  | 106 |
| 제1절 수산물 TRQ 공매제도 개선방안 .....        | 106 |
| 제2절 품목별 표준규격품명 검토 .....            | 109 |
| 제3절 건의사항 검토 .....                  | 124 |
| 제6장 한·EFTA TRQ 제도 검토 .....         | 140 |
| 제1절 고등어 생산과 무역 현황 .....            | 140 |
| 제2절 고등어 TRQ 관리제도 개선방안 .....        | 148 |
| 참고문헌 .....                         | 158 |
| 부록 .....                           | 159 |

## 표 목 차

|                                               |    |
|-----------------------------------------------|----|
| [표 2-1] WTO TRQ 관리대상 품목 .....                 | 39 |
| [표 2-2] 농산물 WTO TRQ 관리방식 .....                | 39 |
| [표 2-3] 농산물 국영무역 사업 담당기관 .....                | 40 |
| [표 2-4] 유통공사 외자구매 실적 .....                    | 41 |
| [표 2-5] 품목별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                  | 42 |
| [표 2-6]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실적 .....                   | 43 |
| [표 2-7] 임산물 추천대상품목,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  | 44 |
| [표 2-8] 임산물 공매 이행결과 .....                     | 44 |
| [표 2-9] 농수산물 TRQ 관리를 위한 행정규칙 .....            | 47 |
| [표 2-10] 한·칠레 FTA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      | 48 |
| [표 2-11] 한·칠레 TRQ 물량 및 공매 현황 .....            | 49 |
| [표 2-12] 한·EFTA 스위스 기타 치즈 세율 및 물량 .....       | 49 |
| [표 2-13] 한-EFTA 치즈 공매 결과 .....                | 50 |
| [표 2-14] 한·아세안 농산물 TRQ 품목 .....               | 50 |
| [표 2-15] 강남콩 수입권 공매 현황 .....                  | 50 |
| [표 2-16] 한·EFTA 고등어 세율 및 물량 .....             | 51 |
| [표 2-17] 한-ASEAN FTA 품목별 수산분야 양허현황 .....      | 52 |
| [표 2-18] 한·아세안 TRQ 물량, 세율, 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 | 52 |
| [표 3-1] 세계 새우(Shrimps, prawns) 생산현황 .....     | 53 |
| [표 3-2] 세계 새우 종류별 어획량 .....                   | 54 |
| [표 3-3] 아세안 국가 새우 생산현황 .....                  | 56 |
| [표 3-4] 아세안 국가 새우 생산량 .....                   | 57 |
| [표 3-5] 아세안 주요국가 어선어업 종류별 생산량 .....           | 58 |
| [표 3-6] 아세안 주요국가 새우 생산현황 .....                | 59 |
| [표 3-7] 필리핀과 브루나이 새우 양식현황 .....               | 60 |
| [표 3-8] 아세안 국가의 냉동새우 수출현황 .....               | 61 |
| [표 3-9] 한국의 태국 냉동새우 수입현황 .....                | 62 |
| [표 3-10] 한국의 베트남 냉동새우 수입현황 .....              | 63 |
| [표 3-11] 한국의 인도네시아 냉동새우 수입현황 .....            | 64 |

|                                                  |     |
|--------------------------------------------------|-----|
| [표 3-12] 한국의 새우류 생산현황 .....                      | 65  |
| [표 3-13] 한국의 연도별 새우 수입현황 .....                   | 66  |
| [표 3-14]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 수입현황 .....                 | 68  |
| [표 3-15]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살 수입현황 .....                | 70  |
| [표 3-16] 한국의 국가별 가공새우 수입현황 .....                 | 72  |
| [표 3-17] 한국의 국가별 신냉새우 수입현황 .....                 | 74  |
| [표 3-18] 세계 갑오징어 생산현황 .....                      | 75  |
| [표 3-19] 갑오징어 생산현황 .....                         | 76  |
| [표 3-20] 아세안 국가 갑오징어 생산현황 .....                  | 77  |
| [표 3-21] 한국의 국가별 갑오징어 수입현황 .....                 | 78  |
| [표 3-22] 2007년 TRQ 입찰 현황 .....                   | 79  |
| [표 3-23] 2007년 TRQ 낙찰물량 통관 현황 .....              | 80  |
| [표 3-24] 국가별 2007년 TRQ 낙찰 결과 .....               | 80  |
| [표 3-25] 2008년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 결과 .....        | 81  |
| [표 3-26] 2008년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 차수별 낙찰현황 .....  | 82  |
| [표 3-27] 국가별 2008년 TRQ 낙찰 결과 .....               | 83  |
| [표 3-28] 수입의무 불이행 사유 .....                       | 83  |
| [표 3-29] 수입의무 불이행 사유 .....                       | 85  |
| [표 3-30] TRQ 입찰 참가 업체 현황 .....                   | 86  |
| [표 3-31] 아세안 국가 수출가공 시설 등록현황 .....               | 87  |
| [표 3-32] 2008 TRQ 수입 품목 세부 규격 .....              | 88  |
| [표 3-33] 2008년 냉동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 .....            | 88  |
| [표 3-34] 2008년 새우살 TRQ 수입이행 결과 .....             | 89  |
| [표 3-35] 2008년 가공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 .....            | 89  |
| [표 3-36] 2008년 신냉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 .....            | 90  |
| [표 3-37] 2008년 갑오징어(피렛) TRQ 수입이행 결과 .....        | 90  |
| [표 3-38] 2008년 갑오징어(Baby 갑오징어) TRQ 수입이행 결과 ..... | 90  |
| [표 3-39] 공매 참가기업의 냉동새우 수입현황 .....                | 91  |
| [표 3-40] 10톤 미만 업체별 수입량 .....                    | 92  |
| [표 3-41] 새우살 낙찰 기업체수와 낙찰물량 .....                 | 92  |
| [표 3-42] 10톤 이하 수입 기업의 세부 수입품목 .....             | 93  |
| [표 4-1] 품목별 가격탄력성 .....                          | 101 |
| [표 4-2] 총 TRQ 물량이 수입될 경우의 효과 .....               | 102 |

|                                                      |     |
|------------------------------------------------------|-----|
| [표 4-3] 2007년 낙찰된 TRQ 물량이 수입될 경우의 효과 .....           | 103 |
| [표 4-4] TRQ 물량에 따른 국내경제 효과 .....                     | 104 |
| [표 5-1] 한·아세안 수산물 TRQ 물량 관리 고시 개정안 .....             | 107 |
| [표 5-2] 농산물과 수산물 관리계획 관련 조항 비교 .....                 | 108 |
| [표 5-3] 품목별 응찰수량 제한 현황 .....                         | 109 |
| [표 5-4] 관세청의 새우 관련 표준품명·규격 기재요령 .....                | 110 |
| [표 5-5] 표준품명·규격 비교 검토 .....                          | 111 |
| [표 5-6] 냉동(Frozen, Shell-On Tails) 블랙타이거 가격 현황 ..... | 112 |
| [표 5-7] 미국의 아세안산 블랙타이거 평균 가격과 표준규격 제안 .....          | 114 |
| [표 5-8] 한·아세안 냉동 블랙타이거 TRQ 이행 결과(2008년) .....        | 114 |
| [표 5-9] 냉동(Frozen, Shell-On Tails) 바나메이 가격 현황 .....  | 115 |
| [표 5-10] 미국의 아세안산 바나메이 평균 가격과 표준규격 제안 .....          | 115 |
| [표 5-11] 한·아세안 냉동새우(VA) TRQ 이행 결과(2008년) .....       | 116 |
| [표 5-12] 미국의 베트남 냉동새우 및 새우살 평균 가격 .....              | 116 |
| [표 5-13] 한·아세안 새우살(Nobashi) TRQ 이행 결과(2008년) .....   | 117 |
| [표 5-14] 미국의 아세안산 가공새우 평균 가격과 표준규격 제안 .....          | 117 |
| [표 5-15] 한·아세안 가공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2008년) .....         | 118 |
| [표 5-16] 새우 종류·크기별 표준품명규격안 .....                     | 119 |
| [표 5-17] 새우 표준품명규격안 .....                            | 120 |
| [표 5-18] 갑오징어 상품 종류별 수출가격 .....                      | 122 |
| [표 5-19] 냉동 갑오징어 피렛 규격 및 가격 .....                    | 122 |
| [표 5-20] 갑오징어 표준품명규격안 .....                          | 123 |
| [표 5-21] 소형 갑오징어(Baby cuttlefish) 규격 및 가격 .....      | 123 |
| [표 5-22] 2008년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 결과 .....            | 125 |
| [표 5-23] 냉동새우살 공매 물량 배정 현황 .....                     | 126 |
| [표 5-24] 공매납입금 정의 비교 .....                           | 128 |
| [표 5-25] 한·아세안 수산물 TRQ 공매납입금 현황 .....                | 129 |
| [표 5-26]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 .....        | 130 |
| [표 5-27] 노바시 제품 수입이행 현황(2008년) .....                 | 132 |
| [표 5-28] 스시에비 제품 수입이행 현황(2008년) .....                | 132 |
| [표 5-29] 농산물과 수산물 입찰참가 금기 기간 비교 .....                | 134 |
| [표 5-3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                    | 135 |
| [표 5-3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             | 135 |

|                                             |     |
|---------------------------------------------|-----|
| [표 5-32] 한·아세안 수산물 TRQ 물량 관리 고시 개정안 .....   | 136 |
| [표 5-33] 미이행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안 .....          | 138 |
| [표 6-1] 세계 냉동 고등어 생산 및 수출현황 .....           | 141 |
| [표 6-2] EFTA 국가 냉동고등어 생산 및 수출 .....         | 141 |
| [표 6-3] 한국의 고등어 생산현황 .....                  | 142 |
| [표 6-4] 한국의 고등어 수입현황 .....                  | 143 |
| [표 6-5]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입현황 .....           | 144 |
| [표 6-6] 한국의 신선, 냉장(0302640000) 고등어 수입 ..... | 145 |
| [표 6-7] 한국의 고등어 수출현황 .....                  | 145 |
| [표 6-8]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출현황 .....           | 147 |
| [표 6-9] 고등어 TRQ 물량 비중 .....                 | 148 |
| [표 6-10] 한·EFTA [부속서 V] 제6호 .....           | 149 |
| [표 6-11] 한·EFTA 수산물과 농산물 TRQ 비교 .....       | 149 |
| [표 6-12] 고등어 수입 및 판매현황 .....                | 152 |
| [표 6-13] 공매 수익금 지출 내용 .....                 | 152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3-1] 세계 새우(Shrimps, prawns) 생산현황 ..... | 54  |
| [그림 3-2] 전 세계 새우 생산 중 아세안 새우 생산 비중 .....   | 55  |
| [그림 3-3] 아세안 국가별 새우 생산 추세 .....            | 55  |
| [그림 3-4] 아세안 국가의 냉동새우 수출 추세 .....          | 60  |
| [그림 3-5]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 수입추세 .....           | 67  |
| [그림 3-6]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 수입평균단가 .....         | 68  |
| [그림 3-7] 한국의 냉동새우살 국가별 수입추세 .....          | 69  |
| [그림 3-8] 한국의 국가별 가공새우 수입추세 .....           | 71  |
| [그림 3-9] 한국의 국가별 가공새우 수입단가 .....           | 73  |
| [그림 3-10] 한국의 국가별 신냉새우 수입추세 .....          | 73  |
| [그림 3-11] 갑오징어 생산 추세 .....                 | 75  |
| [그림 3-12] 한국의 국가별 갑오징어 수입추세 .....          | 77  |
| [그림 4-1] TRQ제도의 경제적 의미 .....               | 94  |
| [그림 4-2] TRQ와 실제교역상황 .....                 | 95  |
| [그림 4-3] TRQ와 시장접근이행률 차이 .....             | 96  |
| [그림 4-4] 한·아세안 FTA TRQ 부여 이후 수입증가 .....    | 97  |
| [그림 4-5] TRQ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99  |
| [그림 5-1] 작은 갑오징어(Baby Cuttlefish) .....    | 121 |
| [그림 5-2] 일반 갑오징어 피레트 .....                 | 121 |
| [그림 5-3] 베트남 월별 새우 수출량 .....               | 127 |
| [그림 5-4] 베트남 기업 2007년 수출 실적 .....          | 127 |
| [그림 5-5] 튀김용 새우 .....                      | 131 |
| [그림 5-6] 가공새우(스시에비) .....                  | 133 |
| [그림 6-1] 세계 냉동 고등어 생산 및 수출 추세 .....        | 140 |
| [그림 6-2] 한국의 고등어 생산과 무역현황 .....            | 142 |
| [그림 6-3] 한국과 노르웨이 고등어 생산현황 .....           | 143 |
| [그림 6-4]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출현황 .....         | 146 |
| [그림 6-5] 대중국 고등어 수출입 단가 비교 .....           | 146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할당) 제도에 의한 품목 관리 목적은 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자 보호와 가격안정 그리고 대상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즉 수입차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WTO 체제 아래서 TRQ는 농산물 분야에만 허용되었고 UR 협상에서 공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장접근이 허용된 수산물에는 TRQ를 도입할 수 없었다. 수산물 TRQ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 냉동고등어 500톤에 대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한·아세안, 한·미 FTA에서도 TRQ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아세안 수산물 TRQ 품목은 새우와 갑오징어로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고 한국 새우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고 수입새우는 냉동되어 수입되어 유통된다. 새우는 한국 양식새우의 생산시기인 9월에서 11월까지 수입 신냉새우가 대량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면 한국 생산자에 대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새우 TRQ는 국내 생산자 보호 목적보다는 수입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TRQ 관리 방식 가운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국영무역 방식을 사용하며 수입차익 환수를 위해 수입권 공매에 의한 관리를 한다. 2007년부터 실시된 한·아세안 수산물 TRQ 공매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에 비해 참여자가 많고 소규모 물량을 낙찰 받는 업체가 많았다. 2007년 쿼터 소진율이 61%였으며 2008년 쿼터 소진율은 77%였다. 2009년 2월 진행된 제1차 공매에서는 100% 낙찰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진율 및 낙찰률은 농산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현재까지 한·아세안 수산물 TRQ 공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매 대행기관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아세안 TRQ 품목 수산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한국 수산업의 발전 도모하고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TRQ 물량에 대한 효율적 공매를 통해 국내시장 안정 및 수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 2. 연구 필요성

한·아세안 TRQ 수입권 공매를 2007년 2회, 2008년 3회 실시했다. 2008년에는 2007년보다 공매를 1회 더 많이 하여 쿼터 소진율이 77%까지 향상되어 전년대비 16% 증가했지만 갑오징어와 가공새우의 경우 낙찰률이 68%와 54%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권 공매 입찰 참여자들이 공매제도에 불편을 느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원인 파악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수입자들에게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 2008년 2차 공매부터 ‘냉동새우살 세부입찰규격’을 마련하여 입찰을 실시했으나 동일 HS 코드 내에 상이한 품목규격이 다수 있고 품목규격과 관련하여 TRQ 품목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FTA 수산물 TRQ 제도가 국내 수산업 보호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TRQ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향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국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TRQ 공매를 통해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외국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FTA 고등어 TRQ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정수입기관인 대형선망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통상마찰 회피 및 국내 수산물 가격 안정 역시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먼저 FAO, 무역협회, 관세청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새우, 갑오징어, 고등어 등 TRQ 품목의 생산 및 무역 현황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2008년 낙찰 및 수입이행 결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의 목적은 공매이행 결과 조사를 통해 기업별 주요 수입국가, 수입량, 수입가격, 상품규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주요 수입형태 분석, 품목별 공매 세부 물량 배분 필요성 파악 및 표준규격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관세청에서 수입 수산물 투명과세와 수입신고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새우 관련 3개 품목의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2차 공매에 새우



표준품명·규격을 기준으로 대·중·소 세부 물량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표준품명·규격 제도 자체의 적절성과 세부 물량 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한다.

베트남·태국 수출업자 면담조사를 통해 한국 수입업자들의 수입형태, TRQ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베트남 등의 새우 생산과 수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TRQ 수입 품목의 규격, 현재의 규격별 수입동향, 베트남 현지의 생산 및 무역동향 등을 참조하여 품목별 표준규격과 규격별 TRQ 물량 배분 방법을 연구한다.

TRQ 물량 도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하여 TRQ 품목이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수입권공매 참가자 면담과 설문조사 및 수입 미이행 사유 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낙찰을 받았으나 수입의무 미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사유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한·EFTA 고등어 TRQ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EFTA 국가 가운데 고등어 주요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생산현황, 환율변동, 국내 생산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선망조합이 부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TRQ 제도 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손해) 방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농산물 TRQ를 참고로 하여 수입이익금 극대화 및 수산업발전을 위한 수익금의 다양한 사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 2. 연구방법

먼저 현행 표준품명규격 검토와 세부물량 배정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 받은 80여개 기업의 이행결과를 전수 조사한다.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한 수입을 완료한 업체는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실무에서 업체들은 낙찰물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수입하므로 그 양이 방대하다. 수입이행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수입형태, 선호하는 규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수입업체, 수출국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은 수산물 TRQ 제도 시행으로 인한 수출국의 영향과 향후 공매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베트남 등의 수출·유통업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인터넷·서면·이메일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현지조사에는 한국 수입업자의 협조를 받아 대형 수출가공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농산물 TRQ 제도 조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관련 기관을 방문 조

사하며 계량분석을 통해 TRQ 도입이 해당 품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국내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한·EFTA 고등어 공매제도 조사를 위해 공매 참관 및 관계자 면담을 하고 공매 고등어의 유통형태 및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입 고등어의 주요 수요자 및 수요지역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WTO TRQ에 대한 연구는 미국 농무부(USDA) 소속 경제조사부 담당 David Skully의 자료가 많이 있다.<sup>1)</sup> 한국의 TRQ 연구에서는 대부분 Skully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sup>2)</sup>

농산물에 대한 TRQ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진교 외(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3)</sup> 이 연구는 TRQ 제도 전반과 우리나라 농업 TRQ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WTO DDA의 TRQ 협상을 고려하여 결론부분에서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국내생산이 미미하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TRQ 관리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국내의 가격차의 축소로 수입차익 환수라는 국영무역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수입자격제한, 경쟁 제한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유사품 및 관련제품을 고려한 수입관리 방식의 채택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고추와 마늘과 같은 주요 양념채소류는 가격안정을 위해서 유통공사에 의한 국영무역 방식과 수입차익환수를 위한 수입권공매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WTO 농산물 TRQ 제도와 DDA TRQ 협상 동향에 관한 연구는 임정빈 교수의 「농산물 관세할당제도의 국제적 이행실태와 WTO 규정」(2005)이 있다. 이 연구는 DDA 협상에서 TRQ 제도가 시장 지향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율이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국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수산물에 대한 TRQ 연구는 박민규(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수산물에 대

1) Skully TRQ에 대한 자료는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rs.usda.gov/Briefing/WTO/trq.htm>> 참조.

2) 임정빈·이재욱·어명근. 2000.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Skully W. David, The Economics of TRQ Administration, working paper #99-6, IATRC, 1999.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3) 서진교 외,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7.

4) 임정빈, 「농산물 관세할당제도의 국제적 이행실태와 WTO 규정」, 통상법률 통권 제62호, 2005. 4.

한 TRQ가 시행되고 나서 바로 연구에 착수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TRQ 선행 연구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과 농산물의 차이점이 있어 농산물 TRQ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산물 TRQ는 WTO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지만 수산물의 경우 일반상품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인 'GATT'의 적용을 받는다. 수산물은 UR 협상 때 모든 품목을 관세로 양허 하였고 WTO 체제에서 TRQ 품목이 전혀 없다. 따라서 WTO 'Stand still' 원칙상 새로이 물량을 제한하는 TRQ를 도입할 수 없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TRQ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TRQ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WTO 농업협정과 DDA 협상에 의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TRQ 제도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산물 TRQ는 개별 국가와의 FTA 결과로 도입된 것이며 이러한 TRQ 제도가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개별 회원국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 제2장 TRQ 제도와 한·아세안 TRQ

### 제1절 WTO TRQ 제도

#### 1. 시장접근 물량과 TRQ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세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의하면 번식용 젖소·육우·기타 소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시장접근물량(1,067두) 이내’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9.1%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 품목번호             | 품 명                | 시장접근물량 | 세율(%)     |           |
|------------------|--------------------|--------|-----------|-----------|
|                  |                    |        | 시장접근 물량이내 | 시장접근 물량초과 |
| 010210 : 10 : 00 | 젖소(번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 1,067두 | 0         | 89.1      |
| 010210 : 20 : 00 | 육우(번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        | 0         | 89.1      |
| 010210 : 90 : 00 | 기타 소(번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        | 0         | 89.1      |

이와 같이 시장접근(market access)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쿼터내 세율(in-quota tariff)이 적용되고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쿼터밖세율(out-quota tariff)이 적용되는 이중 관세구조가 TRQ(tariff rate quota) 제도이다.

TRQ 제도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쌀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를 통해 수입자유화가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일정 품목에 대하여 국내 시장 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의무적으로 수입하여 수출국의 개방 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2004년까지의 UR농산물 협정 이행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최소 시장접근물량(MMA)과 이행 기간 내내 수입물량이 고정되어 있고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현행시장접근물량(CMA)으로 나뉜다.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면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시장접근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하면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들은 시장접근 물량을 경쟁적으로 수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시장접근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

## 2. TRQ품목 수입관리

### 가. 근거 법률

TRQ 품목 수입이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이다. 농안법 제15조에서는 농산물의 수입추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수입이익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3호)」(이하 ‘WTO TRQ 고시’라 한다)을 만들어 TRQ 물량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WTO TRQ 고시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세부요령이나 입찰을 할 때마다 공매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쌀, 보리, 땅콩, 대두, 팥(녹두), 메밀 TRQ 물량은 「양곡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제12조에서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양허세율)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양곡(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

향에서는 ‘수입이익금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WTO TRQ 품목 관리 방식

선행연구에 의하면 WTO TRQ 품목 관리는 실행관세(applied tariff), 선착순(FCFS: First-come, first served), 수입허가제도(Licences on demand),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Historical importer), 경매방식(Auction),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 생산자단체에 의한 운영(Producer group)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5)</sup>

WTO 회원국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RQ 관리 방식은 실행관세에 의한 관리로 전체 TRQ 품목의 50%이상이 실행관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실행관세에 의한 관리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물량에 관계없이 하나의 관세율만을 적용하여 TRQ 관리제도라기보다는 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국들은 필요시 높은 세율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지만 실제 쿼터 밖 물량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행관세에 의한 관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선착순 배정이며 그 다음은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이다. 이러한 TRQ 관리 방식은 한국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차이가 있는데 경매방식은 수입권 공매이며, 생산자 단체에 의한 운영, 국영무역은 지정기관에 의한 운영이다. 선착순,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은 실수요자 배정방식에 해당한다.

WTO에 따르면 세계 평균 TRQ 소진율은 60%이며 한국 농산물의 TRQ 소진율은 70%이다.<sup>6)</sup> 한국의 TRQ 관리방식에 따른 소진율은 국영기업에 의한 방식이 9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과거실적과 혼합방식에 의한 관리로 83%이며 생산자 단체가 81%, 실행관세가 49%, 공매에 의한 방식이 33%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 WTO TRQ 관리대상 품목은 63개 품목(군), HS 10단위로 190개 품목에 대해 TRQ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sup>7)</sup> 1988-1990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있다고 해도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었던 품목에 설정되었던 MMA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39개가 있다. 3% 이상 수입되던 품목에 설정하였던 CMA 관련 품목은 대두, 녹두 등 24개 품목이다.

5) 서진교 외 앞의 연구보고서 34쪽.

6) 서진교 외 앞의 연구보고서 43쪽.

7) 박동규, 「콩 생산안정 및 TRQ 물량 관리방안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7, 39쪽 이하 인용.

[표 2-1] WTO TRQ 관리대상 품목

| 최소시장접근(MMA) 품목                                               | 현행시장접근(CMA) 품목                    |
|--------------------------------------------------------------|-----------------------------------|
| 쌀, 마늘, 양파, <b>갯(4)</b>                                       | 참깨(1)                             |
| 오렌지, 감귤류, 연유, 전지분유, <b>밤, 대추(7)</b>                          |                                   |
| 보리, 종유, 종돈, 골분, 녹차, 맥아,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13) | 종계, 유장, 버터, 맥주맥, 생사, 옥수수 등(9)     |
| 감자, 조란, 잠종, 묘목류, 종자용 감자, 고구마, 조 등(10)                        | 매니옥펠리트, 종자용옥수수, 감자분, 인조꿀, 누에고치(9) |
| 생강(1)                                                        | 땅콩, 메밀(2)                         |
| 고추(1)                                                        | 대두, 녹두/팥(2)                       |
| 천연꿀, 참기름(2)                                                  | 탈지분유(1)                           |
| 밀전분(1)                                                       | -                                 |
| 39                                                           | 24                                |

주: ( )내는 품목수. 갯, 밤,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 자료: 농림부 농업협상과, WTO 농업협상업무자료(2004). 박동규(2007) 「콩 생산안정 및 TRQ 물량 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다. 한국의 농산물 WTO TRQ 관리 방식**

‘WTO TRQ 고시’에 따르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법에는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배정 방식이 있다.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는 일반 내수용 물량을 지정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고, 실수요자 배정은 민간이 일반내수용, 사료용, 종자용, 종축용, 의약품용 등의 7개 용도로 사용할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이다. TRQ 품목 관리방식은 1개의 품목에 물량을 나누어 적용할 수도 있고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의 세 방식에 의하지 않는 민간의 수입은 고율관세(증가세 또는 종량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로이 수입이 가능하다.

[표 2-2] 농산물 WTO TRQ 관리방식

| 총계             | 품목                                                                     | 수입관리기관            | 비 고                                     |                                           |
|----------------|------------------------------------------------------------------------|-------------------|-----------------------------------------|-------------------------------------------|
| 지정기관배정(5품목)    | 쌀, 마늘, 양파, 참깨                                                          | 농림부, 유통공사         | 지정 기관이 수입 판매 및 수입 이익금 징수                |                                           |
| 수입권 공매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오렌지, 감귤류,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농협, 유통공사          | 수입권 경매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야 수입 가능 |                                           |
| 실수요자 배정 (41품목) | 자격 제한 (22품목)                                                           | 보리, 종유, 종돈, 골분 등  | 유가공협회, 사료 협회, 단미사료협회, 종축개량협회            | 국내산구매, 가공시설확보, 수입실적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배정 |
|                | 신청순 (19품목)                                                             | 고구마, 감자, 종자류, 묘목류 | 종자관리소, 대한장사회                            | 신청순으로 물량 배정                               |
| 혼합 방식 (10품목)   | 지정기관+ 수입권공매(3품목)                                                       | 생강, 땅콩, 메밀        | 유통공사                                    | 국영무역방식이나 일부 물량은 공매제로 운영                   |
|                | 지정기관+ 실수요배정(3품목)                                                       | 고추, 녹두/팥, 대두      | 유통공사                                    | 국영무역방식이나 일부 물량은 실수요자 배정                   |
|                | 수입권공매+ 실수요배정(3품목)                                                      | 천연꿀, 참기름, 탈지분유    | 유통공사, 농협                                | 수입공매제방식이나 일부물량은 실수요자 배정                   |
|                | 자격제한+ 신청순배정(1품목)                                                       | 밀전분               | 농협중앙회, 의약품수출입협회                         | 수입실적기준 및 신청순 혼합운영                         |

자료: 농림부 농업협상과, WTO 농업협상업무자료(2004) 재구성

다음에서 「농산물 시장접근량 양허관세 수입관리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RQ 관리 대상 품목 가운데 잣, 밤, 대추 등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1) 지정기관 배정(국영무역)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TRQ 수입권을 갖고,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차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정한 수입지정기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수입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된다. 수입지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기금에 적립하여 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하여 국내 수급안정 및 생산농가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영무역사업 수익금은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 귀속시켜 농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구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관리요령 제15조). 농안법 제15조 제4항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대상농산물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는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이며,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오렌지·감귤류로 규정하고 있다. 쌀, 보리, 땅콩, 대두, 팥(녹두), 메밀은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정기관배정』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2-3] 농산물 국영무역 사업 담당기관

| 기관명           | 취급품목                                         |
|---------------|----------------------------------------------|
| 농림수산물식품부      | 쌀, 보리                                        |
| 농수산물유통공사      | 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대두, 팥(녹두), 메밀, 인삼 |
| 농협중앙회(관광유통센터) | 천연꿀                                          |
| 제주감귤협동조합      | 오렌지*, 기타 감귤류                                 |

\* 관세가 동등해져 오렌지 국영무역 종료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천연꿀 100톤은 한국관광용품센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을 하고 농협중앙회가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용품센터에서는 매년 5회 정도 분할 수입하고 있으며 일반관세 243%이고 TRQ 관세가 20%이기 때문에 매년 TRQ 물량 전량을 이행을 하고 있다.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오렌지는 TRQ 관세와 양허관세가 동등해져 더 이상 국영무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타 감귤류는 양허관세(144%)와 TRQ 관세(50%) 차이가 있어 외자도입방식에 의한 공매를 하고 있으나 기타 감귤류의 국내 수요가 없어 2005년부터 수입을 하고 있지 않다.

다음 표는 유통공사 홈페이지에는 국영무역 공고와 낙찰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쌀의 경우 2007년에는 9회 공고를 하였고 2008년에는 14회 공고를 하였다. 참깨는 2007년에는 6회, 2008년에는 13회 실시하였다. 대두는 2007년에 6회, 2008년에 10회 실시하였다.

[표 2-4] 유통공사 외자구매 실적

| 년도 | 품목   | 공고<br>횟수 | 물량               |                   |                  |                  |                  |                    |                 | 낙찰량     | 잔량     | 낙찰금액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07 | 건조양파 | 2        | 800.0            | 326.0             |                  |                  |                  |                    |                 |         | 1,126  |              |               |
|    | 땅콩   | 1        | 907.3            |                   |                  |                  |                  |                    |                 |         | 907.3  |              | 876,954.0     |
|    | 메밀   | 1        | 828              |                   |                  |                  |                  |                    |                 |         | 828    |              | 311,528.0     |
|    | 참깨   | 6        | 6,000            | 5,000             | 4,000.0          | 6,000            | 4,500.0          | 500.0              |                 |         | 26,000 |              | 22,796,995.0  |
|    | 신선생강 | 1        | 500              |                   |                  |                  |                  |                    |                 |         |        |              | 197,500.0     |
|    | 쌀    | 9        | 68,824<br>47,489 | 47,960<br>17,863  | 51,070           | 67,824           | 47,018           | 31,626             | 88,989          | 55,897  |        |              | 36,770,116.6  |
|    | 고추   | 5        | 2,000            | 1,500             | 1,500.0          | 1,533            | 200.0            |                    |                 |         | 6,733  |              | 15,551,682.0  |
|    | 신선마늘 | 5        | 1,500            | 3,000             | 4,000.0          | 3,967            | 4,967.0          |                    |                 |         | 16,594 |              | 8,694,003.0   |
|    | 건조마늘 | 1        | 750              |                   |                  |                  |                  |                    |                 |         | 750.0  |              | 817,250.0     |
|    | 대두   | 6        | 25,000           | 21,000            | 1000             | 3000             | 21000            | 3000               |                 |         | 28,000 |              | 17,378,060.0  |
| 팥  | 6    | 3,000    | 4,000            | 3,000.0           | 2,000            | 3,000.0          | 3,100.0          |                    |                 | 17,100  | 1,000  | 25,809,920.0 |               |
| 08 | 신선양파 | 4        | 2,000            | 2,000             | 8,500.0          | 3,500            |                  |                    |                 |         | 16,000 |              | 5,039,110.0   |
|    | 땅콩   | 2        | 907.3            | 407.3             |                  |                  |                  |                    |                 |         | 907.3  |              | 845,394.1     |
|    | 메밀   | 1        | 828              |                   |                  |                  |                  |                    |                 |         | 828    |              | 381,224.0     |
|    | 참깨   | 13       | 3,500<br>6,000   | 3,200<br>5,000    | 1,500.0<br>6,000 | 3,000<br>6,629.0 | 1,000.0<br>4,129 | 1,500.0<br>1,085.0 | 4,000           |         | 37,214 | 2,700        | 76,737,863.1  |
|    | 신선생강 | 2        | 500              | 500               |                  |                  |                  |                    |                 |         | 500.0  | 500          | 336,500.0     |
|    | 쌀    | 14       | 22,608<br>87,119 | 68,824<br>2,000   | 65,156<br>16,191 | 58,453<br>86,408 | 72,961<br>77,340 | 61,358<br>2,774    | 36,947<br>6,266 | 310,762 |        |              | 275,561,855.7 |
|    | 고추   | 6        | 1500             | 2504              | 1800             | 800              | 933              | 3000               |                 |         | 9,829  |              | 17,155,305.9  |
|    | 신선마늘 | 2        | 3,467            | 2,000             |                  |                  |                  |                    |                 |         | 3,467  |              | 1,278,873.0   |
|    | 건조마늘 | 2        | 1,620            | 812.0             |                  |                  |                  |                    |                 |         | 2,432  |              | 2,137,953.7   |
|    | 대두   | 10       | 150,000<br>3,000 | 125,000<br>50,000 | 100,000<br>3,000 | 20,000<br>21,000 | 25,000           | 25,000             | 75,000          |         | 66,400 |              | 43,182,210.0  |
|    | 팥    | 7        | 3,000            | 3,000             | 3,000.0          | 3,000            | 3,000            | 1,500              | 1,100           |         | 15,400 | 3,200        | 13,987,572.0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내용 정리

## 2) 수입권 공매

수입권공매는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TRQ 수입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수입권 공매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주최하는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수입한다.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이다. 천연꿀 수입권 공매는 기존 축협중앙회에서 하던 것이 조직 통폐합이 되어 농협중앙회에서 전체 TRQ 물량 420톤 가운데 지정기관 배정방식에 의한 100톤을 제외한 320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2-5] 품목별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 기관명      | 취급품목                                              |
|----------|---------------------------------------------------|
| 농수산물유통공사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오렌지, 감귤류 |
| 농협중앙회    |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서 TRQ 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차익이 예상되는 품목은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권 공매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수입권 전매는 금지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차익(Import Mark-up)<sup>8)</sup>의 일부를 농안기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고액납입 희망자 순으로 수입권을 부여하는데, 이 경우 낙찰자는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 판매를 할 수 있다. 낙찰자가 낙찰 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보증금으로 제시된 낙찰대금 총액의 10%는 관련 기금에 귀속되며, 3년간 수입권공매 입찰을 금지시킬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 대상 품목은 참깨(37,500), 땅콩(4,000), 양파(5,000), 생강(1,360), 메밀(500), 참기름(653.5), 인삼(56.8) 등 7품목이다. 품목별 입찰시기는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다음 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2007년과 2008년의 수입권공매 실적이다. 공매횟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참깨로 2007년에 8회 2008년 5회였다. 참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공매 횟수는 3회 이하이다. 2007년 건조양파 3회 신선양파 1회 등 양파 4회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2회 이하였다. 신선양파, 신선 생강 등 신선 품목과 건조 품목의 구분은 그 해의 작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물량을 결정한다.

8) 수입차입금에 대한 정의는 GATT 부속서 I 해석 및 보충규정 제17조 관하여(Ad Article XV II)에 나와 있으며 '제17조 제4항 (b)에서 수입차익이란, 수입상품의 수입독점가격(내국세, 운송, 유통, 구입, 판매와 가공에 따른 부대비용과 적절한 이윤 제외)이 국내수입비용을 초과하는 차액(폭, margin)'을 말한다.

[표 2-6]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실적

| 년도 | 품목   | 광고<br>횟수 | 물량     |        |        |        |       |       |       |       | 낙찰량     | 진량    | 낙찰금액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07 | 신선양파 | 3        | 5,000  | 4,460  | 2,170  |        |       |       |       |       | 3,270.0 | 8,360 | 179,380,000    |
|    | 건조양파 | 1        | 139    |        |        |        |       |       |       |       |         |       |                |
|    | 땅콩   | 2        | 2,000  | 2,036  |        |        |       |       |       |       | 4,036.3 |       | 978,300,760    |
|    | 메밀   | 1        | 500.0  |        |        |        |       |       |       |       | 500.0   |       | 404,510,000    |
|    | 참깨   | 8        | 17,500 | 3,618  | 21,608 | 15,696 | 8,412 | 7,911 | 7,659 | 5,465 | 31,215  |       | 55,558,541,698 |
|    | 신선생강 | 2        | 1,360  | 169    |        |        |       |       |       |       | 1,360.0 |       | 1,411,702,000  |
|    | 인삼   | 2        | 56.8   | 6.8    |        |        |       |       |       |       | 56.8    |       | 207,038,000    |
|    | 참기름  | 2        | 653.5  | 370.4  |        |        |       |       |       |       | 927.5   | 96.4  | 2,325,074,500  |
|    | 감자   | 1        | 6,270  |        |        |        |       |       |       |       | 2,344   |       | 1,117,650,000  |
| 08 | 인삼   | 1        | 56.8   |        |        |        |       |       |       |       | 56.8    |       | 236,000,000    |
|    | 신선양파 | 2        | 5,000  | 1,500  |        |        |       |       |       |       | 6,500.0 |       | 1,539,023,000  |
|    | 땅콩   | 2        | 2,000  | 2,000  |        |        |       |       |       |       | 4,000.0 |       | 1,493,454,000  |
|    | 메밀   | 1        | 500    |        |        |        |       |       |       |       | 500.0   |       | 493,152,000    |
|    | 참깨   | 5        | 17,500 | 22,500 | 13,374 | 12,528 | 7,024 |       |       |       | 33,099  |       | 41,969,016,178 |
|    | 신선생강 | 2        | 1,360  | 528    |        |        |       |       |       |       | 1,360   |       | 1,419,982,800  |
|    | 참기름  | 2        | 653.5  | 379.5  |        |        |       |       |       |       | 274.0   |       | 703,197,984.0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광고 내용 정리

### 3) 실수요자 배정

“실수요자배정”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TRQ 수입권을 수입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순서별로 배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입차익의 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 4) 혼합방식

앞의 방식 중에서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8년 대두 시장접근물량 295천톤은 국영무역 270천톤, 실수요자배정 25천톤으로 각각 운용했다.

#### 라. 임산물 WTO TRQ 품목 관리

임산물 TRQ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임산물 시장접근물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산림청 고시 제2008-178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먼저 임산물 양허관세 추천대상 품목은 잣, 밤, 대추이다. HS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6개 품목이며 모두 산림조합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다. 임산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은 잣이 2009년부터 지정기관 배정과 수입권 공매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

으며 밤과 대추는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허관세 추천 대상 품목 가운데 2001년에는 미탈각 밤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권공매가 진행된 품목은 밤과 대추이며, 잣은 2009년 최초로 수입권공매를 실시하였다. 잣은 2008년까지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공매실적이 없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2009년부터 수입권공매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한 잣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보전을 해줄 방법이 없고 WTO 수입이행 보고 관계로 수입권 공매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권 공매의 경우에도 수입 잣이 대부분 냉동 잣 형태로 들어와 입찰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농산물과 달리 분기별로 공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재공매 규정은 없으나 매년 2-3회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표 2-7] 임산물 추천대상품목,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단위 : 톤)

| 품목구분 | HS번호         | 품 명                 | 물량                           | 양허관세적용물량<br>배정방식             | 양허관세추천<br>대행기관 |
|------|--------------|---------------------|------------------------------|------------------------------|----------------|
| 잣    | 0802 90 1010 |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 6.4                          | 혼합방식운용<br>(지정기관배정,<br>수입권공매) | 산림조합<br>중앙회    |
|      | 0802 90 1020 |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 8.4                          |                              |                |
| 밤    | 0802 40 1000 |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 2,170<br>(‘05-’06<br>탈각 88톤) | 수입권 공매                       | 산림조합<br>중앙회    |
|      | 0802 40 2000 |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                              |                              |                |
| 대추   | 0810 90 3000 | 대추(신선)              | 259.5                        | 수입권 공매                       | 산림조합<br>중앙회    |
|      | 0813 40 2000 | 대추(건조)              |                              |                              |                |

다음 표는 임산물 수입권 공매 이행결과이다. 임산물의 공매 횟수는 2008년의 경우 4회이지만 2007년에는 일정치 않다. 대추와 밤의 수입권 공매 낙찰률은 다른 농산물에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7년 밤의 낙찰량은 2,122톤으로 낙찰률이 98%이다. 2008년의 경우에도 1,792톤이 낙찰되어 83%의 낙찰률을 보였다.

[표 2-8] 임산물 공매 이행결과

(단위 : 톤)

| 년도   | 품목 | 공매물량  | 공매횟수 | 낙찰량   | 낙찰률 | 잔량  |
|------|----|-------|------|-------|-----|-----|
| 2007 | 대추 | 259.5 | 2    | 209.5 | 81% | 50  |
|      | 밤  | 2170  | 5    | 2122  | 98% | 48  |
| 2008 | 대추 | 259.5 | 4    | 185.5 | 71% | 74  |
|      | 밤  | 2170  | 4    | 1792  | 83% | 378 |

### 3. DDA 농업협상에서의 TRQ 논의 동향

UR 협상에서 기설정의제로 결정되어 2000년에 시장된 농업협상 및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영무역 등을 통한 TRQ 물량에 대한 수입관리가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고 TRQ 물량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TRQ 물량의 소진율 제고 대책 등을 협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9)</sup>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DDA 농업 TRQ 협상은 TRQ 제도 개선분야이다. WTO와 FTA가 별도의 협상이지만 WTO 제도가 FTA 협상과 제도 운영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므로 WTO의 규칙에 FTA 제도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협상 동향을 종합해보면 TRQ 관리에 대한 규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회원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2008년 12월에 배포된 개정된 농업 모델리티 초안에서 과세할당과 관련하여 쿼터 내 관세 양허(Bound in-quota tariffs)와 관세 할당 관리(Tariff quota administr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10)</sup>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는 관세할당관리로 초안에서는 '계획된 관세할당의 관리는 UR 수입면허 절차 협정의 「수입면허」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sup>11)</sup> 또한 관세할당 소진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치를 관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소진된 쿼터가 관리 절차에 기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그리고 미소진 쿼터 분배 절차를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sup>13)</sup>

부속서 E의 관세할당 미소진 절차에서는 쿼터가 65% 미만으로 소진될 때 회원국은 특별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입국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미소진 절차가 개시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소진율이 65%이하이면 회원국은 농업위원회에 수입국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4)</sup> 수입국은 회원국이 요청한 특별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년 계속해서 이행율이 65%이하로 소진율이 40%이상인 경우, 매년 8% 이상 증가하거나 소진율이 40% 이하인 경우 매년 12% 이상 증가하지 않고 미소진 사유가 시

9) 서진교 외 앞의 보고서 48쪽.

10)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46 December 2008 p 21-23. available on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chair\\_texts08\\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chair_texts08_e.htm)>(visited 12 March 2009)

11) Ibid. p 22. para 115.

12) Ibid. p 22. paras. 120-121.

13) Ibid. p 22. para 125.

14) Ibid. *TARIFF QUOTA UNDERFILL MECHANISM* Annex E para 2. p 52.

장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 될 경우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5)</sup>

마지막 단계에서 수입국은 선착순 방식(first come, first serve), 또는 관세할당 범위 내에서 요구에 따른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입면허(automatic, unconditional license on demand)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적어도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개도국은 다른 관리체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최소 2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증가율이 2/3 이상일 경우 완료(closed)로 처리한다.<sup>16)</sup>

---

15) Ibid. para 3. p 53.

16) Ibid. para 4. p 53.

## 제2절 FTA 농산물 TRQ 제도 운용 현황

### 1. 농산물 FTA TRQ 제도

#### 가. 법적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항에서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고시가 있다. 한·칠레에서는 농축산물은 TRQ 물량이 있으나 수산물 TRQ 물량이 없어 고시가 없다. 한·EFTA에서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각각 1개 품목의 TRQ가 있어 농산물과 수산물이 별도의 고시를 가지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에서 각각 TRQ 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고시가 있다.

[표 2-9] 농수산물 TRQ 관리를 위한 행정규칙

| 행정규칙명                                                                                        | 협정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할당물량의 협정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한·아세안  | 제2008-71호 | 2008.8.22  |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한·아세안  | 제2007-36호 | 2007.5.23  |
| 관세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 한·EFTA | 제2008-04호 | 2008.4.7   |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한·EFTA | 제2006-43호 | 2006.8. 23 |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할당물량협정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 한·칠레   | 제2004-13호 | 2004.4.7   |

## 나. FTA TRQ 품목 현황

FTA 관련 농산물 TRQ는 한·칠레 FTA에서 8개 상품 19개 품목, 한·유럽자유 무역연합회원국 FTA 1개 상품 1개 품목, 한·아세안 FTA에서 3개 상품 10품목이다. 농산물 FTA TRQ 수입권 공매는 모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임산물은 FTA에서 TRQ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다. 한·칠레 FTA TRQ 품목 관리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Q 즉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협정관세 적용품목은 쇠고기(2), 닭고기(9), 칠면조(6), 유장(4), 기타채소(1), 맨더린(1), 자두(1)이며 HS 번호 기준 19개 품목으로 물량은 4,480톤이다. TRQ 적용시기는 칠면조는 2010년까지이며 나머지 품목은 DDA 협상 종료 후 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 적용한다.

관세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을 대신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사장이 수행한다. 유통공사사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수립한 관세할당 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표 2-10] 한·칠레 FTA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 품목구분         | HS번호         | 품명                                                                          |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 적용시기                            |
|--------------|--------------|-----------------------------------------------------------------------------|--------------|---------------------------------|
| 쇠고기          | 0201-20-0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째 절단한 것)*                                                     | 200톤         | DDA협상 종료 후                      |
|              | 0202-20-0000 | 쇠고기(냉동/기타/뼈째절단)*                                                            | 200톤         | 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
| 닭고기          | 0207-14-1010 | 닭다리(냉동)*                                                                    | 2,000톤       | DDA협상 종료 후<br>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
|              | 0207-14-1020 | 닭가슴(냉동)*                                                                    |              |                                 |
|              | 0207-14-1030 | 닭날개(냉동)*                                                                    |              |                                 |
|              | 0207-14-1090 | 닭기타 절단육(냉동)*                                                                |              |                                 |
|              | 0207-14-2010 | 닭간장(냉동)*                                                                    |              |                                 |
|              | 0207-14-2090 | 닭기타 설육(냉동)*                                                                 |              |                                 |
|              | 1602-32-1010 |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              |                                 |
|              | 1602-32-1090 |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              |                                 |
| 1602-32-9000 |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                                                                             |              |                                 |
| 칠면조          | 0207-25-0000 | 칠면조(미절단/냉동)*                                                                | 600톤         | 2010년도까지<br>매년 적용               |
|              | 0207-27-1000 | 칠면조(절단/냉동)*                                                                 |              |                                 |
|              | 0207-27-2010 | 칠면조 간장(냉동)*                                                                 |              |                                 |
|              | 0207-27-2090 |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              |                                 |
|              | 1602-31-1000 | 칠면조의 것(밀폐용기의 것)                                                             |              |                                 |
|              | 1602-31-9000 | 칠면조의 것(기타조제저장)                                                              |              |                                 |
| 유장           | 0404-10-1010 | 유장분말                                                                        | 1,000톤       | DDA협상 종료 후<br>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
|              | 0404-10-2120 | 변성유장(무기질제거)                                                                 |              |                                 |
|              | 0404-10-2130 |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              |                                 |
|              | 0404-90-0000 | 유장기타                                                                        |              |                                 |
| 기타채소         | 0712-90-2099 | 건조한 채소(양파, 버섯, 마늘, 고사리, 무, 파, 당근, 호박, 양배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옥수수, 감자, 고비를 제외한 것) | 100톤         | DDA협상 종료 후<br>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
| 맨더린          | 0805-20-9000 | 맨더린(기타/신선/건조)*                                                              | 100톤         | DDA협상 종료 후<br>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
| 자두           | 0809-40-1000 | 자두(신선)*                                                                     | 280톤         | DDA협상 종료 후<br>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

※ \*로 표시된 쇠고기, 닭고기(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설육(냉동),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기타설육(냉동), 맨더린, 자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이후 적용됨



한·칠레 FTA TRQ 물량은 3,700톤이다. 품목별로 유장 1천톤, 닭고기 2천톤, 칠면조 6백톤, 기타채소 1백톤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매년 4회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칠레와의 거리가 멀고 검사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낙찰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11] 한·칠레 TRQ 물량 및 공매 현황

| 년도   | 품목   | 배정물량(톤) | 공매횟수 | 낙찰량 |
|------|------|---------|------|-----|
| 2007 | 유장   | 1000    | 4    |     |
|      | 기타채소 | 100     | 4    |     |
|      | 칠면조  | 600     | 4    |     |
|      | 닭고기  | 2000    | 4    |     |
| 2008 | 유장   | 1,000   | 4    | 24  |
|      | 기타채소 | 100     | 4    |     |
|      | 칠면조  | 600     | 4    |     |
|      | 닭고기  | 2,000   | 4    |     |

#### 다. 한·EFTA TRQ 품목 관리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의 기타 치즈에 대한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45톤이며 2011년부터 60톤이다. 협정관세적용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을 대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수행한다. 유통공사사장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수립한 협정관세적용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협정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한다.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표 2-12] 한·EFTA 스위스 기타 치즈 세율 및 물량

|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      |      |      |      |                                                               |      |      |      |      |         |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이후 |
| 0406.90.0000 | 기타 치즈 | 32.8                                                              | 29.5 | 26.3 | 23.0 | 19.8 | 16.2                                                          | 13.0 | 9.7  | 6.5  | 3.2  | 0       |
|              |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톤에 한하여 적용한다. 45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      |      |      |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60톤에 한하여 적용한다. 6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      |      |      |      |         |

※ 비고: 품목번호 0406.90.0000의 '기타 치즈'는 「대한민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1) 에멘탈(Emmental) 또는 에멘탈러(Emmentaler), (2) 스프린츠(Sbrinz), (3) 그뤼에르(Gruyere)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ere d'alpage), (4) 아펜젤러 전지(全脂)(Appenzeller full fat) 및 아펜젤러 1/4 지(脂)(Appenzeller 1/4 fat)에 한한다.

기타 치즈 45톤에 대한 수입권 공매는 다음 표와 같이 매년 4회 실시 하고 있다.

낙찰량은 2007년 4톤, 2008년 5톤이며 낙찰률은 각각 8%와 11%이다.

[표 2-13] 한-EFTA 치즈 공매 결과

(단위 : 톤, 원)

| 년도   | 품목   | 배정물량(톤) | 공매횟수 | 낙찰량  | 낙찰률 | 잔량    |
|------|------|---------|------|------|-----|-------|
| 2007 | 기타치즈 | 45      | 4    | 3.55 | 8%  | 41.5  |
| 2008 | 기타치즈 | 45      | 4    | 4.88 | 11% | 40.12 |

라. 농산물 한·아세안 FTA TRQ 품목 관리

한·아세안 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련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물량 및 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은 강낭콩, 매니옥, 매니옥 전분 등 3개 품목이며 HS 코드는 9개 품목이다.

한·아세안 농산물 TRQ 대상 품목 수입관리는 기타 강낭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실수요자 배정으로 운용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강낭콩의 경우 찌빵 등에 들어가는 속의 원료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타 강낭콩의 협정관세 추천 대행 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2007년 입찰에서는 수입물량 미확보 등의 이유로 낙찰 실적이 없다.

[표 2-14] 한·아세안 농산물 TRQ 품목

| 품목 구분  | HS번호         | 품명               | 연간 협정관세적용물량 | 협정관세 적용세율 |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 협 정 관 세 추천대행기관      |
|--------|--------------|------------------|-------------|-----------|-----------------|---------------------|
| 강낭콩    | 0713-33-1000 | 강낭콩(종자용)         | 5톤          | 0%        | 실수요자배정<br>수입권공매 | 국립종자관리소<br>농수산물유통공사 |
|        | 0713-33-9000 | 강낭콩(기타)          | 1,995톤      |           |                 |                     |
| 매니옥    | 0714-10-1000 | 매니옥(신선)          | 25,000톤     | 20%       | 실수요자배정          | 대한주류공업협회            |
|        | 0714-10-2010 | 매니옥침(건조)         |             |           |                 |                     |
|        | 0714-10-2090 | 매니옥(참-펠리트 이외/건조) |             |           |                 |                     |
|        | 0714-10-3000 | 매니옥(냉장)          |             |           |                 |                     |
|        | 0714-10-4000 | 매니옥(냉동)          |             |           |                 |                     |
| 매니옥 전분 | 1108-14-1000 |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용)  | 9,600톤      | 9%        | 실수요자배정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        | 1108-14-9000 |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             |           |                 |                     |

다음 표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강낭콩 TRQ 물량 1,995톤에 대한 수입권 공매 결과이다. 2007년에는 6월과 10월 2회 실시했으며 2008년에는 분기마다 공매를 실시하여 총 4회의 공매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 총 253톤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13%였다.

[표 2-15] 강낭콩 수입권 공매 현황

| 년도   | 품목  | 배정물량(톤) | 공매횟수 | 낙찰량      |
|------|-----|---------|------|----------|
| 2007 | 강낭콩 | 1,995   | 2    |          |
| 2008 | 강낭콩 | 1,995   | 4    | 253(13%) |

### 제3절 수산물 FTA TRQ 제도

수산물은 한·칠레에서는 TRQ 품목이 없었고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FTA에서 고등어 1개 품목, 한·아세안 FTA에서 새우와 갑오징어 5개 품목에 대한 TRQ가 도입되었다.

#### 가. 한·E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냉동 고등어 협정관세적용물량은 500톤이며,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추천대행기관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며 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자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표 2-16] 한·EFTA 고등어 세율 및 물량

| 품목 구분 | HS 번호        | 관세율할당 추천품명                               | 관세율할당 배정방식 | 추천대행 기관       | 관세율할당 적용수량 | 원산지                                           |
|-------|--------------|------------------------------------------|------------|---------------|------------|-----------------------------------------------|
| 고등어   | 0303-74-0000 | 냉동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차포니쿠스) | 지정기관배정     |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 | 500톤       |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

#### 나.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수산물 양허는 우리나라와 ASEAN과의 수산물 교역 비중이 12.4%로 칠레 1.6%, 싱가포르 0.4%, EFTA 1.1%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미 체결된 FTA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양허를 하였다. 전체 407개 품목 중 민감 품목군은 123개 품목으로 이 중 양허제외 품목은 39개 품목이다. TRQ 품목은 5개 품목으로 새우와 갑오징어 등이며 민감 품목군은 2016년까지 5% 이하 인하 52개 품목, 20% 인하 26개 품목, 50%인하 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품목군은 나머지 284개 품목으로 즉시철폐 품목이 81개 품목, 그 외는 2008년, 2010년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7] 한-ASEAN FTA 품목별 수산분야 양허현황

| 합계  | 일반품목군(284개) |       |       | 민감품목군 (123개)  |                  |                   |      |     |
|-----|-------------|-------|-------|---------------|------------------|-------------------|------|-----|
|     | 즉시          | 2008년 | 2010년 | 민감품목<br>(5%↓) | 초민감품목 : 71개      |                   |      |     |
|     |             |       |       |               | 관세감축<br>(by 20%) | 관세상한<br>(to 50%p) | 양허제외 | TRQ |
| 407 | 81          | 189   | 14    | 52            | 26               | 1                 | 39   | 5   |

자료 :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FTA 협정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그룹 D: 관세율할당 대상인 관세 품목」에 수산물의 경우 HS 6 단위 기준 냉동새우와 보리새우(030613), 활·신선·냉장 새우와 보리새우(030623), 기타(갑오징어) (030749), 가공새우와 보리새우(160520) 등 4개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냉동새우의 경우 새우살(0306131000)과 기타새우(0306139000) 등 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총 5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이다. 한·아세안 FTA에서의 품목별 TRQ 물량은 새우살과 냉동새우·보리새우 5,000톤, 가공새우 2,000톤, 갑오징어 2,000톤, 산 것·신선·냉장 새우·보리새우 300톤 등 총 9,300톤이다.

[표 2-18] 한·아세안 TRQ 물량, 세율, 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 적용품명                                    | HS번호         | 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톤) | 협정관세 적용세율(%) | 협정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 |
|-----------------------------------------------|--------------|---------------|--------------|---------------|---------------|
|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살, 냉동)                             | 0306-13-1000 | 5,000         | 0            | 수입권공매         |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
|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냉동)                              | 0306-13-9000 |               |              |               |               |
| 새우, 보리새우(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306-23-1000 | 300           | 0            | 수입권공매         |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
| 갑오징어(냉동)                                      | 0307-49-1010 | 2,000         | 0            | 수입권공매         |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
|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으로 훈제, 브레드한 것 제외) | 1605-20-9090 | 2,000         | 0            | 수입권공매         |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

「최소수입물량에 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들 간의 양해각서」첨부 2에 ‘한국은 그룹D에 명시된 최소수입물량에 따른 제한수량내 수입 할당을 위한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할당제도가 ‘추가적인 무역제한효과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물량 배분에 수입권 공매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차익금(Import Mark-up)의 일부를 수발기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고액납입 희망자 순으로 수입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이 경우 낙찰자는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판매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차익금은 국내 가격에서 판매 원가를 공제한 판매이익금 가운데 일부로서, 수입차익금 전액은 수발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제3장 한·아세안 수산물 TRQ

## 제1절 새우 생산과 무역

### 1. 세계 새우 생산

세계 새우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에 의한 생산이 양식에 의한 생산보다 많지만 2003년 이후 생산량 변동이 없으며 전체 생산량 증가는 양식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 총 생산량은 2003년에는 2002년보다 1백 2십만 톤이 증가한 5백 6십 7만 4천톤이며 2004년 약 6백만 톤이었으며 2005년에도 전년보다 1십만 톤이 증가하여 6백만 톤이었다. 어선어업 생산량은 매년 3백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 약 6십만 톤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양식 생산은 2002년 이후 매년 20-50만 톤씩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으나 2006년에는 양식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생산량이 5십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생산 전망은 양식어업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병 등 여러 장애가 있으며, 어선어업의 경우 자원의 한계가 있어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세계 새우(Shrimps, prawns) 생산현황

(단위 : 톤)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포획 | 3,028,171 | 3,089,755 | 2,957,730 | 2,969,311 | 3,545,309 | 3,542,438 | 3,416,533 | 3,460,003 |
| 양식 | 1,068,297 | 1,161,798 | 1,346,702 | 1,495,950 | 2,129,024 | 2,446,192 | 2,675,336 | 3,164,384 |
| 합계 | 4,096,468 | 4,251,553 | 4,304,432 | 4,465,261 | 5,674,333 | 5,988,630 | 6,091,869 | 6,624,387 |

자료 : FAO <<ftp://ftp.fao.org/fi/stat/summary/a1d.pdf>>

FAO 통계에 의하면 세계 생산량이 많은 72개 품목 가운데 새우는 다음의 표와 같은 7개 품목으로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가장 많이 어획되는 새우의 종류는 Akiami paste shrimp로 6십 6만 톤이 생산되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가운데 16위였다. 다음으로 Southern rough shrimp로 2005년에 4십 3만 톤이 생산되었다. Akiami paste shrimp 새우는 2006년에는 전 세계 어획량 가운데 14위인 7십 3만 톤이었으며 Southern rough shrimp는 3십 9만 톤이었다.

[표 3-2] 세계 새우 종류별 어획량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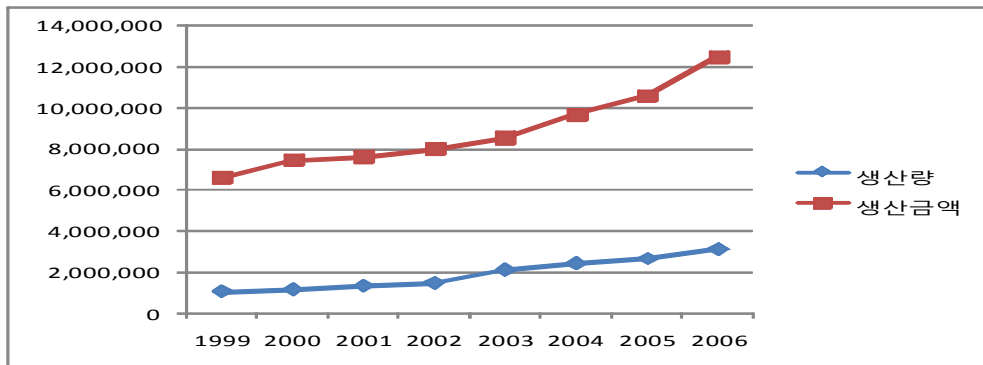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Akiami paste shrimp(Acetes japonicus)             | 577,497 | 585,647 | 636,818   | 681,374   | 664,716   | 729,020   |
| Southern rough shrimp(Trachypenaeus curvirostris) | 247940  | 234102  | 432240    | 299123    | 429,605   | 392,178   |
| Northern prawn(Pandalus borealis)                 | 345118  | 371705  | 377951    | 447646    | 376908    | 388,643   |
| Giant tiger prawn(Penaeus monodon)                | 208438  | 212613  | 219497    | 220134    | 218027    | 243,691   |
| Oriental river prawn(Macrobrachium nipponense)    |         |         | 142208    | 135321    | 150577    | 164,535   |
| Siberian prawn(Exopalaemon modestus)              |         |         | 142207    | 135321    | 150576    | 164,535   |
| Total                                             |         |         | 1,950,921 | 1,918,919 | 1,990,409 | 2,082,602 |

자료 : FAO <<ftp://ftp.fao.org/fi/stat/summary/a1e.pdf>>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우는 양식량 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식 새우 생산량은 2003년에 2002년보다 6십 3만 톤이 증가하여 최초로 2백만 톤 이상 생산되었으며 2006년에는 2005년보다 5십만 톤 이상 증가하여 3백만 톤 이상 생산하였다.

[그림 3-1] 세계 새우(Shrimps, prawns) 생산현황

(단위 : 톤,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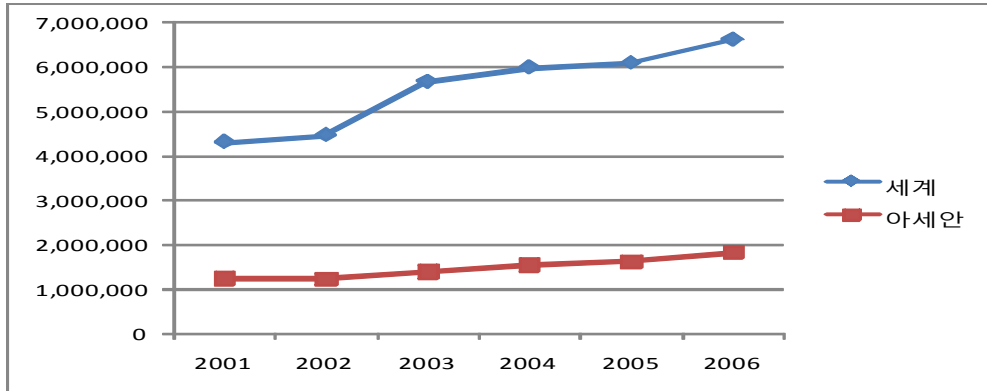
자료 : FAO FishStat Plus

## 2. 아세안 새우 생산

다음 그림은 아세안 국가들의 새우 생산량이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아세안 국가들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새우 생산 증가량보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아세안 국가들이 세계 새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였다.

[그림 3-2] 전 세계 새우 생산 중 아세안 새우 생산 비중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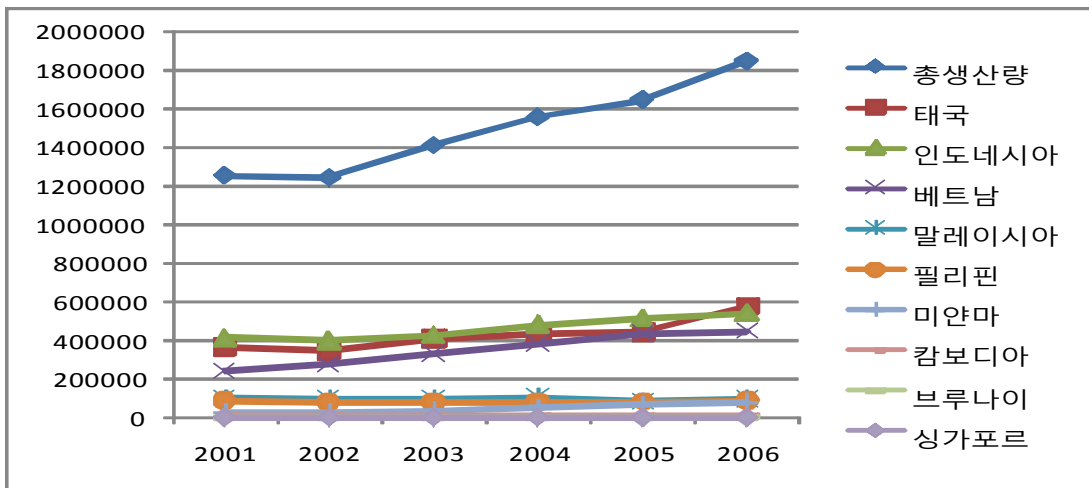


자료 : FAO FishStat Plus

아세안 국가들의 새우 생산량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1백 8십만 톤 이상을 생산하였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 국가가 4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가 8-1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3-3] 아세안 국가별 새우 생산 추세

(단위 : 톤)



자료 : FAO FishStat Plus

다음 표는 FAO 통계상의 아세안 국가들의 새우 생산현황이다. 2005년 말 현재 1백 6십 4만 8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매년 1십만 톤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개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2005년 기준 5십 1만 5천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이 4십 4만 톤과 4십 3만 톤으로 2위와 3위의 생산 국가이다. 2006년에는 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생산하였다. 태국이 5십 7만 톤, 인도네시아가 5십 4만 톤, 베트남이 4십 4만 톤 생산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매년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양식장에 질병도 급증해 이에 따른 항생제등의 과다 투입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태국이 아닌 인도 등지에서 새우를 수입하고 있다.

[표 3-3] 아세안 국가 새우 생산현황

(단위 : 톤)

| 국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세계 생산비율 |
|-------|-----------|-----------|-----------|-----------|-----------|-----------|---------|
| 태국    | 365,122   | 345,920   | 409,807   | 432,181   | 443,223   | 574,769   | 8.68%   |
| 인도네시아 | 415,436   | 401,935   | 431,891   | 484,581   | 514,589   | 543,943   | 8.21%   |
| 베트남   | 244,261   | 275,639   | 334,556   | 382,638   | 435,100   | 446,900   | 6.75%   |
| 말레이시아 | 104,482   | 101,602   | 99,377    | 109,541   | 86,152    | 96,871    | 1.46%   |
| 필리핀   | 90,788    | 80,865    | 83,406    | 84,079    | 85,010    | 87,119    | 1.32%   |
| 미얀마   | 27,973    | 28,550    | 40,681    | 51,000    | 69,044    | 82,000    | 1.24%   |
| 캄보디아  | 8,943     | 10,053    | 12,390    | 12,675    | 13,600    | 13,730    | 0.21%   |
| 브루나이  | 31        | 29        | 32        | 493       | 493       | 490       | 0.01%   |
| 싱가포르  | 364       | 337       | 268       | 266       | 307       | 483       | 0.01%   |
| TOTAL | 1,257,400 | 1,244,930 | 1,412,408 | 1,557,454 | 1,647,518 | 1,846,305 | 27.87%  |

자료 : FAO FishStat Plus

2005년 세계 전체 새우 생산량 가운데 아세안 국가가 생산한 새우 비율은 27%이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45%, 태국이 7.28%, 베트남이 7.14%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1% 미만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이 매년 7만 톤에서 9만 톤의 새우를 생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아세안 10개 국가 대부분의 새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미얀마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아세안국가의 새우 생산량은 1백 8십 4만 6천톤으로 전 세계 새우 생산량의 28%를 차지하여 2005년보다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늘어났다. 2005년 2위였던 태국이 8.6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8.21%인 인도네시아이다. 3위는 6.75%를 차지한 베트남이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가 각각 1.46%, 1.32%, 1.24%를 차지하고 있다.



### 3. 아세안 개별 국가

#### 가. 생산현황

아세안 국가의 새우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태국과 베트남은 양식이 많고 인도네시아는 어선어업에 의해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어선어업에 의한 새우 생산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이다. 양식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3십만 톤 이상을 양식하고 있으며,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3-6만 톤을 양식하고 있다. 2001년부터 5년간 평균 새우 생산량은 태국이 베트남보다 많다. 어선어업 생산량은 베트남이 많고 양식 생산량은 태국이 많다.

[표 3-4] 아세안 국가 새우 생산량

(단위 : 톤)

| 국가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태국    | 합계 | 365,122   | 345,920   | 409,807   | 432,181   | 443,223   | 574,769   |
|       | 어선 | 85,115    | 80,996    | 79,082    | 71,889    | 67,903    | 73,969    |
|       | 양식 | 280,007   | 264,924   | 330,725   | 360,292   | 375,320   | 500,800   |
| 인도네시아 | 합계 | 415,436   | 401,935   | 431,891   | 484,581   | 486,430   | 543,343   |
|       | 어선 | 266,268   | 242,338   | 240,743   | 246,014   | 206,891   | 204,140   |
|       | 양식 | 149,168   | 159,597   | 191,148   | 238,567   | 279,539   | 339,203   |
| 베트남   | 합계 | 244,261   | 275,639   | 334,556   | 382,638   | 435,100   | 446,900   |
|       | 어선 | 94,282    | 94,977    | 102,839   | 107,069   | 107,900   | 97,900    |
|       | 양식 | 149,979   | 180,662   | 231,717   | 275,569   | 327,200   | 349,000   |
| 필리핀   | 합계 | 90,788    | 80,865    | 83,406    | 84,079    | 85,010    | 87,119    |
|       | 어선 | 48,398    | 43,386    | 46,373    | 46,132    | 45,101    | 46,465    |
|       | 양식 | 42,390    | 37,479    | 37,033    | 37,947    | 39,909    | 40,654    |
| 말레이시아 | 합계 | 104,482   | 101,602   | 99,377    | 109,541   | 86,152    | 96,871    |
|       | 어선 | 77,468    | 76,020    | 73,197    | 78,703    | 52,788    | 61,898    |
|       | 양식 | 27,014    | 25,582    | 26,180    | 30,838    | 33,364    | 34,973    |
| 미얀마   | 합계 | 27,973    | 28,550    | 40,681    | 51,000    | 69,044    | 82,000    |
|       | 어선 | 22,500    | 22,000    | 21,500    | 21,000    | 20,404    | 22,000    |
|       | 양식 | 5,473     | 6,550     | 19,181    | 30,000    | 48,640    | 60,000    |
| 캄보디아  | 합계 | 8,943     | 10,053    | 12,390    | 12,675    | 13,600    | 13,730    |
|       | 어선 | 8,800     | 10,000    | 12,300    | 12,600    | 13,500    | 13,600    |
|       | 양식 | 143       | 53        | 90        | 75        | 100       | 130       |
| 브루나이  | 합계 | 31        | 29        | 32        | 493       | 439       | 490       |
|       | 어선 | 0         | 0         | 0         | 0         | 0         | 0         |
|       | 양식 | 31        | 29        | 32        | 493       | 439       | 490       |
| 싱가포르  | 합계 | 364       | 337       | 268       | 266       | 307       | 483       |
|       | 어선 | 250       | 222       | 220       | 245       | 251       | 460       |
|       | 양식 | 114       | 115       | 48        | 21        | 56        | 23        |
| TOTAL |    | 1,257,400 | 1,244,930 | 1,412,408 | 1,557,454 | 1,619,305 | 1,846,305 |

자료 : FAO FishStat Plus

베트남의 새우 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태국과 베트남의 생산량 차이가 8천톤으로 태국과 베트남 생산량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6년에는 태국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십 5만 톤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 양식 생산량이 급증하여 3십 3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어선어업 평균 어획량은 2십 3만 톤이며, 태국이 평균 7만 6천톤이고 베트남이 1십만 1천톤이다. 국가별 어선어업에 의한 생산 종류는 인도네시아는 흰다리새우(Whiteleg prawn), 바나나 새우(Banana), Giant tiger 등 여러 종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모든 생산량이 Natantian decapods nei종으로 1십만 1천톤이 생산된다. 태국의 경우 보리새우속 Penaeus의 종이 3만8천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바나나 새우(Banana)가 1만 7천톤이며 Metapenaeus shrimps nei종이 1만 톤 생산되고 있다.

[표 3-5] 아세안 주요국가 어선어업 종류별 생산량

(단위 : 톤)

| 국가        | 종류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평균(01-06)      |
|-----------|-------------------------|----------------|----------------|----------------|----------------|----------------|------------------|----------------|
| 태국        | Giant tiger prawn       | 1,714          | 1,865          | 2,877          | 2,236          | 3,102          | 2,559            | 2,392          |
|           | Green tiger prawn       | 2,015          | 1,613          | 2,389          | 2,556          | 3,032          | 2,549            | 2,359          |
|           | Western king prawn      | 2,704          | 3,310          | 3,595          | 3,434          | 3,830          | 3,952            | 3,471          |
|           | Sergestid shrimps nei   | 4,007          | 4,613          | 4,933          | 5,734          | 9,932          | 7,364            | 6,097          |
|           | Metapenaeus shrimps nei | 10,515         | 9,620          | 9,955          | 11,551         | 12,192         | 12,089           | 10,987         |
|           | Banana prawn            | 16,932         | 18,241         | 19,250         | 15,420         | 17,130         | 14,442           | 16,903         |
|           | Penaeus shrimps nei     | 47,228         | 41,734         | 36,083         | 30,958         | 27,998         | 31,014           | 35,836         |
| <b>합계</b> | <b>85,115</b>           | <b>80,996</b>  | <b>79,082</b>  | <b>71,889</b>  | <b>77,216</b>  | <b>73,969</b>  | <b>78,045</b>    |                |
| 베트남       | Natantian decapods nei  | <b>94,282</b>  | <b>94,977</b>  | <b>102,839</b> | <b>107,069</b> | <b>107,900</b> | <b>97,900</b>    | <b>100,828</b> |
| 인도네시아     | Whiteleg prawn          | 120,882        | 101,172        | 105,874        | 104,344        | 83,055         | 80,660           | 99,331.2       |
|           | Banana prawn            | 65,269         | 69,508         | 66,501         | 68,699         | 61,950         | 62,160           | 65,681.2       |
|           | Giant tiger prawn       | 43,759         | 38,088         | 34,190         | 34,533         | 30,380         | 29,610           | 35,093.3       |
|           | Metapenaeus shrimps nei | 36,358         | 33,570         | 34,178         | 38,438         | 31,506         | 31,710           | 34,293.3       |
| <b>합계</b> | <b>266,268</b>          | <b>242,338</b> | <b>240,743</b> | <b>246,014</b> | <b>206,891</b> | <b>204,140</b> | <b>234,399.0</b> |                |

자료 : FAO FishStat Plus

태국의 새우 양식 생산량은 평균 3십 6만 톤이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종류는 흰다리새우(Whiteleg shrimp)로 평균 1십 8만 6천톤이다. 다음으로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종류는 자이안트 타이거 새우(Giant tiger prawn)로 1십 7만 톤. 바나나 새우 등 다른 종류는 생산량이 적은 편이다.

베트남의 평균 새우 양식 생산량은 2십 4만 2천톤이다. 그러나 새우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평균 생산량이 3십 2만 7천톤으로 태국과 5만 톤 정도 차이가 난다. 자이안트 타이거 새우가 1십 5만 톤으로 가장 많고 흰다리새우가 4만

5천톤, 바나나 새우가 3만 7천톤이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은 태국이 1십만 톤 정도 많고 태국의 양식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생산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생산량은 2십 2만 톤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3십 4만 톤을 생산하였다. 주요 양식 종류는 태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자이안트 타이거 새우(Giant tiger prawn)와 흰다리새우(Whiteleg shrimp)로 1십 4만 톤 이상을 양식하고 있다.

[표 3-6] 아세안 주요국가 새우 생산현황

(단위 : 톤)

| 국가            | Species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평균(01-06)      |
|---------------|--------------------------------|----------------|----------------|----------------|----------------|----------------|----------------|----------------|
| 태국            | <i>Whiteleg shrimp</i>         |                | 60,000         | 132,365        | 251,698        | 374,487        | 490,000        | 261,710        |
|               | <i>Giant tiger prawn</i>       | 274,330        | 200,574        | 194,909        | 106,884        | 75,000         | 26,056         | 146,292        |
|               | <i>Banana prawn</i>            | 4,381          | 2,854          | 2,849          | 1,330          | 508            | 400            | 2,054          |
|               | <i>Metapenaeus shrimps nei</i> | 638            | 529            | 262            | 226            | 100            | 100            | 309            |
|               | <i>Penaeus shrimps nei</i>     | 658            | 967            | 340            | 154            | 100            | 100            | 387            |
| <b>생산량 합계</b> |                                | <b>280,007</b> | <b>264,924</b> | <b>330,725</b> | <b>360,292</b> | <b>450,195</b> | <b>516,656</b> | <b>367,133</b> |
| 베트남           | <i>Giant tiger prawn</i>       | 111,095        | 126,416        | 150,000        | 185,569        | 177,200        | 150,000        | 150,047        |
|               | <i>Whiteleg shrimp</i>         |                | 10,000         | 31,717         | 40,000         | 100,000        | 150,000        | 66,343         |
|               | <i>Banana prawn</i>            | 31,107         | 35,397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37,751         |
|               | <i>Indian white prawn</i>      | 7,777          | 8,849          | 10,000         | 10,000         | 10,000         | 9,000          | 9,271          |
| <b>생산량 합계</b> |                                | <b>149,979</b> | <b>180,662</b> | <b>231,717</b> | <b>275,569</b> | <b>327,200</b> | <b>349,000</b> | <b>252,355</b> |
| 인도네시아         | <i>Giant tiger prawn</i>       | 103603         | 112840         | 132761         | 131399         | 134682         | 147267         | 127092         |
|               | <i>Whiteleg shrimp</i>         | -              | -              | -              | 53217          | 103874         | 141649         | 99580          |
|               | <i>Banana prawn</i>            | 25862          | 24708          | 34996          | 33797          | 27088          | 36187          | 30439          |
|               | <i>Metapenaeus shrimps nei</i> | 19093          | 21634          | 22697          | 19928          | 13731          | 14000          | 18513          |
|               | <i>Akiami paste shrimp</i>     | 610            | 415            | 694            | 226            | 164            | 100            | 368            |
| <b>생산량 합계</b> |                                | <b>149,168</b> | <b>159,597</b> | <b>191,148</b> | <b>238,567</b> | <b>279,539</b> | <b>339,203</b> | <b>226203</b>  |

자료 : FAO FishStat Plus

다음은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의 새우 생산현황이다. 말레이시아는 자이안트 타이거와 바나나 새우, 미얀마는 자이안트 타이거를 양식한다. 브루나이는 청(Blue) 새우와 자이안트 타이거 새우를 양식하고 있으나 양은 많지 않다. 필리핀은 바나나 새우와 자이안트 타이거 새우 그리고 메타피너스(Metapenaeus) 새우 등 3개 종류를 주로 양식하고 있다. 자이안트 타이거 새우의 경우 3만 5천톤에서 4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표 3-7] 필리핀과 브루나이 새우 양식현황

(단위 : 톤)

| 국가    | 종류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필리핀   | Giant tiger prawn       | 40,698 | 35,490 | 34,997 | 35,917 | 37,720 | 38,209 |
|       | Banana prawn            | 1,276  | 1,541  | 1,517  | 1,471  | 1,519  | 1,647  |
|       | Metapenaeus shrimps nei | 416    | 445    | 518    | 559    | 669    | 798    |
| 말레이시아 | Banana prawn            | 662    | 843    | 804    | 5,117  | 11,498 | 18,599 |
|       | Giant tiger prawn       | 26,352 | 24,739 | 25,376 | 25,721 | 21,866 | 16,374 |
| 브루나이  | Blue shrimp             | -      | -      | -      | 432    | 432    | 430    |
|       | Giant tiger prawn       | 31     | 29     | 32     | 61     | 61     | 60     |
| 미얀마   | Giant tiger prawn       | 5,473  | 6,550  | 19,181 | 30,000 | 48,640 | 6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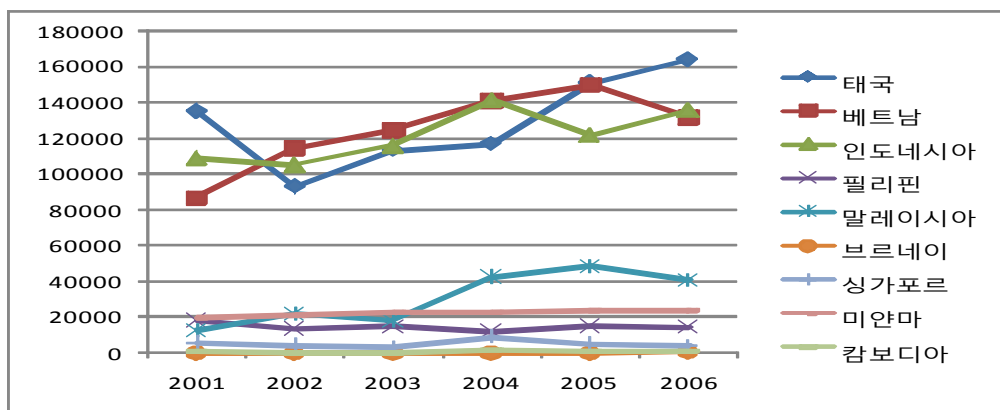
자료 : FAO FishStat Plus

### 나. 아세안 국가 새우 무역현황

아세안 국가들의 냉동새우 수출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개 주요 수출국가와 나머지 국가들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2006년에는 태국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나 2004년 이전에는 베트남의 수출량이 많았으며 인도네시아도 1십 3만 톤 이상 수출하고 있다. 태국은 2002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상승하고 있으나 태국이 보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림 3-4] 아세안 국가의 냉동새우 수출 추세

(단위 : 톤)



자료 : FAO FishStat Plus

FAO통계에 의하면 HS 6단위 기준으로 새우살과 냉동새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냉동새우로 집계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냉동새우 수출은 다음 표와 같이 2006년 기준 태국이 1십 6만 4천톤으로 가장 많은 새우를 수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1십

3만 5천톤, 베트남 1십 3만 2천톤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대 주요 수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2004년 이후 4만 톤 이상을 수출하여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가 2만 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필리핀이 1만 5천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는 수출량이 아주 적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냉동새우 생산 및 수출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수출금액과 단가는 베트남이 전반적으로 높다. 2005년 주요 수출국가의 톤당 단가를 살펴보면 2005년 태국의 수출 단가는 6천불, 인도네시아는 6천 6백 불이었던 것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 8천 7백 불이었다. 2006년 아세안 주요 수출국가의 톤당 수출 단가는 베트남이 9천 5백 불로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6천 9백 불, 태국 6천 4백 불이었다.

[표 3-8] 아세안 국가의 냉동새우 수출

(단위 : 톤, 천불)

| 국가    | 무역흐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태국    | 수출량  | 134,944   | 92,884  | 113,369   | 116,774   | 150,611   | 163,735   |
|       | 수출금액 | 1,198,050 | 774,078 | 840,913   | 781,633   | 905,719   | 1,053,639 |
|       | 단가   | 8.88      | 8.33    | 7.42      | 6.69      | 6.01      | 6.44      |
| 베트남   | 수출량  | 87,151    | 114,580 | 124,780   | 141,122   | 149,872   | 131,615   |
|       | 수출금액 | 777,820   | 949,418 | 1,057,863 | 1,268,039 | 1,307,155 | 1,254,177 |
|       | 단가   | 8.92      | 8.29    | 8.48      | 8.99      | 8.72      | 9.53      |
| 인도네시아 | 수출량  | 108,744   | 104,945 | 115,857   | 141,122   | 121,328   | 135,388   |
|       | 수출금액 | 879,318   | 784,392 | 785,856   | 770,317   | 804,023   | 939,711   |
|       | 단가   | 8.09      | 7.47    | 6.78      | 5.46      | 6.63      | 6.94      |
| 필리핀   | 수출량  | 18,289    | 13,621  | 14,731    | 11,796    | 15,223    | 14,558    |
|       | 수출금액 | 117,767   | 119,127 | 99,584    | 91,010    | 80,343    | 76,794    |
|       | 단가   | 6.44      | 8.75    | 6.76      | 7.72      | 5.28      | 5.28      |
| 말레이시아 | 수출량  | 12,327    | 21,559  | 17,530    | 42,521    | 48,440    | 40,485    |
|       | 수출금액 | 74,533    | 143,465 | 91,884    | 243,882   | 274,120   | 229,913   |
|       | 단가   | 6.05      | 6.65    | 5.24      | 5.74      | 5.66      | 5.68      |
| 미얀마   | 수출량  | 19,477    | 21,454  | 22,868    | 22,983    | 23,663    | 23,348    |
|       | 수출금액 | 104,227   | 94,404  | 105,197   | 113,548   | 113,745   | 102,179   |
|       | 단가   | 5.35      | 4.40    | 4.60      | 4.94      | 4.81      | 4.38      |
| 싱가포르  | 수출량  | 5,848     | 4,121   | 2,974     | 9,049     | 4,842     | 3,821     |
|       | 수출금액 | 43,375    | 26,327  | 16,201    | 67,139    | 30,340    | 25,635    |
|       | 단가   | 7.42      | 6.39    | 5.45      | 7.42      | 6.27      | 6.71      |
| 캄보디아  | 수출량  | 795       | 473     | 355       | 1,502     | 993       | 782       |
|       | 수출금액 | 5,870     | 2,815   | 2,348     | 11,190    | 5,974     | 4,545     |
|       | 단가   | 7.38      | 5.95    | 6.61      | 7.45      | 6.02      | 5.81      |
| 브루나이  | 수출량  | 28        | 35      | 33        | 108       | 135       | 634       |
|       | 수출금액 | 105       | 254     | 127       | 535       | 855       | 4,828     |
|       | 단가   | 3.75      | 7.26    | 3.85      | 4.95      | 6.33      | 7.62      |

자료 : FAO FishStat Plus

1) 한국의 태국 새우 수입

한국의 태국 냉동새우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6천 2백톤 정도 수입하고 있다. 2006년에는 냉동 8천 1백톤, 새우살 8백톤 등 총 9천톤을 수입했다. 냉동새우가 평균 5천 3백톤정도 수입되고 있으며 새우살이 820톤 정도 수입되고 있다. 2008년에는 냉동새우 6천톤, 새우살 9백 6십톤 등 총 7천톤의 새우를 수입했다. 한국의 수입단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한국의 태국 냉동새우 수입단가는 태국 전체 냉동새우 수출단가보다 낮다. 그 이유는 단가가 낮은 냉동새우의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며 새우살의 평균 톤당 단가는 9천불이며 냉동새우의 톤당 평균단가는 6천불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TRQ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7년에 태국은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아 TRQ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태국의 냉동새우 수입은 새우살이 2백톤 정도 증가하였고 냉동새우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톤당 단가도 2006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다.

[표 3-9] 한국의 태국 냉동새우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냉동새우 합계 |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중량      | 5,106  | 4,730  | 5,878  | 6,222  | 6,365  | 9,042  | 9,262  | 6,979  |
| 금액      | 38,149 | 35,256 | 38,595 | 38,816 | 35,671 | 50,488 | 53,254 | 37,975 |
| 단가      | 7.5    | 7.5    | 6.6    | 6.2    | 5.6    | 5.6    | 5.7    | 5.4    |
| 냉동새우살   |        |        |        |        |        |        |        |        |
| 중량      | 747    | 785    | 894    | 1006   | 830    | 850    | 1,073  | 968    |
| 금액      | 7,751  | 9,405  | 7,510  | 7,828  | 6,459  | 6,382  | 8,147  | 6,917  |
| 단가      | 10.4   | 12.0   | 8.4    | 7.8    | 7.8    | 7.5    | 7.6    | 7.1    |
| 냉동새우    |        |        |        |        |        |        |        |        |
| 중량      | 4,359  | 3,945  | 4,984  | 5,216  | 5,535  | 8,192  | 8,189  | 6,011  |
| 금액      | 30,398 | 25,851 | 31,085 | 30,988 | 29,212 | 44,106 | 45,107 | 31,058 |
| 단가      | 7.0    | 6.6    | 6.2    | 5.9    | 5.3    | 5.4    | 5.5    | 5.2    |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 2) 한국의 베트남 새우 수입

한국의 베트남 냉동새우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은 2005년 수입량보다 1천 7백톤 증가한 4천 7백톤이었으며 2007년에는 3천톤이 증가한 7천 8백톤이었다.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2백톤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품목별 수입은 태국과는 달리 베트남으로부터는 냉동새우살 수입량이 많고 냉동새우의 수입은 적었으나 2006년 냉동새우 수입량은 1천 7백톤으로 2005년보다 9백톤 증가했고, 2007년에는 3천 1백톤, 2008년에는 2천 5백톤이었다.

베트남 냉동새우 수입단가는 태국의 수입단가와와는 달리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약간 하락했다. 2006년 톤당 수입단가는 7천불로 태국의 5천 6백 불보다 1천 4백 불이 높다. 2007년에는 8천 1백 불, 2008년에는 7천 3백 불이었다.

태국의 경우 냉동새우살의 단가가 냉동새우의 단가보다 높지만 베트남의 경우 냉동새우 단가가 높고 그 단가 차이가 2006년 기준 톤당 4백 불로 태국의 2천 1백 불보다 매우 적다. 2007년에는 베트남 냉동새우 단가가 냉동새우살 단가보다 1천불, 2008년에는 1천 4백 불 높았다.

베트남은 TRQ 제도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다. 2007년 한국의 베트남 새우 수입은 중량 3천 1백톤, 금액 3천만 불이 증가하였다. 냉동새우살의 경우 1천 6백톤, 1천 4백만 불 증가하였고 냉동새우는 1천 5백톤, 1천 6백만 불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톤당 수입단가가 1천 1백 불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냉동새우 단가는 1천 9백 불, 새우살의 경우 5백 불 증가하였다. 이는 베트남에서 단가가 비싼 크기가 큰 새우를 많이 수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에 수입단가도 2006년에 비해 전체 냉동새우는 3백불, 냉동새우 1천 4백불 상승하였다. 가공새우는 4백불 하락하였다.

[표 3-10] 한국의 베트남 냉동새우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냉동새우합계 |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중량     | 1,860 | 1,655 | 1,750 | 1,954  | 2,926  | 4,704  | 7,847  | 7,654  |
| 금액     | 7,210 | 8,208 | 9,581 | 12,085 | 19,082 | 32,984 | 63,533 | 55,689 |
| 단가     | 3.9   | 5.0   | 5.5   | 6.2    | 6.5    | 7.0    | 8.1    | 7.3    |
| 냉동새우살  |       |       |       |        |        |        |        |        |
| 중량     | 1,784 | 1,285 | 1,508 | 1,549  | 2,104  | 2,999  | 4,658  | 5,167  |
| 금액     | 6,625 | 5,081 | 7,277 | 8,847  | 13,293 | 21,467 | 35,908 | 35,339 |
| 단가     | 3.7   | 4.0   | 4.8   | 5.7    | 6.3    | 7.2    | 7.7    | 6.8    |
| 냉동새우   |       |       |       |        |        |        |        |        |
| 중량     | 76    | 370   | 242   | 405    | 822    | 1,705  | 3,189  | 2,487  |
| 금액     | 585   | 3,127 | 2,304 | 3,238  | 5,789  | 11,517 | 27,625 | 20,350 |
| 단가     | 7.7   | 8.5   | 9.5   | 8.0    | 7.0    | 6.8    | 8.7    | 8.2    |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 3) 한국의 인도네시아 새우수입

다음은 한국의 인도네시아 냉동새우 수입현황이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새우를 생산과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은 많지 않다. 가공시설이나 가공능력이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 새우의

수입단가 또한 베트남보다 높은 것도 있다. 2008년 베트남 냉동새우살의 수입단가는 6.8kg/불이었고 냉동새우 평균 수입단가는 8.2kg/불이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냉동새우살 평균 수입단가는 8.1kg/불이었고 냉동새우평균 수입단가는 7.6kg/불이었다. 새우살의 단가는 인도네시아가 높았고 냉동새우의 경우 베트남이 높았다. 전체 평균 수입단가는 베트남이 7.3kg/불, 인도네시아가 7.7kg/불로 인도네시아가 높았다.

[표 3-11] 한국의 인도네시아 냉동새우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냉동새우 합계 |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총량      | 288   | 485   | 431   | 652   | 466   | 646   | 583   | 597   |
| 금액      | 1,922 | 2,795 | 2,568 | 3,884 | 3,026 | 4,656 | 4,262 | 4,585 |
| 단가      | 6.7   | 5.8   | 6.0   | 6.0   | 6.5   | 7.2   | 7.3   | 7.7   |
| 냉동새우살   |       |       |       |       |       |       |       |       |
| 총량      | 129   | 127   | 41    | 30    | 29    | 34    | 57    | 140   |
| 금액      | 466   | 556   | 260   | 167   | 190   | 230   | 392   | 1,128 |
| 단가      | 3.6   | 4.4   | 6.3   | 5.6   | 6.6   | 6.8   | 6.9   | 8.1   |
| 냉동새우    |       |       |       |       |       |       |       |       |
| 총량      | 159   | 358   | 390   | 622   | 437   | 612   | 526   | 457   |
| 금액      | 1,456 | 2,239 | 2,308 | 3,717 | 2,836 | 4,426 | 3,870 | 3,457 |
| 단가      | 9.2   | 6.3   | 5.9   | 6.0   | 6.5   | 7.2   | 7.4   | 7.6   |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 제2절 한국의 새우 생산 및 수입

### 1. 생산현황

한·아세안 FTA TRQ 대상 품목은 HS 코드 기준으로는 5개 품목이지만 실제 품종은 새우와 갑오징어이다. 새우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새우는 일반 해면어업, 양식,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등 모든 어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과 원양어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새우 종류와 거리가 있어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의 새우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은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이다. 젓새우를 제외한 생산량은 1만 4천톤에서 2만 1천톤 정도이다. 일반 해면어업의 경우 매년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이 가장 많은 종류는 기타새우 꽃새우, 젓새우 등이다. 양식의 경우 대하와 흰다리새우이다.



[표 3-12] 한국의 새우류 생산현황

(단위 : M/T, 천원)

| 어업       | 품종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
|          |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 일반<br>해면 | 꽃새우   | 2,575  | 9,876,286  | 3,364  | 11,292,102 | 4,272  | 14,885,590 | 3,259  | 10,668,820 | 2,444  | 11,589,933 |
|          | 닭새우   | 595    | 1,517,794  | 742    | 1,115,242  | 772    | 1,389,526  | 595    | 937,585    | 497    | 767,677    |
|          | 대하    | 848    | 17,956,620 | 989    | 18,540,091 | 1,261  | 17,582,682 | 419    | 6,931,383  | 250    | 5,420,314  |
|          | 보리새우  | 132    | 2,882,686  | 282    | 7,143,204  | 215    | 4,515,194  | 178    | 4,030,653  | 246    | 2,991,074  |
|          | 젓새우   | 7,889  | 22,441,266 | 7,352  | 23,391,931 | 7,810  | 25,556,465 | 5,273  | 16,128,706 | 14,762 | 41,267,858 |
|          | 중하    | 414    | 2,796,867  | 834    | 5,628,172  | 980    | 5,629,626  | 783    | 4,474,732  | 1,631  | 6,344,034  |
|          | 소계    | 12,453 | 57,471,519 | 13,563 | 67,110,742 | 15,310 | 69,559,083 | 10,507 | 43,171,879 | 19,830 | 68,380,890 |
| 천해<br>양식 | 대하    | 2,426  | 39,562,507 | 1,399  | 23,295,510 | 1,022  | 14,786,200 | 105    | 1,454,314  | 130    | 2,114,233  |
|          | 흰다리새우 |        |            |        |            | 661    | 10,835,090 | 366    | 5,625,160  | 1,794  | 25,604,623 |
|          | 소계    | 2,426  | 39,562,507 | 1,399  | 23,295,510 | 1,683  | 25,621,290 | 471    | 7,079,474  | 1,924  | 27,718,856 |
|          | 생산단가  |        | 16,308     |        | 16,652     |        | 15,224     |        | 15,031     |        | 14,407     |
| 총계       |       | 14879  | 97034026   | 14962  | 90406252   | 16993  | 95180373   | 10978  | 50251353   | 21,754 | 96,099,746 |

자료 : 어업생산통계 <<http://fs.fips.go.kr/index.jsp>>

일반 해면어업과 양식어업의 대하와 중하의 월별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5월과 6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하의 경우 8월에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며 중하의 경우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생산이 된다. 향후 TRQ 제도를 운영할 때 한국의 생산 시기와 겹치지 않는 시기에 공매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의 새우 수입현황

한국의 새우 수입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감소 하였다.

품목별로 2008년에는 냉동새우살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TRQ 물량이 전체 새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는 전체 수입량 5만 1천 9백 3십 3톤 가운데 3천 8백 9십 9톤으로 8%였지만 2008년에는 3만 9천 8백 8십 5톤 가운데 5천 8백 8십 3톤으로 전체 수입량 가운데 15%로 전년 대비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증가하였다. 품목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냉동새우가 25%로 가장 높았고 가공새우가 16%, 새우살이 9%였으며 신냉새우는 0.9%였다. 2007년에 비해 전체 수입량은 줄고 TRQ 낙찰물량은 증가하여 전체 및 개별 품목 수입에서 TRQ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향후 수입량이 2007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TRQ 물량이 2008년 수준으로 낙찰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아세안 FTA TRQ 물량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국가별 수입량과 수입 품목, 같은 품목 내에서도 세부 품목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표 3-13] 한국의 연도별 새우 수입현황

(단위 : 톤)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
| 냉동<br>새우 |      | 64,309  | 14,490 | 68,305  | 14,922 | 104,616 | 20,968  | 127,092 | 22,063  | 74,587  | 13,005  | -52,505 | -9,058  |
|          | TRQ  |         |        |         |        |         |         |         | 2,251   |         | 3,217   |         |         |
|          | 비율   |         |        |         |        |         |         |         | 10%     |         | 25%     |         |         |
| 새우<br>살  |      | 43,412  | 9,656  | 46,553  | 10,604 | 60,496  | 12,518  | 83,003  | 15,755  | 76,918  | 17,087  | -6,085  | 1,332   |
|          | TRQ  |         |        |         |        |         |         |         | 1,342   |         | 1,554   |         |         |
|          | 비율   |         |        |         |        |         |         |         | 8.5%    |         | 9%      |         |         |
| 가공<br>새우 |      | 29504   | 5,181  | 31594   | 5,525  | 43582   | 7,314   | 52023   | 8,501   | 41619   | 6755    | -10404  | -1746   |
|          | TRQ  |         |        |         |        |         |         |         | 306     |         | 1,085   |         |         |
|          | 비율   |         |        |         |        |         |         |         | 4%      |         | 16%     |         |         |
| 신냉<br>새우 |      | 32368   | 4117   | 36560   | 5675   | 32074   | 5258    | 33631   | 5614    | 17573   | 3,038   | -16058  | -2576   |
|          | TRQ  |         |        |         |        |         |         |         |         |         | 27      |         |         |
|          | 비율   |         |        |         |        |         |         |         |         |         | 0.9%    |         |         |
| 합계       |      | 169,593 | 33,444 | 183,012 | 36,726 | 240,768 | 46,058  | 295,749 | 51,933  | 210,697 | 39,885  | -85,052 | -12,048 |
|          | TRQ  |         |        |         |        |         |         |         | 3,899   |         | 5,883   |         |         |
|          | 비율   |         |        |         |        |         |         |         | 8%      |         | 1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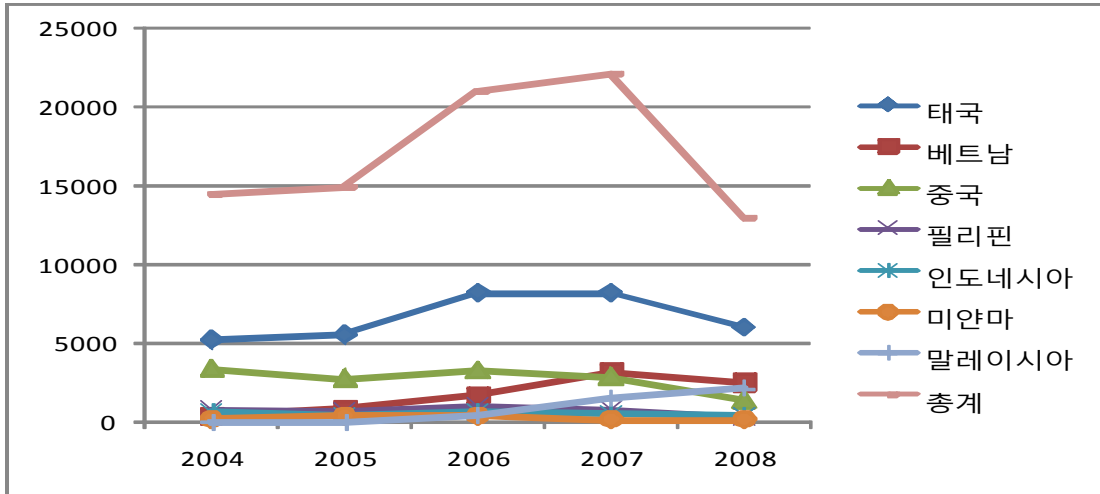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 1) 냉동새우

한국의 냉동새우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2만 톤 이상 수입되어 2005년 이전보다 5천톤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세계 및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7년보다 9천톤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1만 3천톤이었다. 2008년에는 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냉동새우를 수입하고 있고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순이다. 2006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베트남보다 많았으나 TRQ 공매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7년부터 역전이 되었다.

[그림 3-5]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 수입추세

(단위 : 톤)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2007년 기준 국가별 수입비중은 태국 37%, 베트남 14%, 중국 13%, 말레이시아 7%, 필리핀 4% 등이다. 2008년에는 태국 46%, 베트남 19%, 말레이시아 17%, 중국 11%, 인도네시아 3% 등이다. 2007년도에 비해 국가별 점유율은 태국 9%, 베트남이 5% 말레이시아가 10% 증가하였고 중국은 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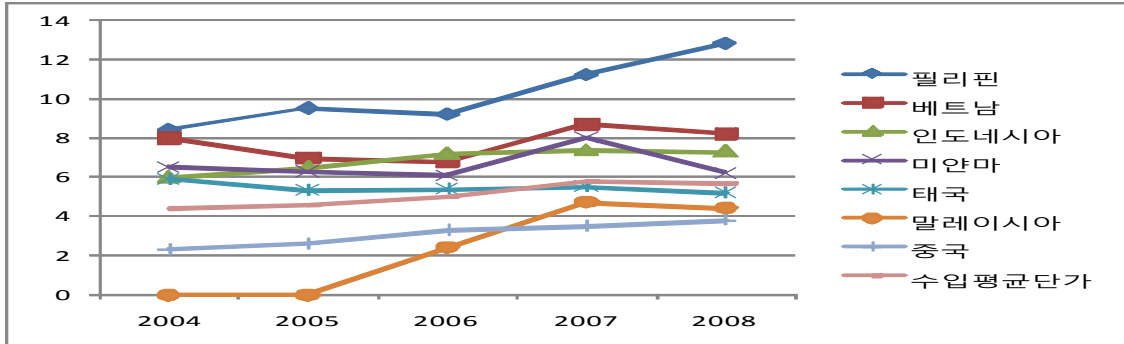
2007년 수입은 2006년보다 약 1천톤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였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2006년 점유율은 8%였는데 2007년에는 14%로 6%가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0%로 5% 증가하였다.

2008년 수입량 감소량이 태국 2,178톤, 중국 1491톤이었으나 베트남의 경우 702톤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2008년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2008년 수입 증가량은 6백 5십 2톤이다. 말레이시아의 수입량 증가는 TRQ 물량과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수입단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은 4위로 1천 4백 2십 2톤 이었다.

냉동새우의 경우 한·아세안 FTA TRQ 제도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이다. 국가별 평균 수입단가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평균 수입단가보다 높고 말레이시아, 중국의 수입단가는 국가별 평균수입단가보다 낮다. 중국의 경우 가장 낮은 수입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2006년까지는 평균 수입단가보다 높았으나 2007년부터 평균 수입단가 보다 낮은 평균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6]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 수입평균단가

(단위 : 톤)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2007년 TRQ 낙찰량은 2천 2백 5십 1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0%에 해당한다. 한·아세안 TRQ 물량 3천 6백 5십 톤은 2007년 전체 수입량의 17%에 해당한다.

[표 3-14]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 수입현황

(단위 : 천불, 톤)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태국        | 30988         | 5216          | 29212         | 5535          | 44106          | 8192          | 45107          | 8189          | 31,058        | 6011          | -14,049        | -2,178        |
|           | 48%           | 36%           | 43%           | 37%           | 42%            | 39%           | 35%            | 37%           | 42%           | 46%           |                |               |
| 베트남       | 3238          | 405           | 5789          | 822           | 11517          | 1,705         | 27625          | 3,189         | 20,350        | 2,487         | -7,275         | -702          |
|           | 5%            | 3%            | 8%            | 6%            | 11%            | 8%            | 22%            | 14%           | 27%           | 19%           |                |               |
| 말레이시아     |               |               |               |               | 1122           | 458           | 7160           | 1518          | 9,569         | 2,170         | 2,409          | 652           |
|           |               |               |               |               |                | 2.4           |                | 4.7           |               | 4.4           |                |               |
|           |               |               |               |               | 1%             | 2%            | 6%             | 7%            | 13%           | 17%           |                |               |
| 중국        | 7788          | 3427          | 7380          | 2795          | 10882          | 3299          | 10070          | 2913          | 5,365         | 1,422         | -4,705         | -1,491        |
|           | 12%           | 24%           | 11%           | 19%           | 10%            | 16%           | 8%             | 13%           | 7%            | 11%           |                |               |
| 필리핀       | 6577          | 780           | 5919          | 624           | 9131           | 988           | 8756           | 780           | 4,056         | 317           | -4,700         | -463          |
|           | 10%           | 5%            | 9%            | 4%            | 9%             | 5%            | 7%             | 4%            | 5%            | 2%            |                |               |
| 인도네시아     | 3717          | 622           | 2836          | 437           | 4426           | 612           | 3870           | 526           | 3,138         | 428           | -732           | -98           |
|           | 6%            | 4%            | 4%            | 3%            | 4%             | 3%            | 3%             | 2%            | 4%            | 3%            |                |               |
| 미얀마       | 1391          | 214           | 2445          | 387           | 2593           | 428           | 1608           | 201           | 1,051         | 170           | -557           | -31           |
|           | 2%            | 1%            | 4%            | 3%            | 2%             | 2%            | 1%             | 1%            | 1%            | 1%            |                |               |
| 아세안       | 56521         | 11063         | 60925         | 12127         | 93734          | 17669         | 117022         | 19150         | 69222         | 11583         | -47800         | -7567         |
|           |               | 5.1           |               | 5.0           |                | 5.3           |                | 6.1           |               | 6.0           |                |               |
| <b>총계</b> | <b>64,309</b> | <b>14,490</b> | <b>68,305</b> | <b>14,922</b> | <b>104,616</b> | <b>20,968</b> | <b>127,092</b> | <b>22,063</b> | <b>74,587</b> | <b>13,005</b> | <b>-52,505</b> | <b>-9,058</b> |
| TRQ       |               |               |               |               |                |               |                | 2,251         |               | 3,217         |                |               |
| 전체비율      |               |               |               |               |                |               |                | 10%           |               | 25%           |                |               |
| 아세안비율     |               |               |               |               |                |               |                | 12%           |               | 28%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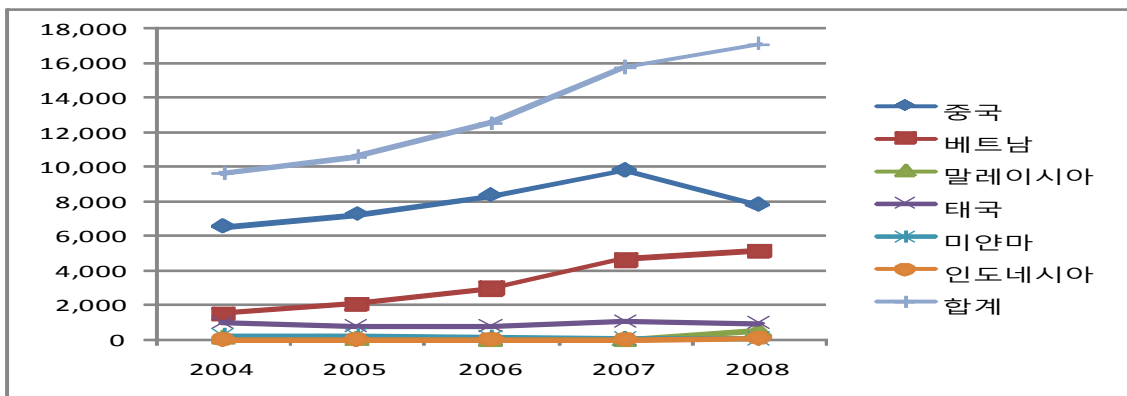
2008년 TRQ 낙찰량은 3천 2백 1십 7톤으로 2008년 전체 냉동새우 수입량의 25%이며 2007년 10%에 비해 15%가 증가하여 TRQ 물량이 전체 냉동새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냉동새우살

한국의 냉동새우살 수입 총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다. 냉동새우살의 2008년 특이사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와 베트남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이다.

[그림 3-7] 한국의 냉동새우살 국가별 수입추세

(단위 : 톤)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2007년 중량기준 국가별 수입비율은 중국이 62%, 베트남 30%, 태국 7%의 순서이다. 2008년의 경우 중국 46%, 베트남 30%, 태국 6%, 말레이시아 3%이다. 중국의 비중은 16%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30%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0.6%감소했으나 다른 아세안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소폭이지만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표 3-15] 한국의 국가별 냉동새우살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베트남              |    | 22,172 | 6,531 | 23,827 | 7,263  | 30,464 | 8,350  | 37,232  | 9,799  | 32,460  | 7,785  | -4,772  | -2,014 |
|                  | 단가 |        | 3.4   |        | 3.3    |        | 3.6    |         | 3.8    |         | 4.2    |         |        |
|                  | 비율 | 51%    | 68%   | 51%    | 68%    | 50%    | 67%    | 45%     | 62%    | 42%     | 46%    |         |        |
| 베트남              |    | 8,847  | 1,549 | 13,293 | 2,104  | 21,467 | 2,999  | 35,908  | 4,658  | 35,339  | 5,167  | -569    | 509    |
|                  | 단가 |        | 5.7   |        | 6.3    |        | 7.2    |         | 7.7    |         | 6.84   |         |        |
|                  | 비율 | 20%    | 16%   | 29%    | 20%    | 35%    | 24%    | 43%     | 30%    | 46%     | 30%    |         |        |
| 태국               |    | 7,828  | 1,006 | 6,459  | 830    | 6,382  | 850    | 8,147   | 1,073  | 6,917   | 968    | -1,230  | -105   |
|                  | 단가 |        | 5.7   |        | 6.3    |        | 7.2    |         | 7.7    |         | 7.1    |         |        |
|                  | 비율 | 18%    | 10%   | 14%    | 8%     | 11%    | 7%     | 10%     | 7%     | 9%      | 6%     |         |        |
| 말레이시아            |    | 917    | 132   | 420    | 49     | 328    | 40     | 274     | 43     | 2,963   | 557    | 2,689   | 514    |
|                  | 단가 |        | 6.9   |        | 8.6    |        | 8.2    |         | 6.4    |         | 5.3    |         |        |
|                  | 비율 | 2.1%   | 1.4%  | 0.9%   | 0.5%   | 0.5%   | 0.3%   | 0.3%    | 0.3%   | 4%      | 3%     |         |        |
| 미얀마              |    | 1,459  | 251   | 1,622  | 236    | 1,241  | 187    | 597     | 81     | 686     | 86     | 89      | 5      |
|                  | 단가 |        | 5.8   |        | 6.9    |        | 6.6    |         | 7.4    |         | 8.0    |         |        |
|                  | 비율 | 3%     | 3%    | 3%     | 2%     | 2%     | 1%     | 1%      | 1%     | 1%      | 1%     |         |        |
| 인도네시아            |    | 167    | 30    | 190    | 29     | 230    | 34     | 392     | 57     | 959     | 118    | 567     | 61     |
|                  | 단가 |        | 5.6   |        | 6.6    |        | 6.8    |         | 6.9    |         | 8.1    |         |        |
|                  | 비율 | 0.4%   | 0.3%  | 0.4%   | 0.3%   | 0.4%   | 0.3%   | 0.5%    | 0.4%   | 1%      | 1%     |         |        |
| 아세안              |    | 21240  | 3125  | 22726  | 3341   | 30032  | 4168   | 45771   | 5956   | 44458   | 9302   | -1313   | 3346   |
|                  | 단가 |        | 6.8   |        | 6.8    |        | 7.2    |         | 7.7    |         | 4.8    |         |        |
| 총계               |    | 43,412 | 9,656 | 46,553 | 10,604 | 60,496 | 12,518 | 83,003  | 15,755 | 76,918  | 17,087 | -6,085  | 1,332  |
|                  | 단가 |        | 4.5   |        | 4.4    |        | 4.8    |         | 5.3    |         | 4.5    |         |        |
| TRQ<br>전체<br>아세안 |    |        |       |        |        |        |        |         | 1,342  |         | 1,554  |         |        |
|                  |    |        |       |        |        |        |        |         | 8.5%   |         | 9%     |         |        |
|                  |    |        |       |        |        |        |        |         | 23%    |         | 17%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다. 특이할 만한 것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2007년 냉동새우살 수입금액과 중량이 모두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뿐이라는 것이다.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는 감소했다. 태국으로부터의 TRQ 적용 수입은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한·아세안 FTA 냉동새우살 TRQ 혜택은 베트남이 모두 누렸다. 2008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천톤이상 감소했고 태국으로부터는 1백톤 감소했다. 그러나 베트남으로부터는 5백톤, 말레이시아 5백 1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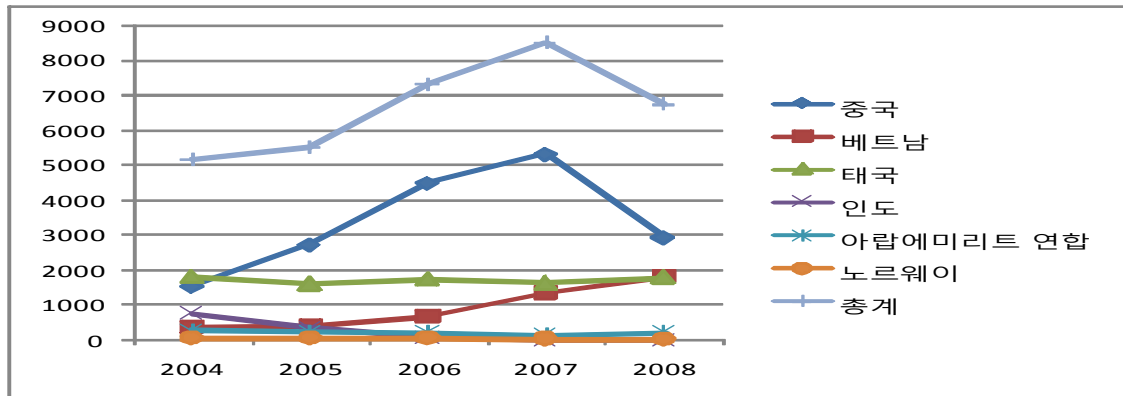
톤, 인도네시아 6십 톤 등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

### 3) 가공새우

가공새우 수입량은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7천톤 이하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 태국 순서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대폭 감소했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변동은 거의 없으나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계속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태국보다 많은 양이 수입되어 TRQ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림 3-8] 한국의 국가별 가공새우 수입추세

(단위 : 톤)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2007년 가공새우의 수입은 2006년에 비해 중량 면에서 1천 1백 8십 7톤, 금액 면에서 8백 4십만 불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8백 1십 6톤이 증가하였고, 베트남이 6백 5십 8톤 증가하였고 다른 국가는 모두 200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 면에서 117%, 중량 면에서 97%가 증가하여 중국의 21%와 18%에 비해 그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중량 면에서 1천 7백 4십 6톤 감소하였고 금액 면에서도 1천만 4십만 불 감소하였다. 경기침체가 수입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량에서 2천 3백 8십 6톤 감소했고 금액은 1천만 불 이상 감소했다. 베트남은 중량 면에서 4백 7십 8톤, 금액 면에서 1백 5십만 불이 증가하였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59톤 증가했으나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금액 면에서는 1백 7십만 불 감소하였다.

[표 3-16] 한국의 국가별 가공새우 수입현황

(단위 : 천불, 톤)

| 국가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
| 중국               |      | 6843  | 1,525 | 12318 | 2,723 | 20517 | 4,501   | 24884 | 5,317   | 14593 | 2931    | -10291 | -2386 |
|                  | 단가   |       | 4.49  |       | 4.52  |       | 4.56    |       | 4.68    |       | 4.98    |        |       |
|                  | 비율   | 23%   | 29%   | 39%   | 49%   | 47%   | 62%     | 48%   | 63%     | 35%   | 43%     |        |       |
| 베트남              |      | 2728  | 369   | 3041  | 393   | 5658  | 675     | 12304 | 1,334   | 13888 | 1812    | 1584   | 478   |
|                  | TRQ  |       |       |       |       |       |         |       |         |       |         |        |       |
|                  | 단가   |       | 7.38  |       | 7.74  |       | 8.38    |       | 9.23    |       | 7.66    |        |       |
| 비율               | 9%   | 7%    | 10%   | 7%    | 13%   | 9%    | 24%     | 16%   | 33%     | 27%   |         |        |       |
| 태국               |      | 14082 | 1,807 | 12524 | 1,601 | 15521 | 1,733   | 13741 | 1,627   | 11999 | 1786    | -1742  | 159   |
|                  | 단가   |       | 7.79  |       | 7.82  |       | 8.96    |       | 8.45    |       | 6.72    |        |       |
|                  | 비율   | 48%   | 35%   | 40%   | 29%   | 36%   | 24%     | 26%   | 19%     | 29%   | 26%     |        |       |
| 아랍에미리트 연합        |      | 988   | 267   | 881   | 221   | 909   | 217     | 592   | 135     | 948   | 205     | 356    | 70    |
|                  | 단가   |       | 3.70  |       | 3.99  |       | 4.18    |       | 4.38    |       | 4.62    |        |       |
|                  | 비율   | 3%    | 5%    | 3%    | 4%    | 2%    | 3%      | 1%    | 2%      | 2%    | 3%      |        |       |
| 노르웨이             |      | 338   | 51    | 375   | 60    | 377   | 60      | 275   | 40      | 191   | 21      | -84    | -19   |
|                  | 단가   |       | 6.68  |       | 6.20  |       | 6.23    |       | 6.79    |       | 9.10    |        |       |
|                  | 비율   | 1%    | 1%    | 1%    | 1%    | 1%    | 1%      | 1%    | 0%      | 0%    | 0%      |        |       |
| 인디아              |      | 3440  | 770   | 1655  | 355   | 306   | 61      | 24    | 5       | 0     | 0       | -24    | -5    |
|                  | 단가   |       | 4.47  |       | 4.66  |       | 4.99    |       | 4.44    |       | 0.00    |        |       |
|                  | 비율   | 12%   | 15%   | 5%    | 6%    | 1%    | 1%      | 0%    | 0%      | 0%    | 0%      |        |       |
| 아세안<br>총계        |      | 16810 | 2176  | 15565 | 1994  | 21179 | 2408    | 26045 | 2961    | 25887 | 3598    | -158   | 637   |
|                  | 단가   |       | 7.7   |       | 7.8   |       | 8.8     |       | 8.8     |       | 7.2     |        |       |
| 총계               |      | 29504 | 5,181 | 31594 | 5,525 | 43582 | 7,314   | 52023 | 8,501   | 41619 | 6755    | -10404 | -1746 |
|                  | 단가   |       | 5.69  |       | 5.72  |       | 5.96    |       | 6.12    |       | 6.16    |        |       |
| TRQ<br>전체<br>아세안 |      |       |       |       |       |       |         |       | 306     |       | 1,085   |        |       |
|                  |      |       |       |       |       |       |         |       | 4%      |       | 16%     |        |       |
|                  |      |       |       |       |       |       |         |       | 10%     |       | 30%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국가별 점유율은 2007년의 경우 중국이 63%, 태국 19%, 베트남 16% 순서이며 2008년에는 중국 43%, 태국 26%, 베트남 27%의 순서였다. 베트남의 점유율은 2006년에 비해 7%가 상승했으며 태국은 5% 하락했다. 중국의 단가가 킬로 그램당 4.68달러이고 베트남의 단가가 9.23달러로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TRQ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TRQ 낙찰량은 306톤이었는데 이는 전체 수입량 8천 5백톤의 4%에 해당한다. 2008년 낙찰량은 1,085톤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이다. 2007년에는 TRQ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가공새우 TRQ 물량 2천톤이 모두 낙찰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의 24%에 해당하고 2008년 기준 30%에 해당하여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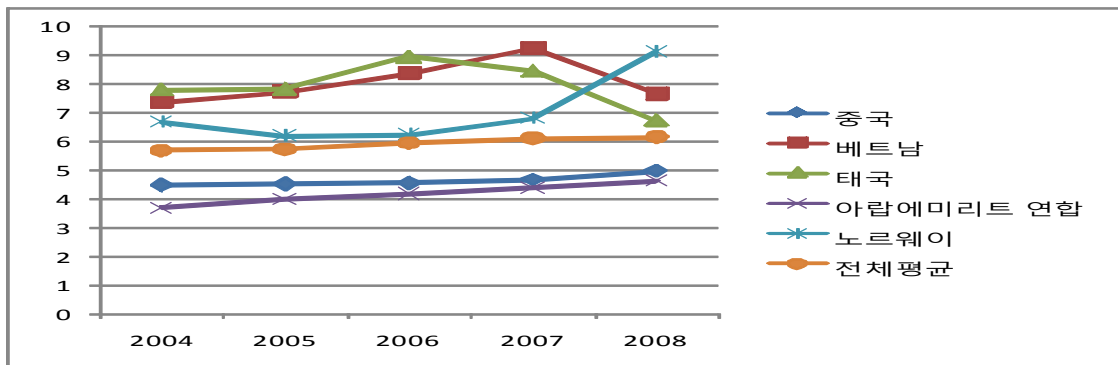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가공새우의 국가별 수입단가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수입단가는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국가별 수입단가는 많은 변동이 있다. 중국은 수입단가가 전체 수입 국가의 평균단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반면 베트남과



태국의 평균 수입단가는 전체 국가의 평균 수입단가보다 낮았다. 2008년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수입단가가 킬로그램당 각각 1.57달러, 1.73달러 등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체 수입량이 21톤으로 양은 많지 않지만 2008년 노르웨이의 수입단가는 킬로그램당 2.3달러가 상승하였다.

[그림 3-9] 한국의 국가별 가공새우 수입단가

(단위 :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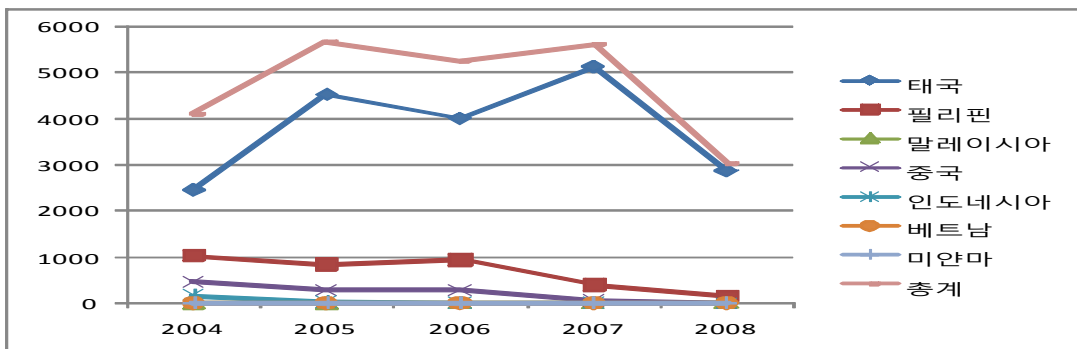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 4) 신냉새우

한국은 매년 3-6천톤의 신냉새우를 수입하고 있다. 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냉새우를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필리핀과 중국 순이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이유는 양식장과 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정부가 수입위생 증명서 발급에 적극 협조하기 때문이며 평균 수입단가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다. 필리핀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0] 한국의 국가별 신냉새우 수입추세

(단위 : 톤)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한국의 연평균 신냉새우 수입량은 4천 7백톤이다. 신냉새우 평균 수입단가는 2006년 6.1불, 2007년 5.99불, 2008년 5.78불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국가별 평균 수입단가는 중국이 평균 4.95불로 가장 낮으며 태국 6.1불, 말레이시아 7.1불, 필리핀 8.86불순이다. 한·아세안 신냉새우 TRQ 물량 가운데 2007년에는 낙찰량이 없었으며 2008년에는 27톤이 낙찰되어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0.9%였다.

신냉새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새우와 직접적인 경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신냉새우를 수입하는 태국이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하여 2009년 상반기 중에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2009년에는 신냉새우 TRQ 물량 전량이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RQ 물량이 300톤이어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내외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의 새우는 8월에서 11월에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 TRQ 물량이 7월 이전에 수입이 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7] 한국의 국가별 신냉새우 수입현황

(단위 : 천불, 톤)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태국      | 18442 | 2440  | 26985 | 4517  | 22468 | 4004  | 29956   | 5130  | 16020   | 2859         | -13936  | -2271 |
|         |       | 7.56  |       | 5.97  |       | 5.61  |         | 5.84  |         | 5.60         |         |       |
|         | 57.0% | 59.3% | 73.8% | 79.6% | 70.1% | 76.2% | 89.1%   | 91.4% | 91.2%   | 94.1%        |         |       |
| 필리핀     | 10184 | 1028  | 7737  | 838   | 7992  | 939   | 3150    | 397   | 1412    | 162          | -1738   | -235  |
|         |       | 9.91  |       | 9.23  |       | 8.51  |         | 7.93  |         | 8.72         |         |       |
|         | 31.5% | 25.0% | 21.2% | 14.8% | 24.9% | 17.9% | 9.4%    | 7.1%  | 8.0%    | 5.3%         |         |       |
| 말레이시아   | 4     | 0     | 2     | 0     | 44    | 6     | 33      | 4     | 52      | 9            | 19      | 5     |
|         |       |       |       |       |       | 7.33  |         | 8.25  |         | 5.78         |         |       |
|         | 0.0%  | 0.0%  | 0.0%  | 0.0%  | 0.1%  | 0.1%  | 0.1%    | 0.1%  | 0.3%    | 0.3%         |         |       |
| 중국      | 2161  | 470   | 1539  | 289   | 1436  | 295   | 322     | 68    | 26      | 5            | -296    | -63   |
|         |       | 4.60  |       | 5.33  |       | 4.87  |         | 4.74  |         | 5.20         |         |       |
|         | 6.7%  | 11.4% | 4.2%  | 5.1%  | 4.5%  | 5.6%  | 1.0%    | 1.2%  | 0.1%    | 0.2%         |         |       |
| 인도네시아   | 1501  | 170   | 294   | 31    | 103   | 11    | 156     | 14    | 46      | 2            | -110    | -12   |
|         |       | 8.83  |       | 9.48  |       | 9.36  |         | 11.14 |         | 23.00        |         |       |
|         | 4.6%  | 4.1%  | 0.8%  | 0.5%  | 0.3%  | 0.2%  | 0.5%    | 0.2%  | 0.3%    | 0.1%         |         |       |
| 베트남     | 76    | 9     | 1     | 0     | 7     | 1     | 1       | 0     | 16      | 1            | 15      | 1     |
|         |       | 8.44  |       |       |       | 7.00  |         |       |         | 16.00        |         |       |
|         | 0.2%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1%    | 0.0%         |         |       |
| 미얀마     | -     | -     | 2     | 0     | 24    | 2     | 13      | 1     | 1       | 0            | -12     | -1    |
|         |       |       |       |       |       | 12.00 |         | 13.00 |         |              |         |       |
|         |       |       | 0.0%  | 0.0%  | 0.1%  | 0.0%  | 0.0%    | 0.0%  | 0.0%    | 0.0%         |         |       |
| 아세안 총계  | 30207 | 3647  | 35021 | 5386  | 30638 | 4963  | 33309   | 5546  | 17547   | 3033         | -15762  | -2513 |
|         |       | 8.28  |       | 6.50  |       | 6.17  |         | 6.01  |         | 5.79         |         |       |
|         | 93%   | 89%   | 96%   | 95%   | 96%   | 94%   | 99%     | 99%   | 100%    | 100%         |         |       |
| 총계      | 32368 | 4117  | 36560 | 5675  | 32074 | 5258  | 33631   | 5614  | 17573   | 3,038        | -16058  | -2576 |
|         |       | 7.86  |       | 6.44  |       | 6.10  |         | 5.99  |         | 5.78         |         |       |
| TRQ 낙찰량 |       |       |       |       |       |       |         |       |         | 27<br>(0.9%)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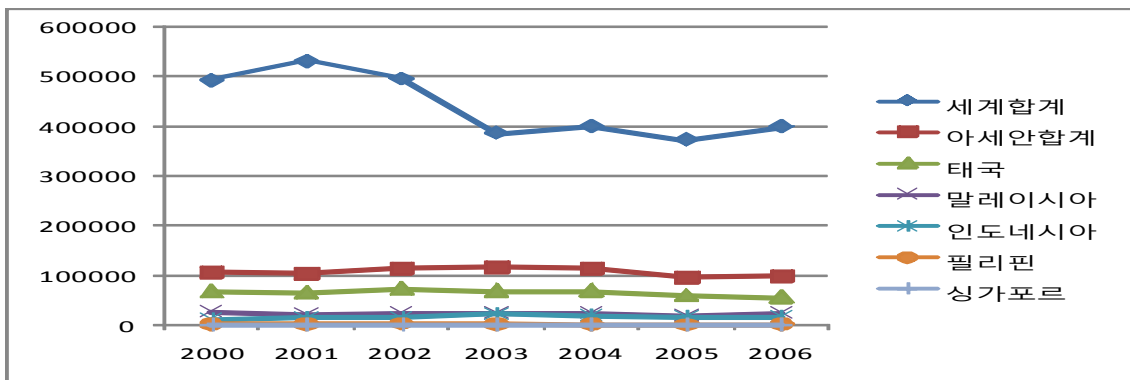
### 제3절 갑오징어 생산 및 무역

#### 1. 갑오징어 생산

다음 그림은 세계와 아세안 국가들의 갑오징어 생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갑오징어 생산은 2002년까지 50만 톤 이상 생산되었으나 2003년 이후 40만 톤으로 정체상태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갑오징어 생산은 큰 변동이 없이 10만 톤 정도이다. 이 가운데 태국이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서이다.

[그림 3-11] 갑오징어 생산 추세

(단위 : 톤)



자료 : FAO FishStat Plus

다음은 세계 갑오징어의 생산현황이다. 세계 갑오징어 생산은 200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6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05년에는 3십 7만 톤이 생산되었다. 2006년에는 2005년보다 2만 톤 이상 증가하여 약 4십만 톤이 생산되었다.

[표 3-18] 세계 갑오징어 생산현황

(단위 : 톤)

| 년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생산량 | 492,281 | 531,848 | 495,523 | 385,582 | 399,101 | 372,004 | 398,745 |

자료 : FAO FishStat Plus

## 2. 한국 갑오징어 생산

갑오징어는 연근해어업에서 생산되지 않고 원양어업에서 주로 생산이 되며 매년 평균 1천톤에서 3천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다. 갑오징어의 경우 전체 생산량도 많지 않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한·아세안 TRQ 제도 운영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9] 갑오징어 생산현황

(단위 : M/T, 천원)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생산량   | 생산액        |
| 3,633 | 106,034,750 | 2,882 | 4,403,383 | 1,908 | 4,046,855 | 945  | 2,472,490 | 1,118 | 2,932,946 | 2,781 | 15,947,370 |

자료 : 어업생산통계 <<http://fs.fips.go.kr/index.jsp>>

## 3. 아세안 갑오징어 생산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갑오징어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 요리에 사용되는 큰 종류의 갑오징어와 스파게티 요리, 뷔페식당에서 제공되는 작은 갑오징어(baby cuttlefish)이다. 큰 갑오징어는 피레트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갑오징어는 Baby cuttlefish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표는 아세안 국가의 갑오징어 생산현황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전 세계 갑오징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이다. 아세안 국가의 전체 생산량은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갑오징어의 최대 생산 국가는 태국으로 매년 5만 6천톤에서 7만 3천까지 생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2만 톤 이상, 인도네시아가 1만 5천톤에서 2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FAO 통계에서는 베트남의 갑오징어 생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한·아세안 TRQ 물량 수입 실적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갑오징어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0] 아세안 국가 갑오징어 생산현황

(단위 : 톤)

| 국가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생산비중 |
|-------|---------|---------|---------|---------|---------|--------|--------|------|
| 태국    | 67,294  | 65,589  | 73,212  | 68,207  | 68,655  | 59,970 | 56,114 | 14%  |
| 말레이시아 | 26,314  | 21,467  | 23,601  | 23,730  | 25,000  | 19,652 | 24,026 | 6%   |
| 인도네시아 | 11,945  | 15,789  | 15,887  | 23,241  | 19,251  | 16,470 | 17,240 | 4%   |
| 필리핀   | 2,016   | 2,320   | 2,475   | 1,892   | 1,369   | 982    | 1,104  | 0%   |
| 싱가포르  | 134     | 56      | 57      | 38      | 58      | 34     | 65     | 0%   |
| 합계    | 107,703 | 105,221 | 115,232 | 117,108 | 114,333 | 97,108 | 98,549 |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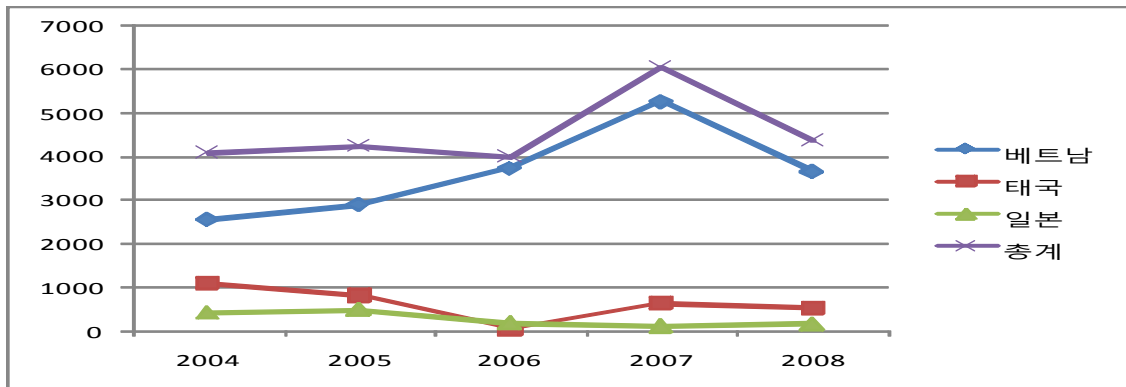
자료 : FAO FishStat Plus

#### 4. 한국의 갑오징어 수입

한국의 갑오징어 수입은 2007년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1천 6백톤 하락하였다. FAO 통계에는 베트남의 갑오징어 생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갑오징어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베트남 갑오징어 점유율이 94%, 2007년 87%, 2008년 84%였다.

[그림 3-12] 한국의 국가별 갑오징어 수입추세

(단위 : 톤)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국가별 수입단가는 태국이 가장 높고 베트남 일본 순이다. 태국의 수입단가가 높은 이유는 Baby cuttlefish가 아닌 일반 갑오징어 피레트가 주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갑오징어는 일본으로부터도 수입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다. 갑오징어 TRQ 수입 물량이 전체 갑오징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2%에서 2008년에는 30%로 향상되었다. 태국으로부터의 평균 수입량이 6백 4십 톤이고 아세안 국가의 TRQ 물량이 2000톤이므로 태국이 FTA 협정 당사국이 되면 한·아

세안 갑오징어 TRQ 물량이 모두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갑오징어의 경우 일반 갑오징어와 Baby cuttlefish의 특징 및 가격 차이가 뚜렷하므로 HS 코드 분리와 표준품명 규격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제5장에서 검토한다.

[표 3-21] 한국의 국가별 갑오징어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베트남     | 5840   | 2567  | 6921   | 2914  | 9779   | 3749  | 15715   | 5,266 | 11663   | 3,664 | -4052   | -1602 |
|         |        | 2.28  |        | 2.38  |        | 2.61  |         | 2.98  |         | 3.18  |         |       |
|         | 56.4%  | 62.7% | 59.3%  | 68.7% | 94.2%  | 93.6% | 75.8%   | 87.2% | 73.9%   | 83.7% |         |       |
| 태국      | 3649   | 1108  | 3609   | 834   | 196    | 69    | 4676    | 661   | 3840    | 551   | -836    | -110  |
|         |        | 3.29  |        | 4.33  |        | 2.84  |         | 7.07  |         | 6.97  |         |       |
|         | 35.3%  | 27.1% | 30.9%  | 19.7% | 1.9%   | 1.7%  | 22.5%   | 10.9% | 24.3%   | 12.6% |         |       |
| 일본      | 859    | 421   | 1,142  | 495   | 407    | 186   | 353     | 113   | 270     | 161   | -83     | 48    |
|         |        | 2.04  |        | 2.31  |        | 2.19  |         | 3.12  |         | 1.68  |         |       |
|         | 8.3%   | 10.3% | 9.8%   | 11.7% | 3.9%   | 4.6%  | 1.7%    | 1.9%  | 1.7%    | 3.7%  |         |       |
| 아세안     | 9489   | 3675  | 10530  | 3748  | 9975   | 3818  | 20391   | 5927  | 15503   | 4215  | -4888   | -1712 |
|         |        | 2.58  |        | 2.81  |        | 2.61  |         | 3.44  |         | 3.68  |         |       |
|         | 92%    | 90%   | 90%    | 88%   | 96%    | 95%   | 98%     | 98%   | 98%     | 96%   |         |       |
| 총계      | 10,348 | 4,096 | 11,672 | 4,243 | 10,382 | 4,004 | 20,744  | 6,040 | 15,773  | 4,376 | -4971   | -1664 |
|         |        | 2.53  |        | 2.75  |        | 2.59  |         | 3.43  |         | 3.60  |         |       |
| TRQ 낙찰량 |        |       |        |       |        |       |         | 1,351 |         | 1,307 |         |       |
| 비율      |        |       |        |       |        |       |         | 22%   |         | 30%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 제4절 TRQ 입찰결과 분석

### 1. 2007년 수산물 TRQ 입찰 결과

#### 가. 입찰현황

TRQ물량 1차 입찰 결과(2007.9.5-9.6) 전체 물량 9,300톤 중 5,692톤이 낙찰되었고 3,608톤이 낙찰되지 못했다. 구매납입금은 41억 원이었다. 전체 낙찰률은 61%였으며 품목별 낙찰률은 냉동새우살 100%,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72%, 갑오징어 68%, 가공새우 19%였다. 새우와 보리새우(활·냉장)는 낙찰이 되지 않았다. 새우살의 경우 낙찰률은 100%였지만 실제 통관비율은 냉동새우보다 낮은 88%였다.

[표 3-22] 2007년 TRQ 입찰 현황

(단위 : 톤, 원)

| 품 목 명           | 전체물량  | 낙찰물량  | 낙찰률  | 잔여물량  | 구매납입금         |
|-----------------|-------|-------|------|-------|---------------|
| 계               | 9,300 | 5,692 | 61%  | 3,608 | 4,122,807,030 |
| 새우살(냉동)         | 1,350 | 1,350 | 100% | 0     | 1,278,906,760 |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3,650 | 2,617 | 72%  | 1,033 | 2,168,807,200 |
| 갑오징어(냉동)        | 2,000 | 1,351 | 68%  | 649   | 231,673,570   |
| 새우(가공)          | 2,000 | 374   | 19%  | 1,626 | 443,419,500   |
| 새우와 보리새우(활, 냉장) | 300   | -     | -    | 300   | -             |

#### 나. 입찰결과 분석

국가별로 새우살은 베트남과 미얀마, 냉동새우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갑오징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품목이 최종 통관되었다. 낙찰된 물품 가운데 통관된 물량은 5,207톤으로 전체 낙찰물량의 92%이다. 품목별 통관비율은 새우살이 88%, 냉동새우와 갑오징어가 93%, 가공새우가 86%이다. 낙찰을 받았으나 통관 즉 수입하지 않은 물량은 새우살이 162톤, 냉동새우가 181톤, 갑오징어가 91톤, 가공새우가 51톤이다.

[표 3-23] 2007년 TRQ 낙찰물량 통관 현황

(단위 : 톤)

| 품 목 명        | 통관량   | 미통관량 | 통관비율 |
|--------------|-------|------|------|
| 계            | 5,207 | 485  | 92   |
| 새우살(냉동)      | 1,188 | 162  | 88   |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2,436 | 181  | 93   |
| 갑오징어(냉동)     | 1,260 | 91   | 93   |
| 새우(가공)       | 323   | 51   | 86   |

국가별 낙찰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냉동새우살, 냉동새우, 가공새우, 갑오징어 모든 품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품목별 비율은 새우살 99.9%, 냉동새우 78%, 갑오징어 96%, 가공새우 100%였으며 전체 TRQ 통관물량 가운데 베트남 수산물의 비율은 81.1%였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의 냉동새우와 갑오징어가 각각 359톤과 40톤이 낙찰되어 전체 통관 물량 가운데 6.4%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냉동새우와 갑오징어 170톤과 5톤이 통과되어 전체 통관물량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냉동새우 17톤과 새우살 0.85톤이 통관되어 전체 통관물량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4] 국가별 2007년 TRQ 낙찰 결과

(단위 : 톤)

| 품 목 명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계     |
|--------------|-----------------|-----------|-----------|-------------|-------|
| 계            | 4,615.15(81.1%) | 364(6.4%) | 210(3.7%) | 17.85(0.3%) | 5,207 |
| 새우살(냉동)      | 1,187.15        |           |           | 0.85        | 1,188 |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1,890           | 359       | 170       | 17          | 2,436 |
| 갑오징어(냉동)     | 1,215           | 40        | 5         |             | 1,260 |
| 새우(가공)       | 323             |           |           |             | 323   |

## 2. 2008년 입찰결과

다음 표는 2008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결과이다. TRQ 물량 9천 3백톤 가운데 2008년 전체 통관량은 7,190톤으로 2007년에 비해 1천 4백 9십 8톤 증가했다. 품목별 통관량은 냉동새우살이 1천 5백 5십 4톤으로 2007년에 비해 6톤 감소했고, 냉동새우는 3천 2백 1십 7톤으로 2007년에 비해 8백 1십 톤 증가했다. 가공새우는 1천 8십 5톤으로 2007년에 비해 7백 1십 1톤 증가했다. 갑오징어는 1천 3백 7톤으로 2007년에 비해 4십 4톤 감소했다. 신냉새우는 2007년에는 낙찰물량이 없었으나



2008년에는 2십 7톤이 통관되었다. 2008년 공매 납입금 징수액은 6십 2억 7천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2십 1억 4천 8백만원 증가했다. 품목별 공매납입금 징수액은 냉동새우가 3십억 3천, 냉동새우살이 1십 6억 4천만원, 가공새우가 1십 2억 9천만원, 갑오징어가 2억 8천만원, 신냉새우가 3천만원이다. 공매납입금은 모든 품목에서 증가했는데 냉동새우 8억 6천만원, 냉동새우살 3억 6천만원, 가공새우 8억 4천만원, 갑오징어 5천만원, 신냉새우 3천만원이 증가했다.

2008년 톤당 공매납입금은 8십 7만 2천원으로 2007년 7십 2만 4천원보다 1십 4만 8천원 증가했다. 톤당 공매납입금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공새우로 1백 1십 8만 6천원이며, 냉동새우살은 1백 5만 3천원, 신냉새우 1백 1십 8만원, 냉동새우 9십 4만 3천원, 냉동갑오징어 2십 1만 4천원 순이다. 2008년도에 공매납입금이 2007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낙찰 및 통관물량이 1천 4백 9십 8톤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모든 품목의 톤당 공매납입금이 2007년 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냉동새우살의 톤당 공매납입금은 2007년에 비해 2십 3만 4천원이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냉동갑오징어는 4만 3천원, 냉동새우는 4만 1천원 증가했으며 가공새우는 1천원 증가했다.

[표 3-25] 2008년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 결과

(단위 : 톤, 원)

| 품 목 명      | 전체물량        | 전체 통관량      |             |              | 공매납입금 징수액            |                      |                      | 톤당 공매납입금       |                |                |
|------------|-------------|-------------|-------------|--------------|----------------------|----------------------|----------------------|----------------|----------------|----------------|
|            |             | 2007        | 2008        | 증감           | 2007                 | 2008                 | 증감                   | 2007           | 2008           | 증감             |
| <b>합 계</b> | <b>9300</b> | <b>5692</b> | <b>7190</b> | <b>1,498</b> | <b>4,122,807,030</b> | <b>6,270,744,620</b> | <b>2,147,937,590</b> | <b>724,316</b> | <b>872,148</b> | <b>147,832</b> |
| 냉동새우       | 3440        | 2407        | 3217        | 810          | 2,168,807,200        | 3,033,219,480        | 864,412,280          | 901,042        | 942,872        | 41,830         |
| 냉동새우살      | 1560        | 1350        | 1554        | 204          | 1,278,906,760        | 1,637,020,930        | 358,114,170          | 947,338        | 1,053,424      | 106,086        |
| 가공새우       | 2000        | 374         | 1085        | 711          | 443,419,500          | 1,287,661,230        | 844,241,730          | 1,185,614      | 1,186,785      | 1,171          |
| 신냉새우       | 300         | 0           | 27          | 27           | -                    | 31,873,970           | 31,873,970           |                | 1,180,517      |                |
| 갑오징어       | 2000        | 1351        | 1307        | -44          | 231,673,570          | 280,969,010          | 49,295,440           | 171,483        | 214,972        | 43,489         |

다음 표는 2008년 차수별 낙찰량과 통관량을 보여준다. 전체 3차 입찰을 진행했는데 1차 낙찰량은 전체 8천 3톤의 60%에 해당하는 4천 7백 9십 8톤이었으며 2차 낙찰량은 2천 8백 7십 5톤으로 36%, 3차 낙찰량은 3백 3십 톤으로 4%에 해당한다. 냉동새우살만이 1차 입찰 때의 낙찰률이 80%가 넘고 나머지는 60%이하이다. 2차 입찰시에는 갑오징어가 전체 낙찰량의 58%가 낙찰되었으며 냉동새우 42%, 가공새우 33% 순서이다. 신냉새우의 입찰에는 업체들이 1회 입찰에만 참여를 했다.

냉동새우살은 1차 입찰 때 낙찰량이 1천 5백 6십 톤으로 전체의 냉동새우살 낙찰량의 86%이며, 냉동새우는 1천 8백 7십 3톤으로 전체 냉동새우 낙찰량의 54%에 해당한다. 가공새우는 7백 4십 1톤의 전체 가공새우 낙찰량의 56%, 갑오징어는 5백 7십 2톤으로 전체 갑오징어 낙찰량의 42%에 해당한다.

[표 3-26] 2008년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 차수별 낙찰현황

(단위 : 톤)

| 품 목 명    | 1차 낙찰량 | 1차 통관량   | 2차 낙찰량 | 2차 통관량   | 3차 낙찰량 | 3차 통관량   | 낙찰량 (a) | 통관량 (b) | 미통관량 | 통관비율 (b/a) |
|----------|--------|----------|--------|----------|--------|----------|---------|---------|------|------------|
| 계        | 4,798  | 4,095.68 | 2,875  | 2,770.17 | 330    | 323.6993 | 8,003   | 7,190   | 813  | 90%        |
| (비율)     | 60%    | 57%      | 36%    | 39%      | 4%     | 5%       |         |         |      |            |
| 새우살(냉동)  | 1,560  | 1,303.68 | 191    | 189.6931 | 61     | 60.3315  | 1,812   | 1,554   | 258  | 86%        |
| (비율)     | 86%    | 84%      | 11%    | 12%      | 3%     | 4%       |         |         |      |            |
| 냉동새우     | 1,873  | 1,685.25 | 1,456  | 1,415.10 | 122    | 116.9478 | 3,451   | 3,217   | 234  | 93%        |
| (비율)     | 54%    | 52%      | 42%    | 44%      | 4%     | 4%       |         |         |      |            |
| 새우(가공)   | 741    | 508.9113 | 440    | 437.3974 | 139    | 138.42   | 1,320   | 1,085   | 235  | 82%        |
| (비율)     | 56%    | 47%      | 33%    | 40%      | 11%    | 13%      |         |         |      |            |
| 갑오징어(냉동) | 572    | 571.0546 | 788    | 727.9741 | 8      | 8        | 1,368   | 1,307   | 61   | 96%        |
| (비율)     | 42%    | 44%      | 58%    | 56%      | 1%     | 1%       |         |         |      |            |
| 신냉새우     | 52     | 27       |        |          |        |          | 52      | 27      | 25   | 52%        |
| (비율)     | 100%   | 100%     |        |          |        |          | 100%    | 100%    |      |            |

2008년 낙찰량 가운데 미통관 물량은 8백 1십 3톤이며, 새우살 2백 5십 8톤 냉동 새우 2백 3십 4톤, 갑오징어 6십 1톤, 신냉새우 2십 5톤이다. 전체 낙찰량의 통관비율은 90%이며 개별 품목은 갑오징어가 96%로 가장 높고 냉동새우 93%, 새우살 86%, 가공새우 82%이며 신냉새우는 52%로 가장 낮다.

다음 표는 국가별 2008년 TRQ 물량 낙찰결과이다. 전체 TRQ 물량 가운데 84%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말레이시아가 8%, 인도네시아가 4%, 필리핀이 3%, 미얀마가 1%이다. 국가별 낙찰 결과는 새우살의 경우 베트남이 99%, 말레이시아 1%이다. 냉동새우는 베트남 74%, 말레이시아 10%, 인도네시아 8%, 필리핀 6%, 미얀마 2%이다. 갑오징어는 베트남 97%, 말레이시아 1% 인도네시아가 2%이다. 가공새우의 경우 베트남 80%, 말레이시아 20%이다. 신냉새우는 필리핀 94%, 베트남 5%, 인도네시아 1%이다.

[표 3-27] 국가별 2008년 TRQ 낙찰 결과

(단위 : 톤)

| 품 목 명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미얀마          | 계                 |
|-------------------------|------------------|----------------|---------------|---------------|--------------|-------------------|
| 계<br>(비율)               | 6,068,355<br>84% | 577,641<br>8%  | 271,611<br>4% | 205,969<br>3% | 71,321<br>1% | 7,194,897<br>100% |
| 새우살(냉동)<br>(비율)         | 1,536,071<br>99% | 14,980<br>1%   |               |               | 2,660        | 1,553,711<br>100% |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br>(비율)    | 2,399,413<br>74% | 327,316<br>10% | 246,567<br>8% | 180,677<br>6% | 68,661<br>2% | 3,222,634<br>100% |
| 감오징어(냉동)<br>(비율)        | 1,264,275<br>97% | 18,000<br>1%   | 24,744<br>2%  |               |              | 1,307,019<br>100% |
| 새우(가공)<br>(비율)          | 867,376<br>80%   | 217,345<br>20% |               |               |              | 1,084,721<br>100% |
| 새우와 보리새우(활, 신선)<br>(비율) | 1,220<br>5%      |                | 300<br>1%     | 25,292<br>94% |              | 26,812<br>100%    |

자료 : 2008년 TRQ 이행결과 조사

### 3. 수입의무 미이행 사유 분석

#### 가. 2007년

본 연구 과정에서 수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업체에 대한 전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업체와 관계자가 출장 중인 업체를 제외하고 10개 업체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이행 사유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입 의무를 이행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 수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물량확보 곤란을 사유로 들고 있는 2개 업체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1개 업체 등 총 3개 업체이다. 물량확보 곤란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문의한 결과 단가가 비쌌지만 물량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표 3-28] 수입의무 불이행 사유

| 사유        | 기업체 수 | 구체적 사유                                                                                                                    |
|-----------|-------|---------------------------------------------------------------------------------------------------------------------------|
| 통관 검사 문제  | 5     | -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업체의 물량을 들여왔고 수검의 정밀검사에 해당하여 이행시기 도과<br>- 수입신고서류 미비 등으로 수입신고가 늦어져 미이행<br>- 물량이 적고 검사기간이 길어져 1월 15일 통관 |
| 물량 확보 곤란  | 2     | - 낙찰 받은 감오징어 단가에 종류가 다른 감오징어(Baby cuttlefish)를 수입할 수 없어 포기<br>- 주 생산시즌이 아니어서 물량 확보 곤란                                     |
| 제도 이해 부족  | 1     | - 전문업체가 아니어서 대비가 부족했고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및 사전 지식이 부족                                                                            |
| 선박 고장     | 1     | - 선박고장으로 이행 기간 내에 수입하지 못함                                                                                                 |
| 수입국가 소요사태 | 1     | - 미얀마 소요사태                                                                                                                |

자료 : 2008년 TRQ 이행결과 조사

나머지 업체들은 수입을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물건을 구입하여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통관상의 문제점이었다. 3개월이 안 되는 짧은 이행 기간 때문에 신규업체로부터 수입을 한 회사의 경우 정밀검사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 기간이 늘어나고 2007년 12월 대선과 연휴, 물류회사 파업 등으로 인하여 수입신고를 12월 26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수입을 하지 못한 경우가 3개 회사나 있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 제도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 회사도 새로운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서류가 미비되어 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사들은 사유에 관계없이 수입이행보증금이 기금에 귀속되고 향후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되어 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통관절차의 지연으로 이행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중처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모든 불이행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2년 동안 입찰절차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이행을 하고자 했던 기업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2007년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수 없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미이행이 발생하자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일률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보증보험증권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하여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모든 수입의무 불이행 기업들이 단일 낙찰예정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TRQ 제도가 기업들에게 큰 이득이 되지 못하여 향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업자들은 새우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서 수입단가가 낮아지면 판매가격도 낮아지고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자금 압박으로 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TRQ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 **나. 2008년 미이행 사유**

미이행 기업은 총 14개 기업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품목별 미이행 기업수는 18개 기업이지만 개별 기업이 2-3개 품목을 낙찰 받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개 기업이 있다.

[표 3-29] 수입의무 불이행 사유

| 품목    | 기업체 수 | 미이행 사유                                                                                                                                                  |
|-------|-------|---------------------------------------------------------------------------------------------------------------------------------------------------------|
| 가공새우  | 6     | - 이행기간이 너무 짧음<br>- 1차 구매 이행기간이 베트남의 주생산시기(7월-10월)가 아닌 관계로 적절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할 수 없었음                                                                         |
| 냉동새우  | 8     | - 현지 물량확보 실패<br>- 정밀검사로 인해 연말까지 수입신고 불가<br>- 조합 절차가 투명하지 못함(1차 입찰 후에 낙찰결과 공개를 했다가 공개하지 않았으며, 1차, 2차 3차 구매기준이 다르고 2차 구매시 예고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표준규격을 갑자기 도입했음) |
| 냉동새우살 | 2     | - 물량확보 실패                                                                                                                                               |
| 감오징어  | 1     | - 관세율이 낮아 구매참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환율이 높아져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커짐                                                                                      |
| 신냉새우  | 1     | - 수출입 조합 추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br>- 이행기간이 짧아 물량확보 실패                                                                                                    |

자료 : 2008년 TRQ 이행결과 조사

## 제5절 TRQ 품목 이행 현황

### 1. 입찰 참가 업체 현황

다음 표는 2007년과 2008년의 입찰 참가 업체 현황이다. 2007년에는 17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2008년에는 21개 업체가 증가한 20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2008년에는 2007년보다 1회 더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 참여기업 증가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표 3-30] TRQ 입찰 참가 업체 현황

|              | 입찰         |            | 낙찰         |            | 수입미이행      |            | 수입이행 완료    |            |
|--------------|------------|------------|------------|------------|------------|------------|------------|------------|
|              | 2007       | 2008       | 2007       | 2008       | 2007       | 2008       | 2007       | 2008       |
| <b>계</b>     | <b>179</b> | <b>200</b> | <b>115</b> | <b>153</b> | <b>17</b>  | <b>18</b>  | <b>98</b>  | <b>135</b> |
| <b>(비율)</b>  |            |            | <b>64%</b> | <b>77%</b> | <b>15%</b> | <b>12%</b> | <b>85%</b> | <b>88%</b> |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58         | 62         | 47         | 53         | 6          | 8          | 41         | 45         |
| 새우(가공)       | 39         | 52         | 22         | 33         | 5          | 6          | 17         | 27         |
| 새우살(냉동)      | 51         | 55         | 25         | 40         | 2          | 2          | 23         | 38         |
| 갑오징어(냉동)     | 31         | 28         | 21         | 24         | 4          | 1          | 17         | 23         |
| 신냉새우         |            | 3          |            | 3          |            | 1          |            | 2          |

자료 : 2008년 TRQ 이행결과 조사

2007년에는 115개 기업이 낙찰을 받아 64%의 낙찰률을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153개 업체가 낙찰을 받아 낙찰률은 77%로 2007년보다 13% 증가 하였다. 낙찰을 받은 기업 가운데 수입 미이행 업체는 2007년에 17개 업체로 수입의무 미이행률은 15%였으며, 2008년에 18개 업체로 미이행률이 12%였다. 수입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냉새우인데 입찰 참여기업이 3개 업체이고 낙찰기업 3개 업체 미이행 기업 1개 업체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008년도에 미이행 기업수가 많은 품목은 냉동새우가 8개 업체로 미이행률이 15%이며 가공새우가 6개로 미이행률이 18%이다. 2007년에 미이행률이 높은 품목은 가공새우로 22개 낙찰기업 가운데 5개 업체가 미이행 하여 미이행률이 23%였고 갑오징어가 21개 낙찰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수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이 19%였다.

## 2. 베트남 및 아세안 수출업체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산물 수출 시설로 등록한 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위생약정 현황을 보여준다.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했으며 베트남의 경우 415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다.

[표 3-31] 아세안 국가 수출가공 시설 등록현황

| 대상국 | 위 생 약 정 명             | 체결일       | 시행일       | 등록시설(개소) |     |
|-----|-----------------------|-----------|-----------|----------|-----|
|     |                       |           |           | 한국측      | 상대국 |
| 베트남 | 수출입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약정 | '00. 7. 6 | '03. 4. 1 | 45       | 415 |
| 인 니 | 수출입수산물 위생안전 약정        | '05. 9.15 | '05.12.14 | 32       | 369 |
| 태 국 | 수출입수산물 위생안전 약정        | '06. 6.27 | '06. 7.27 | 34       | 248 |

자료 : 수산물검사원

약정 주요내용은 모두 유사한데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 및 상대국가에 명단 통보, 수출시 위생증명서 발급 및 문제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상대국 등록시설에 대해 상호 현지 위생 점검 실시, 양국 간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3. TRQ 수입품목 규격

### 가. TRQ 품목 세부 규격

다음 표는 2008년 TRQ 품목 세부 수입 규격 현황이다. 새우살과 가공새우는 관세청 표준규격에 따라 신고를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냉동새우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를 M과 L로 신고한 것도 있다. 신냉새우의 경우 표준규격에 의해 신고를 한 것은 없다.

[표 3-32] 2008 TRQ 수입 품목 세부 규격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 새우살(냉동)             |        | 가공새우  |         | 새우와 보리새우<br>(신냉) | 갑오징어 |               |
|--------------|-------|---------------------|--------|-------|---------|------------------|------|---------------|
|              |       |                     |        |       |         |                  | 피렛   | 소형            |
| 8/12         | 블랙타이거 | S                   | 8/10   | S     | 31/40   | 8/12             | 1/2  | 10/20         |
| 10/20        |       | M                   | 10/12  | 2S    | 31/50   | 13/15            | 2/3  | 20/40         |
| 10/15        |       | L                   | 13/15  | M     | 41/50   | 16/20            | 2/4  | 40/60         |
| 16/20        |       | XL                  | 16/20  | MM    | 51/60   | 21/25            | 4/5  | 60/80         |
| 21/25        |       | UL                  | 18/20  | L     | 61/70   | 26/30            | 3/5  | 80/100        |
| 26/30        |       |                     | 21/25  | 2L    | 71/90   | 31/40            | 3/4  | 81/120        |
| 31/35        |       |                     | 21/30  | 3L    | 100/200 |                  | 6/7  | 100/120       |
| 31/40        |       |                     | 26/30  | 4L    | 200/300 |                  | 5/7  | 130/150/500up |
| 41/50        |       | 바나메이VA<br>NA<br>MEI |        | 31/35 | 5L      |                  |      | 7/9           |
| 51/60        |       |                     | 31/40  | 6L    |         |                  | 8/10 |               |
| 61/70        |       |                     | 31/50  | XL    |         |                  | 8/12 |               |
| 71/80        |       |                     | 36/40  | UL    |         |                  |      |               |
| 91/120       |       |                     | 41/50  |       |         |                  |      |               |
| 100/150      |       |                     | 51/60  |       |         |                  |      |               |
| 150/200      |       |                     | 51/70  |       |         |                  |      |               |
| 200/250      |       |                     | 61/70  |       |         |                  |      |               |
| 250/300      |       |                     | 71/90  |       |         |                  |      |               |
|              |       |                     | 91/110 |       |         |                  |      |               |
|              |       | 30/50               |        |       |         |                  |      |               |
|              |       | 50/70               |        |       |         |                  |      |               |
|              |       | 70/90               |        |       |         |                  |      |               |
|              |       | 91/120              |        |       |         |                  |      |               |
|              |       | 91/100              |        |       |         |                  |      |               |

자료 : 2008년 TRQ 수입이행결과 정리

나. 품목별, 규격별 수입현황

1) 냉동새우

다음 표는 2008년 냉동새우의 규격별 수입현황이다. 가장 수입이 많은 규격은 16-20 크기(사이즈)로 28%이며, 다음으로 11-15크기로 26%, 21-25와 26-30이 각각 13%이다. 이러한 4개 규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 관세청 표준규격에 의하여 신고된 M과 L 크기는 전체 수입량에서 0.1%를 차지한다. 2008년 수입된 TRQ 물량을 관세청 표준 품명규격에 따라 분류하면 블랙타이거(홍다리새우) UL 크기에 해당하는 30마리 이하가 90%이다.

[표 3-33] 2008년 냉동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

(단위 : 톤)

|    | 08/10 | 11/15  | 16/20  | 21/25  | 26/30  | 31/35 | 31/40  | 41/50  | 51/60 | M    | L    | 합계        |
|----|-------|--------|--------|--------|--------|-------|--------|--------|-------|------|------|-----------|
| 총량 | 4422  | 851593 | 889005 | 422823 | 422929 | 30998 | 265625 | 154671 | 90482 | 465  | 1914 | 3,222,634 |
| 비중 | 10.0% | 26.4%  | 27.6%  | 13.1%  | 13.1%  | 1.0%  | 8.2%   | 4.8%   | 2.8%  | 0.0% | 0.1% | 100%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 2) 냉동새우살

다음 표는 냉동새우살의 2008년 수입이행 결과로 규격이 너무 많이 세분화 되어 있어 전체 물량에서 3%이하인 크기를 제외한 것이다. 관세청 S 크기부터 UL 크기 까지 표준품명규격에 의하여 수입된 것은 11.6%이다. 가장 수입이 많은 크기는 31-40 크기이며 16%이다. 다음으로 31-35크기로 14%이며 26-30 크기가 12%이다. 관세청 블랙타이거(홍다리새우) 표준규격에 의하여 구분을 하면 UL(30마리 이하) 크기가 28%, XL 크기(31-50마리)가 40%, L 크기(51-100마리)가 16% 등으로 대부분이 크기가 큰 XL와 UL 새우가 수입되고 있다.

[표 3-34] 2008년 새우살 TRQ 수입이행 결과

(단위 : 톤)

|    | S      | M      | L      | XL     | UL     | 16/20  | 21/25   | 26/30   | 31/35   | 31/40   | 41/50   | 61/70  | 71/90   | 합계        |
|----|--------|--------|--------|--------|--------|--------|---------|---------|---------|---------|---------|--------|---------|-----------|
| 총량 | 11,505 | 29,784 | 70,842 | 30,620 | 36,853 | 91,827 | 121,761 | 193,755 | 210,673 | 245,233 | 132,504 | 68,321 | 118,166 | 1,553,711 |
| 비중 | 0.7%   | 1.9%   | 4.6%   | 2.0%   | 2.4%   | 5.9%   | 7.8%    | 12%     | 13.5%   | 15.8%   | 8.5%    | 4.4%   | 7.6%    | 1.00%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 3) 가공새우

가공새우는 다음 표와 같이 70% 이상이 관세청 표준규격에 따라 수입신고 되고 있다. 크기는 M이 29%, L이 28%이다. XL 크기는 1.7%이며 UL 크기는 1.2%이다. 표준 규격에 신고되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많은 크기는 71-90크기로 15%로 표준 규격에 의하면 L에 해당한다. 가공새우 가운데 50% 정도가 L 크기로 블랙타이거(홍다리새우)기준으로 51-100마리 크기이다.

[표 3-35] 2008년 가공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

(단위 : 톤)

|    | S      | 2S     | M       | L       | 2L     | 3L     | 4L     | 41/50  | 51/60  | 71/90   | 100/200 | 합계        |
|----|--------|--------|---------|---------|--------|--------|--------|--------|--------|---------|---------|-----------|
| 총량 | 66,944 | 39,560 | 317,892 | 120,589 | 91,447 | 28,007 | 59,596 | 40,499 | 31,662 | 168,180 | 34,583  | 1,084,721 |
| 비중 | 6.1%   | 3.6%   | 29.2%   | 11.1 %  | 8.4%   | 2.6%   | 5.5%   | 3.7%   | 2.9%   | 15.4%   | 3.2%    | 100%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 4) 신냉새우

신냉새우는 관세청 표준규격에 의하여 신고되는 물량은 없었으며 가장 많이 수입 되는 크기는 21-25크기로 25%이며 다음으로 13-15크기로 21%이다. 관세청 표준

규격에 의하면 88%가 UL(30마리 이하) 크기이다.

[표 3-36] 2008년 신냉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

(단위 : 톤)

|    | 8/12  | 13/15 | 16/20 | 21/25 | 26/30 | 31/40 | REJECT | 사이즈 없음 | 총계     |
|----|-------|-------|-------|-------|-------|-------|--------|--------|--------|
| 총량 | 3,724 | 5,582 | 4,989 | 6,738 | 2,432 | 546   | 459    | 2,341  | 26,812 |
| 비중 | 14%   | 21%   | 19%   | 25%   | 9%    | 2%    | 2%     | 9%     | 100%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 5) 갑오징어

한국의 HS 코드와 한·아세안 FTA 상의 갑오징어는 1개 품목이지만 실제 품목은 갑오징어(피렛 또는 전체 손질된 것, Fillet or whole cleaned cuttlefish)와 작은 갑오징어(Baby cuttlefish) 2개 품목이다.

2008년 TRQ에 의하여 수입된 갑오징어 피렛은 130톤으로 전체 갑오징어 TRQ 수입물량의 10%이며, 규격은 5-7마리가 가장 많은 31%이며 3-5 마리가 19%이다.

[표 3-37] 2008년 갑오징어(피렛) TRQ 수입이행 결과

(단위 : 톤)

|    | 1/2    | 2/4    | 2-3   | 3/4   | 3/5    | 4/5   | 6/7   | 5/7    | 7/9    | 8-10  | 8-12  | 합계      |
|----|--------|--------|-------|-------|--------|-------|-------|--------|--------|-------|-------|---------|
| 총량 | 12,827 | 16,825 | 6,158 | 8,244 | 24,863 | 2,520 | 1,808 | 40,393 | 11,790 | 1,665 | 2,258 | 130,100 |
| 비중 | 10%    | 13%    | 5%    | 6%    | 19%    | 2%    | 1%    | 31%    | 9%     | 1%    | 2%    | 100%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스파게티, 뷔페식당에 쓰이는 작은(Baby) 갑오징어는 전체 TRQ 수입물량의 90%이다. 크기는 20-40, 40-60, 60-80 등 3개 종류로 전체 수입량의 65%이며 3개 종류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12%이상이어서 이러한 3개 규격이 전체 수입량의 80% 정도이다. 40-60마리가 41%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다음이 60-80마리로 17%, 20-40마리 6%순서이다.

[표 3-38] 2008년 갑오징어(Baby 갑오징어) TRQ 수입이행 결과

(단위 : 톤)

|    | 20/40 | 40/60  | 60/80  | 20/40<br>40/60 | 10/20<br>20/40<br>40/60 | 20/40<br>40/60<br>60/80 | 40/60<br>60/80 | 없음     | 합계      |
|----|-------|--------|--------|----------------|-------------------------|-------------------------|----------------|--------|---------|
| 총량 | 73078 | 481713 | 203180 | 24806          | 46152                   | 49632                   | 22429          | 270224 | 1176919 |
| 비중 | 6.21% | 40.93% | 17.26% | 2.11%          | 3.92%                   | 4.22%                   | 1.91%          | 22.96% | 100.00%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 4. 공매 참가 기업별 수입현황

##### 가. 냉동새우

다음은 공매 참가기업의 냉동새우 수입현황이다. 냉동새우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수입을 한 기업은 47개 기업이다. TRQ 물량을 300톤 이상 수입을 한 기업이 1개 업체로 총 321톤을 수입했다. 200톤 이상을 수입한 기업은 1개 업체로 272톤을 수입했다. 100톤 이상 200톤 이하를 수입한 업체는 8개 업체이고 전체 수입량의 37%이다. 50톤 이상 100톤 미만을 수입 한 업체는 12개 업체이고 전체 수입량의 27%이다. 10톤 이상 50톤 미만을 수입 한 업체가 19개 업체로 전체의 17%이다. 10톤 미만을 수입한 업체가 6개 업체이다.

[표 3-39] 공매 참가기업의 냉동새우 수입현황

(단위 : kg)

| 낙찰·수입량    | 기업수       | 총량               | 비율          |
|-----------|-----------|------------------|-------------|
| 10 미만     | 6         | 38,588           | 1%          |
| 11-50     | 19        | 541,895          | 17%         |
| 51-100    | 12        | 870,465          | 27%         |
| 101-200   | 8         | 1,178,690        | 37%         |
| 201-300   | 1         | 271,998          | 8%          |
| 300톤 이상   | 1         | 320,999          | 10%         |
| <b>합계</b> | <b>47</b> | <b>3,222,634</b> | <b>100%</b>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10톤 미만을 수입한 업체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3톤 1개, 4톤 1개, 5톤 1개, 7톤 1개, 10톤 2개 기업이다. 다음 표에서 10톤 미만 소량으로 수입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대형 업체와 마찬가지로 10-15 크기와 16-20 크기의 대형 블랙타이거 새우 위주로 수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 표준 품목 규격 기준으로 30마리 이상 UL 크기가 전체 수입량의 71%, XL 크기(31-50마리)가 전체 수입량의 11%이며 양자를 합하면 82%로 10톤 미만을 수입한 기업도 대형 새우 위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0] 10톤 미만 업체별 수입량

(단위 : 톤)

|             | 10/15       | 16/20         | 21/25        | 26/30        | 31/40        | 41/50      | 51/60        | 기업별 합계        |
|-------------|-------------|---------------|--------------|--------------|--------------|------------|--------------|---------------|
| 기업 1        |             | 3,000         |              |              |              |            |              | 3,000         |
| 기업 2        |             | 4,000         |              |              |              |            |              | 4,000         |
| 기업 3        | 195         | 1,505         | 1248         | 1014         | 546          | 390        |              | 4,898         |
| 기업 4        | 5300        | 1,000         |              | 500          |              |            |              | 6,800         |
| 기업 5        | 3140        | 3,250         |              | 2350         | 750          | 400        |              | 9,890         |
| 기업 6        |             | 1,000         |              |              | 2160         |            | 6840         | 10,000        |
| <b>합계</b>   | <b>8635</b> | <b>13,755</b> | <b>1,248</b> | <b>3,864</b> | <b>3,456</b> | <b>790</b> | <b>6,840</b> | <b>38,588</b> |
| <b>(비율)</b> | <b>22%</b>  | <b>36%</b>    | <b>3%</b>    | <b>10%</b>   | <b>9%</b>    | <b>2%</b>  | <b>18%</b>   | <b>100%</b>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나. 냉동새우살

2008년 새우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수입을 한 업체는 38개이다. 냉동새우에 비해 참가기업이 9개 적고 기업별 낙찰 물량도 적다. 10톤 미만을 낙찰 받은 업체는 9개 업체로 가장 적은 물량은 4톤이며 전체 수입량에서 4%이다. 100톤 이상을 수입한 기업이 4개로 전체 수입량의 41%를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34개 업체는 100톤 이하를 수입하고 있다.

[표 3-41] 새우살 낙찰 기업체수와 낙찰물량

(단위 : kg)

|           | 기업체수      | 총량               | 비율          |
|-----------|-----------|------------------|-------------|
| 10톤 미만    | 9         | 64,851           | 4%          |
| 11-50     | 19        | 421,618          | 27%         |
| 51-100    | 6         | 437,342          | 28%         |
| 101-150   | 2         | 258,904          | 17%         |
| 151 이상    | 2         | 370,997          | 24%         |
| <b>합계</b> | <b>38</b> | <b>1,553,712</b> | <b>100%</b>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다음 표는 소량으로 작은 크기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한·아세안 TRQ 공매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10톤 이하로 냉동새우살을 수입한 기업들의 세부 수입품목 조사한 것이다. 가장 많이 수입된 크기는 관세청 표준 규격의

XL 즉 31-50 마리 크기로 전체 수입량의 49%이다. 다음으로 XL 크기 즉 30마리 이하 크기가 27%이다. 전체 TRQ 새우살의 76%가 대형 새우 위주로 수입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소형 즉 S 크기는 1%에 불과하다.

[표 3-42] 10톤 이하 수입 기업의 세부 수입품목

(단위 : kg)

|      | S   | XL     | UL    | 16/20 | 21/25 | 26/30 | 31/35 | 31/40  | 41/50  | 51/60 | 61/70 | 71/90 | 총합     |
|------|-----|--------|-------|-------|-------|-------|-------|--------|--------|-------|-------|-------|--------|
|      |     |        |       | UL    |       |       |       | XL     |        |       |       |       |        |
| 기업 1 |     |        |       |       |       |       |       |        | 3,996  |       |       |       | 3,996  |
| 기업 2 |     |        |       |       |       |       |       |        | 4,000  |       |       |       | 4,000  |
| 기업 3 |     |        |       |       |       |       |       | 2,340  |        | 1,890 | 770   |       | 5,000  |
| 기업 4 |     |        |       |       | 3,240 | 2,760 |       |        |        |       |       |       | 6,000  |
| 기업 5 |     |        |       | 2,700 |       | 2,160 | 3,140 |        |        |       |       |       | 8,000  |
| 기업 6 |     | 5,098  |       |       |       |       |       | 2,290  | 1,600  |       |       |       | 8,988  |
| 기업 7 | 443 | 4,970  | 3,587 |       |       |       |       |        |        |       |       |       | 9,000  |
| 기업 8 |     |        |       |       |       |       |       |        | 624    | 523   | 1,378 | 7,344 | 9,869  |
| 기업 9 |     |        |       | 1,080 |       | 2,160 |       | 5,478  | 1,280  |       |       |       | 9,998  |
| 합계   | 443 | 10,068 | 3,587 | 3,780 | 3,240 | 7,080 | 3,140 | 10,108 | 11,500 | 2,413 | 2,148 | 7,344 | 64,851 |
| 비율   | 1%  | 16%    | 6%    | 6%    | 5%    | 11%   | 5%    | 16%    | 18%    | 4%    | 3%    | 11%   |        |

자료 : 2008년 수입이행결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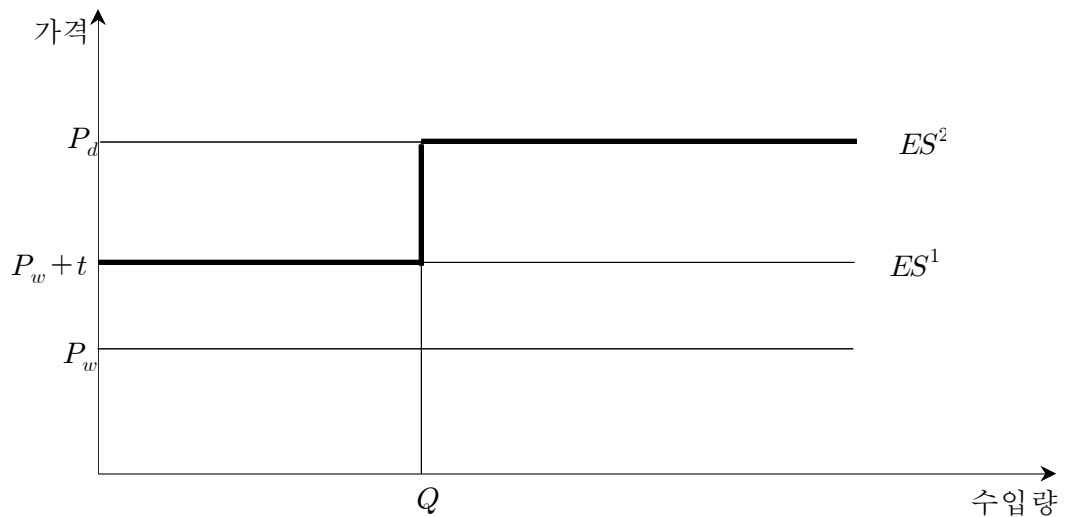
## 제4장 한·아세안 수산물 TRQ 품목의 경제적 효과

### 제1절 TRQ의 경제적 의미

임정빈·이재옥·어명근(2000)에 따르면 TRQ는 일종의 이중관세체도로써, [그림 4-1]과 같이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Q$ )까지는 낮은 관세율( $t$ )이 적용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T$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ES^1$ 는 세계시장가격에 설정된 TRQ내의 수입물량으로 낮은 관세율( $t$ )이 적용되는 경우의 초과공급곡선이며,  $ES^2$ 는 TRQ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으로 높은 관세율( $T$ )이 적용되는 경우의 초과공급곡선이다. 즉, 실제 수입시장에서 실효적 수출공급곡선은 TRQ까지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ES^1$ 이 되며, TRQ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ES^2$ 가 된다.

[그림 4-1] TRQ제도의 경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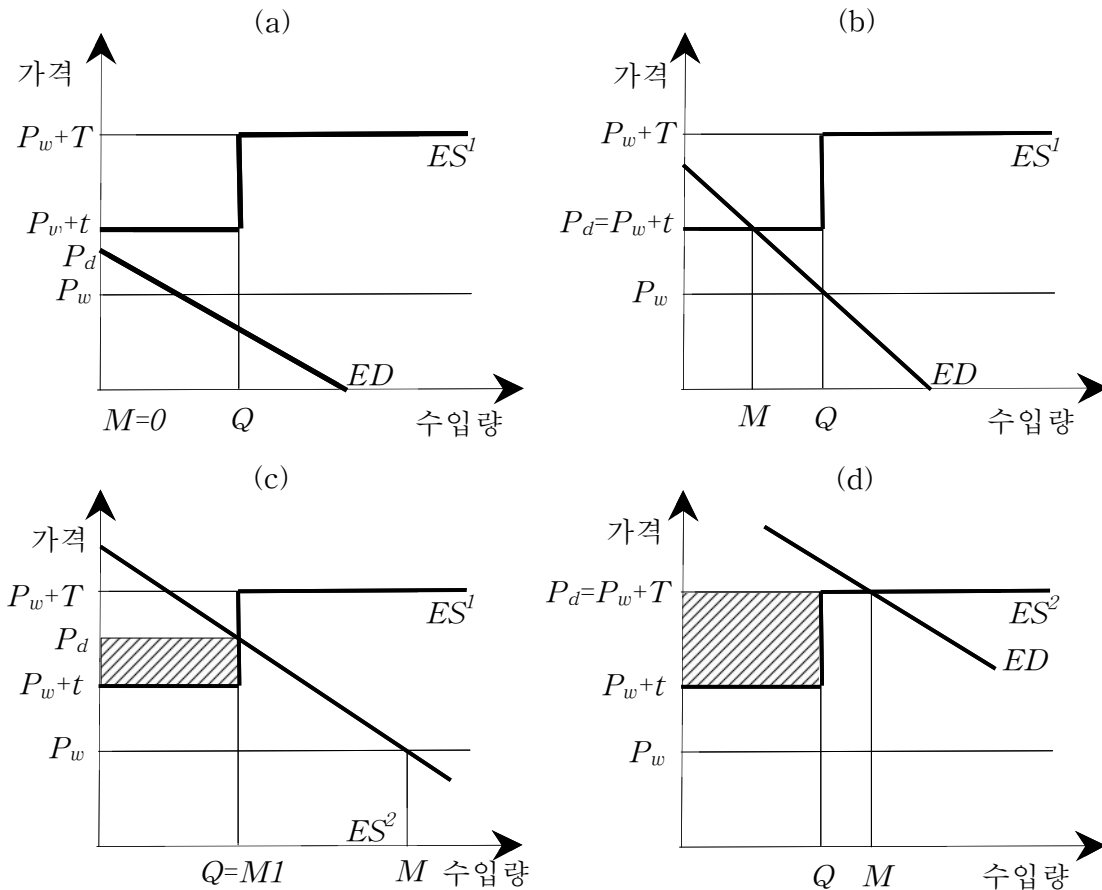
주:  $Q$ 는 TRQ 수입물량,  $P_d$ 는 국내가격,  $P_w$ 는 국제가격,  $t$ 는 TRQ내 관세율을 의미함.

그러나 TRQ의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수출공급곡선 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으며 수입수요곡선의 형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우선 [그림 4-2]의 (a)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요곡선이  $ES^1$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수입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둘째,

(b)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요곡선이  $ES^1$  상에 위치하는 경우 TRQ 수입물량 이내로 수입이 이루어진다. 셋째, (c)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요곡선이  $ES^1$ 와  $ES^2$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TRQ 수입물량이 모두 수입된다. 넷째, (d)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요곡선이  $ES^2$  상에 위치하는 경우 TRQ 수입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진다.

즉, (a), (b)와 같이 실제 수입량( $M$ )이 설정된 TRQ 수입물량( $Q$ )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기인한 수입차액지대(quota rent)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c), (d)와 같이 실제 수입량이 설정된 TRQ 수입물량과 같거나 큰 경우 국내가격에서 세계가격에 TRQ 수입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  $t$ 를 더한 값을 뺀 것에 TRQ 수입물량을 곱한 만큼의 수입차액지대( $(P_d - (P_w + t)) \times Q$ )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입차액지대는 TRQ에 대한 수입권이 누구에게 할당되느냐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 생산자단체, 수입국 정부 등에 귀속된다.

[그림 4-2] TRQ와 실제교역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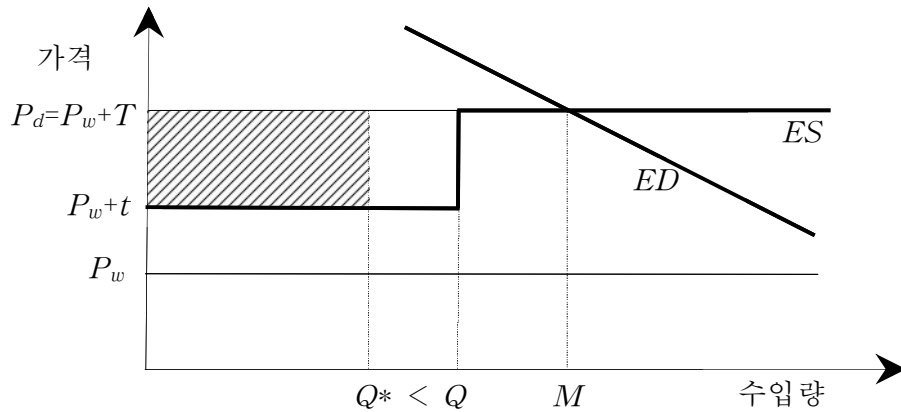


주: 빗금친 부분은 TRQ에 따른 수입차액지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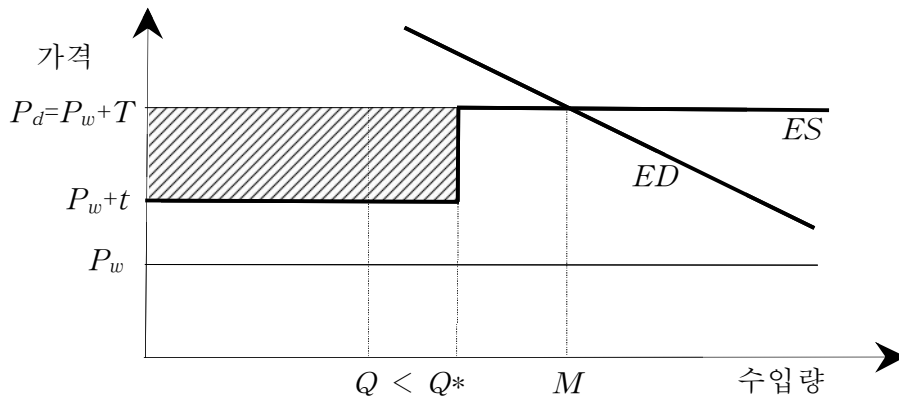
그러나 이론적으로 국내외 시장조건에 따라 수입국의 상황이 [그림 4-2]의 (c), (d)의 경우일지라도 설정된 TRQ 수입물량이 모두 수입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그림 4-3]의 (a)와 같이 TRQ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TRQ 수입( $Q^*$ )이 TRQ 수입물량( $Q$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제3절 제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0306131000(새우살(냉동))품목은 100% 낙찰되어 모든 TRQ 수입물량 수입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88%만이 수입되었다. 그리고 [그림 4-3]의 (b)와 같이 TRQ 수입이 국내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TRQ 수입물량은 내생적 쿼터(endogenous quota)의 성격을 가지며 구속(binding)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4-3] TRQ와 시장접근이행률 차이

(a) 낮은 이행률(거래비용 발생 및 수입관리방식의 문제)



(b) 높은 이행률(내생적 쿼터)



주: 빗금친 부분은 TRQ에 따른 수입차액지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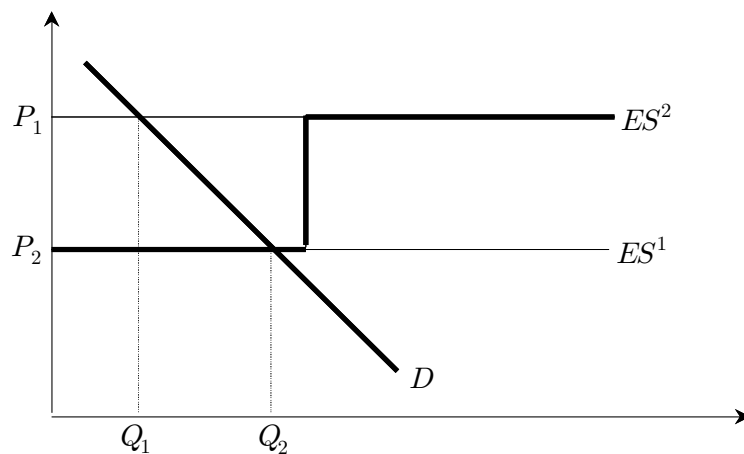
## 제2절 한·아세안 TRQ의 경제적 효과

한·아세안 FTA에서 TRQ는 수산물에서 총 5개 품목에 설정되어 있다. 이중 0306131000(새우살(냉동))과 0306139000(새우와 보리새우(냉동)) 두 개 품목은 합하여 총 5,000톤의 TRQ가 부여되었으며, 0306231000(새우와 보리새우(활, 냉장))품목은 총 300톤, 0307491010(갑오징어(냉동))과 1605209090(새우(가공))품목은 각각 총 2,000톤의 TRQ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들 품목이 TRQ를 초과할 경우 0307491010(갑오징어(냉동))품목의 경우에만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4개 품목은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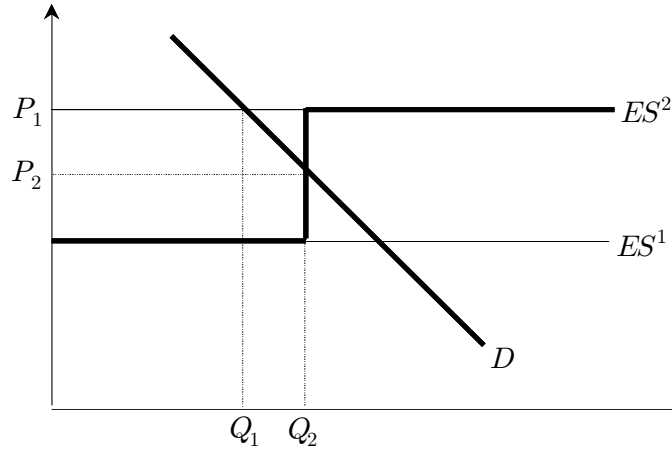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 체결이전에 아세안 국가가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0307491010(갑오징어(냉동))품목의 경우에는 10%의 관세를, 나머지 4개 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FTA 체결이후 TRQ 수입물량 이내에는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림 4-4>와 같이 한·아세안 FTA 이후에는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아세안 수입은 증가된 것으로, 국내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아세안 FTA 이전에는 아세안 국가가 한국으로  $P_1$ 의 가격으로  $Q_1$ 만큼을 수출하였으나 FTA 이후에는  $P_2$ 의 가격으로  $Q_2$ 만큼을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증가된 수입과 가격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국내가격의 감소, 생산액 감소, 관세인하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4] 한·아세안 FTA TRQ 부여 이후 수입증가

(a) 수입수요함수가  $ES^1$  상에 존재하는 경우



(b) 수입수요함수가  $ES^1$  과  $ES_2$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주 1: 제3절 제3장에서 보았듯이 0306131000(새우살(냉동))품목만이 100% 낙찰되어 (b)에 해당되며 나머지 4개 품목은 (a)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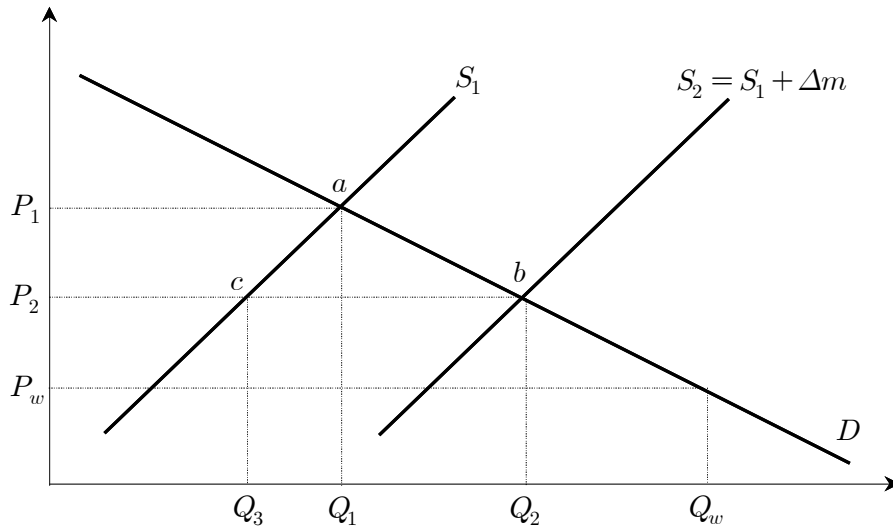
2: 수입수요함수가  $ES^2$  상에 존재하는 경우 TRQ에 따른 가격 및 수입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수출 공급함수와 수입 수요함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여러 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로 인해 발생한 TRQ가 국내 품목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4-5>와 같이 국내시장수요함수와 국내공급함수를 이용할 것이다.

한·아세안 FTA 이전 국내공급함수는  $S_1$ 과 같고 국내시장수요함수가  $D$ 와 같다고 가정하면 균형 국내시장가격은  $P_1$ 으로, 시장소비와 공급량은  $Q_1$ 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FTA 이후 TRQ로 인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Delta m$ 만큼 증대되면 국내공급함수는  $S_2 = S_1 + \Delta m$ 로 이동할 것이다. 즉, TRQ로 인해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은  $P_1$ 에서  $P_2$ 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소비량은  $Q_1$ 에서  $Q_2$ 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물량의 증가는 국내생산을 대체할 것이므로 국내생산량은  $Q_1$ 에서  $Q_3$ 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수입물량의 증가분은 국내생산의 감소와 국내소비의 증가와 같게 된다( $\Delta m = Q_2 - Q_3$ ).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자잉여 개념으로 나타나는 생산자의 후생변화는 면적  $\square P_1acP_2$ 만큼 줄어들고 소비자잉여 개념으로부터 나타나는 소비자의 후생변화는 면적  $\square P_1abP_2$ 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림 4-5] TRQ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이러한 분석 역시 임정빈·이재욱·어명근(200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한·아세안 FTA 체결 전후 수요 및 공급 곡선의 특성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야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질적이고 완전대체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분석결과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RQ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내공급함수와 국내시장 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해야 한다. 실제 최양부 외(1993)에서는 각 품목별로 공급 및 수요 함수를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모형을 단순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수요함수는 김현용(2000)과 같다.

$$\text{국내공급함수: } \log Q_s = \alpha_s + \beta_s \log P + \gamma_s \log C + u \quad \dots \text{식 (1)}$$

$$\text{국내수요함수: } \log Q_d = \alpha_d + \beta_d \log P + \gamma_d \log Y + v$$

여기서  $Q_s$ 와  $Q_d$ 는 각각 공급량과 소비량으로 국내생산량에 순수입( $X-M$ )을 더한 값이며,  $P$ 는 국내 생산가격,  $C$ 와  $Y$ 는 각각 생산비와 국내총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로그는 자연로그이며  $u, v$ 는 각각 독립동일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TRQ 5개 품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5개 품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다음의 3개 품목에 대해서만 그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꽃새우, 닭새우, 보리새우, 흰다리새우, 남빙양새우를 합하여 0306131000(새우살(냉동)), 0306139000(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6231000(새우와 보리새우(활, 냉장)) 품목에 대한 효과를 새우류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젓새우는 1605209090(새우(가공)) 품목에 대한 효과를, 갑오징어는 0307491010(갑오징어(냉동)) 품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각 품목에 대한 생산량 및 가격 자료<sup>17)</sup>는 통계청<sup>18)</sup>에서 구하였다. 그리고 생산비의 자료가 존재하고 않아 이를 대용할 수 있는 변수로 고용자수를 이용하였으며 고용자수 및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sup>19)</sup>에서 구하였다. 또한 수출입 물량은 한국무역협회<sup>20)</sup>에서 구하였다. 이중 각 품목에 대한 가격은 수산물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로 실질화 하였다.

각 품목에 대한 공급 및 수요 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DW(Durbin Watson)값이 2에 근접하지 않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코크란-오컷(Cochrane-Orcutt) 반복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수요함수의 경우 분기별 자료 수집이 가능하여 외환위기 이후기간인 2000년 1/4분기부터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06년 4/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급함수의 경우 연도별 자료 수집만이 가능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또한 상품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 및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가공새우의 경우 가공품에 대한 원료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시차(lag)를 주었다.

상기 3개 품목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공급탄력성은 모든 품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산물의 공급은 가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산물의 공급이 가격보다는 수온, 적조현상 등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수요탄력성은 갑오징어를 제외하고 모두 음(-)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공새우의 수요탄력성은 -0.83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수산물의 공급함수는 <그림 4-5>와 같이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며 가격의 변화에 공급량이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수입량의 증가는 생산량의 감소를 전혀 가져오지 않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수요함수는 새우와 가공새우의 경우 <그림 4-5>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며 가공새우보다 새우의 수요함수가 더 큰 기울기를 가지게 된

17) 가격은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생산단가를 사용했다.

18)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참조.

19)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참조.

20) 무역통계<[www.kita.net](http://www.kita.net)> 참조.

다. 그러나 갑오징어의 경우 가격의 변화에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 수직의 수요함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식 (1)을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탄력성분석은 그 모형이 단순하고 분석기간이 짧으며, 공급함수와 수요함수의 이용자료 및 주기 역시 동일하지 않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분석변수가 단위근(unit root)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위근이 존재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경우 변수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상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상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이는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분석방법을 다르게 사용함을 말한다. 즉,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경제현상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한 효과를 여타의 요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자료의 성질과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가장 유용한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본 보고서에서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다면 시계열 분석방법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문에서 언급한 가상회귀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자승법’이 벡터오차수정모형‘보다 더 유용하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1) 모형의 특성상 탄력성의 개념을 가지는 계수값을 도출할 수 없으며, 2) 모형내에서 적정시차를 찾아야 하고, 적정시차가 큰 경우 자료의 obs를 잃게 되어 짧은 시계열 자료를 더욱 짧게 만들고 3) 또한 공적분관계가 없거나 2개로 분석되는 경우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분석방법 중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최선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 사용한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도출된 계수값은 현재모형의 계수값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TRQ의 효과가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표 4-1] 품목별 가격탄력성

| 가격탄력성 | 새우          | 가공새우        | 갑오징어        |
|-------|-------------|-------------|-------------|
| 공급탄력성 | 0.45(0.66)  | 0.12(0.63)  | -0.10(0.72) |
| 수요탄력성 | -0.23(0.01) | -0.83(0.02) | -0.03(0.93) |

주: 괄호 안은 p-value임.

이제 식 (1)에서 추정된 공급 및 수요의 가격탄력성  $\beta_s$ 와  $\beta_d$ , 그리고 소비량과 국내가격을 이용하면 TRQ 물량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생적 공급증가( $\Delta m$ )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우선 소비량과 국내가격은 2006년 소비량과 국내 생산가격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외생적 공급증가는 TRQ 물량이 모두 수입되었을 경우와 2007년 낙찰된 TRQ 물량을 구분할 것이다.

TRQ 물량이 모두 수입되더라도 공급탄력성이 0이므로 생산량의 변화는 모든 품목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TRQ 물량 수입으로 인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새우 가격은 48원, 가공새우 가격은 722원 하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우 생산금액은 19억원, 가공새우 생산금액은 56억원 감소하게 된다. 또한 생산금액 증감액만큼 생산자잉여 역시 증감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금액 감소는 2006년 생산금액과 비교할 때 새우와 가공새우는 각각 3.1%와 21.3%가 감소한 것으로 가공새우에서 TRQ에 대한 생산증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TRQ 물량 수입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소비량은 TRQ 물량 수입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타난 가격 증감에 따라 소비지출금액은 새우 및 가공새우의 경우 각각 16억원, 9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잉여는 새우의 경우 20억원, 가공새우의 경우 98억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갑오징어의 경우 공급 및 수요 탄력성이 모두 0으로 TRQ 증가에 따른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표 4-2] 총 TRQ 물량이 수입될 경우의 효과

| 품 목           | 새우     | 가공새우   | 갑오징어  |
|---------------|--------|--------|-------|
| 공급탄력성         | 0.00   | 0.00   | 0.00  |
| 수요탄력성         | -0.23  | -0.83  | 0.00  |
| 생산량(톤)        | 39,597 | 7,810  | 2,933 |
| 소비량(톤)        | 66,616 | 15,080 | 6,158 |
| 순수입량(톤)       | 27,019 | 7,270  | 3,225 |
| 국내가격(원/kg)    | 1,560  | 3,397  | 4,462 |
| TRQ 증분(톤)     | 5,300  | 2,000  | 2,000 |
| 가격하락(원/kg)    | 48     | 722    | 0     |
| 생산량 감소(톤)     | 0      | 0      | 0     |
| 소비량 증가(톤)     | 280    | 1,378  | 0     |
| 생산액 감소(백만원)   | 1,902  | 5,639  | 0     |
| 소비지출액 감소(백만원) | 1,615  | 9,186  | 0     |
| 생산자잉여 감소(백만원) | 1,902  | 5,639  | 0     |
| 소비자잉여 증가(백만원) | 1,977  | 9,753  | 0     |

2007년 낙찰된 TRQ 물량은 총 TRQ 물량보다 작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총 TRQ 물량이 모두 수입되었을 때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금액 감소는 2006년 생산금액과 비교할 때 새우와 가공새우는 각각 2.3%와 4.0%가 감소하여, 총

TRQ 물량에서보다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새우의 경우 낙찰된 TRQ 물량이 총 TRQ 물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2007년 낙찰된 TRQ 물량이 수입될 경우의 효과

| 품 목           | 새우     | 가공새우   | 갑오징어  |
|---------------|--------|--------|-------|
| 공급탄력성         | 0.00   | 0.00   | 0.00  |
| 수요탄력성         | -0.23  | -0.83  | 0.00  |
| 생산량(톤)        | 39,597 | 7,810  | 2,933 |
| 소비량(톤)        | 66,616 | 15,080 | 6,158 |
| 순수입량(톤)       | 27,019 | 7,270  | 3,225 |
| 국내가격(원/kg)    | 1,560  | 3,397  | 4,462 |
| TRQ 증분(톤)     | 3,967  | 374    | 2,000 |
| 가격하락(원/kg)    | 36     | 135    | 0     |
| 생산량 감소(톤)     | 0      | 0      | 0     |
| 소비량 증가(톤)     | 210    | 258    | 0     |
| 생산액 감소(백만원)   | 1,423  | 1,054  | 0     |
| 소비지출액 감소(백만원) | 1,206  | 1,566  | 0     |
| 생산자잉여 감소(백만원) | 1,423  | 1,054  | 0     |
| 소비자잉여 증가(백만원) | 1,479  | 1,748  | 0     |

주: 2007년 TRQ는 2007년의 낙찰물량이며 모든 TRQ는 한아세안 FTA의 총 TRQ 물량임.

결론적으로 TRQ 물량이 수입되더라도 공급탄력성이 0이므로 생산량의 변화는 모든 품목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TRQ 물량 수입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생산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즉, 2007년 TRQ 물량만큼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새우의 경우 가격은 36원, 생산금액은 14억 원이 감소하며, 가공새우의 경우 가격은 135원, 생산금액은 11억 원이 감소한다. 물론 한아세안 TRQ 전체 물량이 모두 수입될 경우 이러한 가격 및 생산액 증감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 TRQ 전체 물량이 모두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새우의 경우 가격은 48원, 생산금액은 19억 원, 가공새우의 경우 가격은 722원, 생산금액은 5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2007년 TRQ 물량 수입에 따른 생산금액 감소는 2006년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새우 및 가공새우에서는 각각 2.3%와 4.0%의 생산금액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외 TRQ 수입으로 인해 새우 및 가공새우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잉여는 새우 및 가공새우에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갑오징어의 경우 공급 및 수요 탄력성이 모두 0으로 TRQ 증가에 따른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표 4-4] TRQ 물량에 따른 국내경제 효과

(단위: 백만원)

| 경제효과         |      | TRQ<br>증분<br>(톤) | 가격<br>하락<br>(원/kg) | 생산량<br>감소<br>(톤) | 소비량<br>증가<br>(톤) | 생산액<br>감소 | 소비<br>지출액<br>감소 | 생산자<br>잉여<br>감소 | 소비자<br>잉여<br>증가 |
|--------------|------|------------------|--------------------|------------------|------------------|-----------|-----------------|-----------------|-----------------|
| 2007년<br>TRQ | 새 우  | 3,967            | 36                 | 0                | 210              | 1,423     | 1,206           | 1,423           | 1,479           |
|              | 가공새우 | 374              | 135                | 0                | 258              | 1,054     | 1,566           | 1,054           | 1,748           |
|              | 갑오징어 | 1,351            | 0                  | 0                | 0                | 0         | 0               | 0               | 0               |
| 모든 TRQ       | 새 우  | 5,300            | 48                 | 0                | 280              | 1,902     | 1,615           | 1,902           | 1,977           |
|              | 가공새우 | 2,000            | 722                | 0                | 1,378            | 5,639     | 9,186           | 5,639           | 9,753           |
|              | 갑오징어 | 2,000            | 0                  | 0                | 0                | 0         | 0               | 0               | 0               |

주: 2007년 TRQ는 2007년의 낙찰물량이며 모든 TRQ는 한아세안 FTA의 총 TRQ 물량임.

### 제3절 계량분석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 수산물 TRQ 제도도입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량분석을 위한 기본자료는 2006년까지의 자료이다. 탄력성 분석에서 200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2007년부터 TRQ 물량이 ASEAN으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에 2007년 이후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은 TRQ 물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료로 상기기간이 포함될 경우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2007년과 2008년 자료는 이미 TRQ의 영향을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추정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협상중인 FTA와 같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 또는 과거에 일어난 사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당경제의 국내 총생산, 후생 등 내생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경제현상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완벽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계량분석(Econometrics)과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이 있다. 계량분석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반해, CGE모형은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형을 설정하고 다양한 내생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탄력성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탄력성 분석을 위해서는 탄력성 추정을 위한 품목별 가격이 있어야 하다. 그러나 이것을 구한 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단위가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탄력성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한계와 모형이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하였는데 외환위기 기간에는 구조변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간이 포함될 경우 계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자기상관을 치료하기 위해 코크란-오컷(Cochrane - Orcutt) 반복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국제 수산물 통계와 국내 HS 코드가 불일치가 계량분석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서 국내 새우 생산비를 구할 수 없어 분석에 애로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 계량분석에서 국내 새우 생산액을 산정할 때 꽃새우, 닭새우, 보리새우, 흰다리새우, 남빙양새우를 합하였고, 무역량을 산정할 때 0306131000(새우살(냉동)), 0306139000(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6231000(새우와 보리새우(활, 냉장)) 품목을 합하여 새우류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류의 문제점은 꽃새우, 닭새우, 보리새우, 흰다리 새우, 남빙양새우 가운데 흰다리 새우를 제외한 모든 새우가 어선어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TRQ 물량으로 수입하는 새우는 전량 양식새우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새우류 무역통계를 구할 때 국제적으로 신냉새우(0306231000)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 이를 새우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신냉새우와 냉동새우는 상품 특성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동시에 분석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공새우 국내생산량을 산정할 때 젓새우(605209090) 생산량을 사용했다. 그러나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가공새우와 젓새우는 전혀 다른 품목이다.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가공새우는 국내 경쟁상품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서 가공새우 분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량분석에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공급탄력성 분석과 새우류 부분에 대한 분석이다. TRQ 품목 공급탄력성이 0이므로 생산량의 변화는 모든 품목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TRQ 물량 수입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생산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즉, 2007년 TRQ 물량만큼이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새우류의 경우 가격은 36원, 생산금액은 14억 원이 감소하며, TRQ 전체 물량이 모두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새우류의 경우 가격은 48원, 생산금액은 1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2007년 TRQ 물량 수입에 따른 생산금액 감소는 2006년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새우류에서 2.3%의 생산금액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 제5장 한·아세안 수산물 TRQ 관리제도 개선방향

## 제1절 수산물 TRQ 공매제도 개선방안

### 1. FTA TRQ 관리 법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WTO TRQ 관리 근거 법률은 농안법이며 FTA TRQ 관리 근거는 'FTA 지원 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FTA 지원 특별법의 FTA 관련 규정을 농안법과 비교해 보면 수입이익금 등에 대한 정의, 수입추천에 관한 사항,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품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안법 및 FTA 이행 특별법 모두 수입이행보증금 귀속 근거 규정, 추천 물량 수입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및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본장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TRQ 수입관리요령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TRQ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7개의 고시가 있다. WTO TRQ를 이행하기 위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과 임산물 관리요령이 있으며 나머지 5개는 FTA TRQ를 관리하기 위한 고시이다. 한·아세안 관련 고시 2개, 한·EFTA 관련 고시 2개, 한·칠레가 1개이다. 향후 FTA가 계속 추가될 때마다 고시를 2개씩 추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와 FTA를 분류하여 고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TRQ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입관리 요령이 있다. TRQ 품목 관리 방식에 있어 농산물의 경우 실수요자 배정과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관리하고 수산물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하나의 고시에 의하여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농산물 관리요령과 거의 유사한데 제5조와 제12조의 문제점과 이의 개정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 배정방식이 수입권공매 방식만 있다. 제12조 제2항은 입찰 10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공고를 보지 못한 업체들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또는 반기별·분기별로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5조와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3항은 대형 업체에 의한 물량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에는 없는 조항이다.

[표 5-1] 한·아세안 수산물 TRQ 물량 관리 고시 개정안

| 현재                                                                                                                                                                                                                                                                                                                                                                                          | 개정                                                                                                                                                                                                                                                                                                                                                                                                                                                                                      |
|---------------------------------------------------------------------------------------------------------------------------------------------------------------------------------------------------------------------------------------------------------------------------------------------------------------------------------------------------------------------------------------------|-----------------------------------------------------------------------------------------------------------------------------------------------------------------------------------------------------------------------------------------------------------------------------------------------------------------------------------------------------------------------------------------------------------------------------------------------------------------------------------------|
| <p>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수립한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p> <p>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br/>           ①수입권 공매는 별표 1에 의거 품명별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이 주관한다.<br/>           ②추천대행기관은 <b>입찰 10일전</b>에 품명별 수입권공매 일정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br/>           ③추천대행기관은 품명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p>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수립한 <b>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b>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br/>           ②추천대행기관이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할 때, 추천대행기관과 배정받은 자 간의 <b>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b>한다.</p> <p>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br/>           ①수입권 공매는 별표 1에 의거 품명별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이 주관한다.<br/>           ②<b>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하여 수립 한 관리계획에 따라 수입권공매를 실시하고</b>,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br/>           ③&lt;현행과 같음&gt;</p> |

이 외에도 농산물 관리요령에 있으나 수산물관리요령에 없는 조항들은 농산물 관리요령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제21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등이 있다. 제14조의 입찰참가 제한 기준은 제3절에서 검토하고, 개정안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 2. TRQ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71호)」 제4조에 의하면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TRQ 관리요령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5-2] 농산물과 수산물 관리계획 관련 조항 비교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부 고시 제2007-36호)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71)                                                                                                       |
|--------------------------------------------------------------------------------------------------------------|------------------------------------------------------------------------------------------------------------------------------------------------------------------------------------------------------------------------|
| 제4조(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품목별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품명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명별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제5조(관세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한다.                | 제5조(관세할당물량의 배정) ①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에 따라 적용물량 범위 내에서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한다.<br>②제4조의 품명별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배정에 반영한다.<br>③추천대행기관이 관세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할 때, 이를 위한 추천대행기관과 실수요자간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수산물 TRQ 관리요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제4조의 품명별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배정에 반영한다’고 하여 계획수립이 강제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제5조(관세할당물량의 배정)에서 ‘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한 관세할당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한다’고 하여 관리계획이 없으면 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요령 제12조 제2항에서 ‘수입권 공매를 분기별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농산물 입찰 참가자들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요령 제12조 제2항에 ‘입찰 10일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아세안 수산물 TRQ 고시 제4조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입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 발표를 하여 입찰참가 예정자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면 민원감소 및 원활한 입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최소 및 최대 응찰 수량 설정

한·아세안 TRQ 공매가 실시된 후에 가장 많은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대형 수입업체에 의한 공매물량 독점이다. 2008년에는 이러한 독점 낙찰 우려 문제를 해결하고 소량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품목별 세부 물량을 정하여 공매를 실시했지만 역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대량 낙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과 임산물 공매에서 최대 응찰수

량과 최소 응찰수량을 정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임산물에서 있어서 최소 응찰 수량을 10톤으로 정하고 있고 최대 응찰 수량을 100톤으로 정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양파의 경우 최소 200톤 이상으로 하고 있고 최대 1000톤으로 정하고 있다. 수산물에 있어서 문제는 최대 응찰수량이었고 최소 응찰수량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대 응찰수량 설정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기준 냉동새우 최대 낙찰 물량은 320톤, 새우살 187톤, 가공새우 180톤, 갑오징어 236톤이었다. 공매를 2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물량을 나눌 경우 300톤이 전체 물량의 40%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낙찰 수량을 300톤 또는 입찰물량의 일정수준(20-30%)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 품목별 응찰수량 제한 현황

|     | 품목           | 최소응찰수량                            | 최대응찰수량                            |
|-----|--------------|-----------------------------------|-----------------------------------|
| 농산물 | 강낭콩          | -                                 | -                                 |
|     | 양파           | 업체당 최소 200톤 이상                    | 최대 1,000톤까지 응찰 가능                 |
| 임산물 | 대추(건조)       | 최소 응찰수량은 대추(건조) 10톤 이상 톤 단위       | 1개 업체당 최대 응찰수량은 대추(건조) 100톤       |
|     | 미탈각 밤(신선/건조) | 최소 응찰수량은 미탈각 밤(신선/건조) 10톤 이상 톤 단위 | 1개 업체당 최대 응찰수량은 미탈각 밤(신선/건조) 100톤 |
|     | 깐 잣(신선/건조)   | -                                 | -                                 |
| 수산물 | 새우 및 갑오징어    | -                                 | -                                 |

그러나 이러한 최대 응찰수량 설정은 공개경쟁 입찰 매매라는 원래 취지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수입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시에 다른 기업 명의로 응찰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것처럼 차명 입찰을 통한 물량 확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대량 입찰이 없을 경우 TRQ 물량 소진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제2절 품목별 표준규격품명 검토

### 1. 현황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투명과세와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새우 관련 3개 품목의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했다. 공매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TRQ 수입 품목의 규격, 현재의 규격별 수입동향, 베트남 현지의 생산 및

무역동향 등을 참조하여 품목별 표준규격과 규격별 TRQ 물량 배분 방법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준품명규격은 홍다리새우, 흰다리새우,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새우 등 3개 품목이며 규격은 모두 UL, XL, L, M, S, 2S 등 6개이다. 파운드(Lbs) 당 마리수는 흰다리새우와 가공새우는 같지만 홍다리새우의 경우 L 규격이 51마리-100마리로 흰다리새우의 51마리 - 70마리보다 많게 설정되어 있다. 핑크새우, 바나나 새우 등 기타 새우에 대한 규격이 없다.

[표 5-4] 관세청의 새우 관련 표준품명·규격 기재요령

| 표준품명(한글)           | 표준품명(영문)                            | 규격 번호 | 규격 순번 | 필수규격(한글)  | 필수규격(영문) | 규격 값 | 세부분류내용      |
|--------------------|-------------------------------------|-------|-------|-----------|----------|------|-------------|
| 홍다리 얼룩새우           | Black tiger shrimps                 | 5     | 1     | 1Lbs당 마리수 | Size     | UL   | 30마리이하      |
|                    |                                     | 5     | 2     | 1Lbs당 마리수 | Size     | XL   | 31마리-50마리   |
|                    |                                     | 5     | 3     | 1Lbs당 마리수 | Size     | L    | 51마리-100마리  |
|                    |                                     | 5     | 4     | 1Lbs당 마리수 | Size     | M    | 101마리-200마리 |
|                    |                                     | 5     | 5     | 1Lbs당 마리수 | Size     | S    | 201마리-300마리 |
|                    |                                     | 5     | 6     | 1Lbs당 마리수 | Size     | 2S   | 301마리이상     |
| 흰다리새우              | Whiteleg shrimps                    | 5     | 1     | 1Lbs당 마리수 | Size     | UL   | 30마리이하      |
|                    |                                     | 5     | 2     | 1Lbs당 마리수 | Size     | XL   | 31마리~50마리   |
|                    |                                     | 5     | 3     | 1Lbs당 마리수 | Size     | L    | 51마리~70마리   |
|                    |                                     | 5     | 4     | 1Lbs당 마리수 | Size     | M    | 71마리~90마리   |
|                    |                                     | 5     | 5     | 1Lbs당 마리수 | Size     | S    | 91마리~110마리  |
|                    |                                     | 5     | 6     | 1Lbs당 마리수 | Size     | 2S   | 111마리이상     |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새우 | Other prepared or preserved shrimps | 5     | 1     | 1Lbs당 마리수 | Size     | UL   | 30마리이하      |
|                    |                                     | 5     | 2     | 1Lbs당 마리수 | Size     | XL   | 31마리~50마리   |
|                    |                                     | 5     | 3     | 1Lbs당 마리수 | Size     | L    | 51마리~70마리   |
|                    |                                     | 5     | 4     | 1Lbs당 마리수 | Size     | M    | 71마리~90마리   |
|                    |                                     | 5     | 5     | 1Lbs당 마리수 | Size     | S    | 91마리~110마리  |
|                    |                                     | 5     | 6     | 1Lbs당 마리수 | Size     | 2S   | 111마리이상     |

## 2. 새우 표준규격 검토

관세청 표준품명·규격에 대하여 많은 수입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블랙타이거(홍다리새우)의 일반적인 크기는 6-8 크기부터 시작하여 31-40 크기로 거래되고 바나메이(흰다리새우)는 16-20부터 71-90까지가 거래된다. 그런데 관세청 표준품명·규격에서는 L 사이즈에서 블랙타이거는 100마리까지이며 바나메이는 70마리까지가 L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다. 블랙타이거의 크기가 바나메이보다 크고 100마리 크기는 국제적으로 거래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점은 크기 구분이 상거래 관행과 일치

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우는 크기가 클수록 상품성이 높아 가격 차이가 크게 나고 크기가 작아질수록 마리당 가격차이가 적게 난다. 셋째 현재의 표준품명규격에는 냉동새우(Head on) 거래 단위가 킬로그램 당 마리수로 거래되고 있어 파운드당 마리수로 거래되는 냉동새우살과 가공새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 최대 수출업자에게 새우를 가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5 개 그룹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렇게 세분화 하는 것은 어렵고 대(Large 20마리 이하), 중(Medium 21-70), 소(Small 71이하)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가장 많은 가공새우를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UL(15이하), XL(16-30), L(31-50), M(51-90), S(91이하)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국수입업체는 3XL부터 시작하여 8단계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과 한국 업체들이 제안한 것과 관세청 규격을 비교하면 업체들은 30 이하를 세분화했고 91 이하를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한국 업체 제안의 한 것의 특징은 30 이하에서 관세청의 표준품명규격은 1단계인데 4단계로 구분하였고 91 이하에서 관세청 규격은 2-3단계인데 업체 것은 1단계로 했다는 것이다.

[표 5-5] 표준품명·규격 비교 검토

| 크기      | 크기별 거래 새우종류       | 관세청       |            |           | 베트남              |                     | 한국업체          |              |                   |               |              |           |              |          |              |
|---------|-------------------|-----------|------------|-----------|------------------|---------------------|---------------|--------------|-------------------|---------------|--------------|-----------|--------------|----------|--------------|
|         |                   | B/T       | VANAMEI    | COOKED    | 수출업자 A           | 수출업자 B              |               |              |                   |               |              |           |              |          |              |
| 4 under | 블랙타이거             | UL        | UL         | UL        | UL<br>(under 15) | LARGE<br>(under 20) | 3XL<br>(6 이상) |              |                   |               |              |           |              |          |              |
| 5/6     |                   |           |            |           |                  |                     | 2XL<br>(7-10) |              |                   |               |              |           |              |          |              |
| 7/8     |                   |           |            |           |                  |                     | XL<br>(11-20) |              |                   |               |              |           |              |          |              |
| 9/10    |                   |           |            |           |                  |                     | XL(16-30)     | L<br>(21-30) |                   |               |              |           |              |          |              |
| 11/15   |                   |           |            |           |                  |                     |               | M<br>(31-40) |                   |               |              |           |              |          |              |
| 16/20   |                   |           |            |           | XL               | XL                  | XL            | L<br>(31-50) | MEDIUM<br>(21-70) | S<br>(41-60)  |              |           |              |          |              |
| 21/25   |                   |           |            |           |                  |                     |               |              |                   | 2S<br>(61-90) |              |           |              |          |              |
| 26/30   |                   |           |            |           |                  |                     |               |              |                   | M(101-200)    | S(91-110)    | S(91-110) | S<br>(91 이하) | S(71-90) | 3S<br>(91이하) |
| 31/35   |                   |           |            |           |                  |                     |               |              |                   |               |              |           |              |          |              |
| 31/40   |                   |           |            |           |                  |                     |               |              |                   |               |              |           |              |          |              |
| 41/50   | 바나메이<br>(VANAMEI) | L(51-100) | L(51-70)   | S(91-110) | S<br>(91 이하)     | S(71-90)            | S<br>(41-60)  |              |                   |               |              |           |              |          |              |
| 51/60   |                   |           | M(71-90)   | M(71-90)  |                  |                     | 2S<br>(61-90) |              |                   |               |              |           |              |          |              |
| 61/70   |                   |           | M(101-200) | S(91-110) |                  |                     | S(91-110)     | S<br>(91 이하) | S(71-90)          | 3S<br>(91이하)  |              |           |              |          |              |
| 71/90   |                   |           |            |           |                  |                     |               |              |                   |               |              |           |              |          |              |
| 91/120  |                   |           | 기타         | S         |                  |                     | 2S            | 2S           | S<br>(91 이하)      | S(71-90)      | 3S<br>(91이하) |           |              |          |              |
| 121/150 |                   |           |            |           |                  |                     |               |              |                   |               |              |           |              |          |              |
| 150/200 |                   |           |            |           |                  |                     |               |              |                   |               |              |           |              |          |              |
| 200/250 |                   |           |            |           |                  |                     |               |              |                   |               |              |           |              |          |              |
| 250/300 |                   |           |            |           |                  |                     |               |              |                   |               |              |           |              |          |              |
| 301 이하  | 2S(301이하)         |           |            |           |                  |                     |               |              |                   |               |              |           |              |          |              |

참고 : 크기는 파운드 당 마리수를 의미

### 3. 냉동새우가격 및 규격 검토

미국 NOAA의 국제 새우 뉴스(Shrimp News International)에서는 매주 새우 도매가격을 공표한다.<sup>21)</sup> 가격은 뉴욕 FOB 기준이며 전주대비 가격이 상승하면 녹색으로 표시되며 가격이 하락하면 적색으로 표시된다. 다음 표는 베트남과 태국의 블랙타이거 규격별 2009년 2월의 가격동향을 보여준다. 블랙타이거의 경우 가장 큰 크기는 4/6 규격이며 다음이 6/8규격이다. 작은 크기는 31크기부터이며 31/40, 41/50, 51/60 등 10마리 단위로 거래가 된다. 41마리 이하 규격도 거래가 되지만 양은 많지 않다. 베트남 가공공장에서 확인결과 블랙타이거를 일찍 수확하는 경우 40마리 이상의 작은 크기를 만들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양식된 상품성 있는 블랙타이거 크기는 40마리 이하크기라고 한다.

[표 5-6] 냉동(Frozen, Shell-On Tails) 블랙타이거 가격 현황

(단위 : \$/파운드(Dollars Per Pound))

| Country Type                                   | Sizes | Prices 30-Jan |        | Prices 06-Feb |        | Prices 13-Feb |        | Prices 20-Feb |        | Prices 27-Feb |        |
|------------------------------------------------|-------|---------------|--------|---------------|--------|---------------|--------|---------------|--------|---------------|--------|
|                                                |       |               |        |               |        |               |        |               |        |               |        |
| Vietnam Tigers (Thailand Tigers Easy Peel IQF) | 6/8   | \$11.95       |        | \$11.95       |        | \$11.95       |        | \$11.95       |        | \$11.95       |        |
|                                                | U-12  | \$9.40        |        | \$9.40        |        | \$9.40        |        | \$9.40        |        | \$9.40        |        |
|                                                | U-15  | \$6.70        |        | \$6.70        |        | \$6.70        |        | \$6.70        |        | \$6.70        |        |
|                                                | 16/20 | \$5.60        | \$5.20 | \$5.60        | \$5.20 | \$5.60        | \$5.20 | \$5.60        | \$5.20 | \$5.60        | \$5.20 |
|                                                | 21/25 | \$4.70        | \$5.15 | \$4.70        | \$5.15 | \$4.70        | \$5.15 | \$4.70        | \$5.15 | \$4.70        | \$5.15 |
|                                                | 26/30 | \$4.00        | \$4.50 | \$4.00        | \$4.50 | \$4.00        | \$4.50 | \$4.00        | \$4.50 | \$4.00        | \$4.50 |
|                                                | 31/40 | \$3.35        | \$3.50 | \$3.35        | \$3.50 | \$3.35        | \$3.50 | \$3.35        | \$3.50 | \$3.35        | \$3.50 |
|                                                | 51/60 |               | \$3.00 |               | \$3.00 |               | \$3.00 |               | \$3.00 |               | \$3.00 |

Source: USA Department of Commerce, NOAA, NMFS <<http://www.shrimpnews.com/>>(2009. 3. 6. 검색) New York, Average FOB Prices

다음은 미국 NOAA 홈페이지에 있는 아세안 국가의 블랙타이거 평균가격이다.

21) <<http://www.shrimpnews.com/>>



2008년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가격이며 2009년의 경우 3월 첫째 주까지의 평균가격이며 태국산의 경우 블랙타이거 Easy Peel IQF이다. Easy Peel IQF는 머리를 제거하고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도록 손질이 되어 있어 같은 크기의 일반 블랙타이거보다 가격이 비싸다. 2008년 4/6 크기의 평균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가격이 14달러 이상이다. 6/8 크기는 2008년은 12달러 이상이며 2009년 가격은 11달러대이다. 2009년 가격이 낮은 이유는 아직 본격적인 생산 시기가 아니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2마리 이하(U-12)가 9달러대이다. 15마리 이하(U-15)는 6달러 대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따라서 표준 규격을 정할 때 6 이하는 다음 사이즈와 가격차이 가장 많이 나므로 별도 규격으로 하여 2UL로 하고, 10마리 또는 12마리 이하는 UL 규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6/20 크기와 21/25크기는 각각 5달러와 4달러 가격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26/30 크기는 4달러 초반대의 가격이다. 따라서 21/25, 26/30을 포함하는 21마리 이상 30마리 이하를 L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1/40, 41/50가격은 3달러대이므로 M 그리고 51마리 이하는 S 규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블랙타이거는 조기 수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이하 크기가 없다.

[표 5-7] 미국의 아세안산 블랙타이거 평균 가격과 표준규격 제안

(단위 : \$/파운드(Dollars Per Pound))

| 크기    | 베트남     |         | 인도네시아  |       | 태국     |        | 말레이시아   |         | 표준 규격안 |       |     |
|-------|---------|---------|--------|-------|--------|--------|---------|---------|--------|-------|-----|
|       | 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       |     |
| 4-6   | \$14.61 |         |        |       |        |        | \$14.25 |         | 4-6    | U-6   | 2UL |
| 6-8   | \$12.80 | \$11.95 |        |       |        |        | \$12.46 | \$11.20 | 6-8    | 7-12  | UL  |
| U-12  | \$9.43  | \$9.40  |        |       |        |        | \$7.72  | \$8.79  | U-12   |       |     |
| U-15  | \$6.73  | \$6.70  | \$5.97 |       |        |        | \$6.07  | \$7.16  | U-15   | 13-20 | XL  |
| 16/20 | \$5.62  | \$5.60  | \$4.87 |       | \$5.20 | \$5.20 | \$5.00  | \$5.70  | 16/20  |       |     |
| 21/25 | \$4.78  | \$4.70  | \$4.12 |       | \$5.15 | \$5.15 | \$4.21  | \$4.74  | 21/25  |       |     |
| 26/30 | \$4.04  | \$4.00  | \$3.77 |       | \$4.50 | \$4.50 |         | \$4.24  | 26/30  |       |     |
| 31/40 | \$3.40  | \$3.35  | \$3.71 |       | \$3.50 | \$3.50 |         | \$3.76  | 31/40  | 31-50 | M   |
| 41/50 | \$3.05  |         | \$3.20 |       |        |        |         | \$3.41  | 41/50  |       |     |
| 51/60 | \$2.83  |         |        |       | \$3.00 | \$3.00 |         |         | 51/60  | 51-70 | S   |
| 61/70 | \$2.85  |         |        |       |        |        |         |         | 61/70  |       |     |

Source: USA Department of Commerce, NOAA, NMFS <<http://www.shrimpnews.com/>>(2009. 3. 6. 검색)  
New York, Average FOB Prices,

다음 표는 2008년 한·아세안 FTA 이행 내용 조사 결과이다.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8 이하 사이즈 수입이 없었다. 머리가 붙어 있는 냉동블랙타이거(head on) 인 관계로 50이하 크기가 없고 21/25 크기가 가장 많다. 미국의 단위가 파운드이고 한국이 킬로그램(Kg)이지만 미국에다 환산 단위(2.2)를 곱하면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와 현재 새 우 수입신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클수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크기가 작을수록 단가 차이가 적게 난다. 8/12 크기와 13/15 크기의 가격 차이는 3.35불인데 비해 26/30 크기와 31/35 크기의 가격 차이는 0.8불이다.

[표 5-8] 한·아세안 냉동 블랙타이거 TRQ 이행 결과(2008년)

(단위 : Kg, \$)

| 크기    | 중량        | 금액         | 단가    | 가격차이 |
|-------|-----------|------------|-------|------|
| 8/12  | 3,888.00  | 63,936.00  | 16.44 |      |
| 13/15 | 11,318.40 | 147,052.80 | 12.99 | 3.45 |
| 16/20 | 33,156.00 | 350,897.40 | 10.58 | 2.41 |
| 21/25 | 87,010.60 | 774,837.94 | 8.91  | 1.67 |
| 26/30 | 29,548.80 | 228,830.10 | 7.74  | 1.17 |
| 31/35 | 10,184.40 | 70,696.26  | 6.94  | 0.8  |
| 31/40 | 16,524.00 | 112,570.80 | 6.81  | 0.13 |
| 41/50 | 9,126.00  | 59,313.60  | 6.50  | 0.31 |

자료 : 2008년 한·아세안 TRQ 이행 결과 조사

NOAA의 국제 새우 뉴스(Shrimp News International)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냉동 바나메이(Vannamei, Whiteleg, 흰다리새우)는 크기는 16/20 규격에서 71/90규격 사이이다. 바나메이는 31/40 크기에서 블랙타이거와 달리 국가에 따라 31/35와 36/40으로 나누기도 한다. 다음 표에서 16/20, 21/25, 26/30 크기의 태국 바나메이와 베트남 블랙타이거의 크기별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같은 크기일 때 블랙타이거의 가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9] 냉동(Frozen, Shell-On Tails) 바나메이 가격 현황

(단위 : \$/파운드(Dollars Per Pound))

| Country Type                       | Sizes  | 30-Jan |        | 06-Feb |        | 13-Feb |        | 20-Feb |        |        |        |
|------------------------------------|--------|--------|--------|--------|--------|--------|--------|--------|--------|--------|--------|
|                                    |        | VA     | BT     | VA     | BT     | VA     | BT     | VA     | BT     | VA     | BT     |
| Thailand Whites #1 Farmed Vannamei | 16/20  | \$4.85 | \$5.60 | \$4.85 | \$5.60 | \$4.85 | \$5.60 | \$4.85 | \$5.60 | \$4.85 | \$5.60 |
|                                    | 21/25  | \$3.80 | \$4.70 | \$3.80 | \$4.70 | \$3.80 | \$4.70 | \$3.80 | \$4.70 | \$3.80 | \$4.70 |
|                                    | 26/30  | \$3.35 | \$4.00 | \$3.45 | \$4.00 | \$3.50 | \$4.00 | \$3.60 | \$4.00 | \$3.60 | \$4.00 |
|                                    | 31/35  | \$3.15 |        | \$3.20 |        | \$3.30 |        | \$3.30 |        | \$3.30 | \$3.35 |
|                                    | 36/40  | \$2.95 |        | \$3.00 |        | \$3.00 |        | \$3.00 |        | \$3.00 |        |
|                                    | 41/50  | \$2.50 |        | \$2.55 |        | \$2.55 |        | \$2.65 |        | \$2.65 |        |
|                                    | 51/60  | \$2.40 |        | \$2.45 |        | \$2.45 |        | \$2.45 |        | \$2.45 |        |
|                                    | 61/70  | \$2.35 |        | \$2.40 |        | \$2.40 |        | \$2.40 |        | \$2.35 |        |
| 71/90                              | \$2.25 |        | \$2.30 |        | \$2.30 |        | \$2.30 |        | \$2.25 |        |        |

Source: USA Department of Commerce, NOAA, NMFS <<http://www.shrimpnews.com/>>(2009. 3. 6. 검색) New York, Average FOB Prices

다음 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바나메이의 평균가격이다. 블랙타이거와 마찬가지로 2009년 평균 가격이 약간 하락하였다. 바나메이는 블랙타이거보다 크기가 작아 15마리 이하의 크기는 없다. 작은 크기는 블랙타이거와 달리 71마리 이하 크기까지 있다. 표준규격과 관련하여 20마리 이하를 XL로하고 30이하를 L, 31/50을 M, 51-70을 S, 71/90을 2S로 정하였다. 바나메이는 블랙타이거와 달리 UL 이상 규격이 없고 2S 규격이 있다.

[표 5-10] 미국의 아세안산 바나메이 평균 가격과 표준규격 제한

(단위 : \$/파운드(Dollars Per Pound))

| 크기    | 중국     |        | 인도네시아  |        | 태국     |        | 크기    | 기준    | 규격 |
|-------|--------|--------|--------|--------|--------|--------|-------|-------|----|
|       | 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       |    |
| 16/20 | \$5.30 | \$4.93 | \$5.20 | \$5.20 | \$5.33 | \$4.85 | 16/20 | 20 이하 | XL |
| 21/25 | \$4.15 | \$3.90 | \$4.28 | \$4.35 | \$4.25 | \$3.79 | 21/25 | 21-30 | L  |
| 26/30 | \$3.59 | \$3.42 | \$4.09 | \$4.20 | \$3.39 | \$3.44 | 26/30 |       |    |
| 31/35 | \$3.45 |        |        |        | \$3.24 | \$3.22 | 31/35 | 31-50 | M  |
| 31/40 | \$3.34 | \$3.23 | \$3.52 | \$3.62 | \$3.30 | \$2.95 | 31/40 |       |    |
| 41/50 | \$2.90 |        | \$2.95 |        | \$3.05 | \$2.54 | 41/50 |       |    |
| 51/60 | \$3.02 | \$2.97 | \$3.24 | \$3.30 | \$2.88 | \$2.41 | 51/60 | 51-70 | S  |
| 61/70 | \$2.97 | \$2.91 |        |        | \$2.80 | \$2.35 | 61/70 |       |    |
| 71/90 |        |        |        |        | \$2.65 | \$2.25 | 71/90 | 71-90 | 2S |

Source: USA Department of Commerce, NOAA, NMFS <<http://www.shrimpnews.com/>>(2009. 3. 6. 검색) New York, Average FOB Prices

다음은 2008년 한·아세안 TRQ 냉동 바나메이 이행결과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큰 사이즈가 하나 더 있었고 31마리 이하부터는 10마리 단위로 거래된다는 차이가 있다. 많이 수입하는 크기는 26/30, 16/20 사이즈로 블랙타이거와 같이 대형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역시 큰 사이즈에서는 다음 사이즈와 가격차이가 많이 났지만 블랙타이거만큼 크지 않았다.

[표 5-11] 한·아세안 냉동새우(VA) TRQ 이행 결과(2008년)

(단위 : Kg, \$)

| 크기    | 중량        | 금액         | 단가   | 가격차이 |
|-------|-----------|------------|------|------|
| 13/15 | 6,770.00  | 52,287.50  | 7.72 |      |
| 16/20 | 29,150.00 | 200,439.00 | 6.88 | 0.84 |
| 21/25 | 6,085.00  | 34,685.50  | 5.70 | 1.18 |
| 26/30 | 49,152.50 | 257,826.50 | 5.25 | 0.45 |
| 31/40 | 28,520.00 | 140,357.00 | 4.92 | 0.33 |
| 41/50 | 13,320.00 | 62,493.50  | 4.69 | 0.23 |
| 51/60 | 16,840.00 | 74,148.00  | 4.40 | 0.29 |

자료 : 2008년 한·아세안 TRQ 이행 결과 조사

다음은 베트남의 냉동 블랙타이거 새우살(PEELED & DEVEINED BLOCKS, Tail-on) 평균 가격이다. 블랙타이거 냉동새우살은 U-12부터 26/30 크기까지 5개 크기로 바나메이와는 달리 크기별 품목이 적으며 10마리 이하크기도 없다. 냉동새우살은 냉동새우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냉동새우보다 비싸다.

[표 5-12] 미국의 베트남 냉동새우 및 새우살 평균 가격

(단위 : \$/파운드(Dollars Per Pound))

| 년도    | 2008년   |        | 2009년   |        |
|-------|---------|--------|---------|--------|
|       | 냉동새우살   | 냉동새우   | 냉동새우살   | 냉동새우   |
| U-12  | \$10.43 | \$9.43 | \$10.04 | \$9.40 |
| U-15  | \$8.15  | \$6.73 |         |        |
| 16/20 | \$6.51  | \$5.62 | \$6.30  | \$5.60 |
| 21/25 | \$5.32  | \$4.78 | \$5.25  | \$4.70 |
| 26/30 | \$4.60  | \$4.04 | \$4.60  | \$4.00 |

냉동새우살의 가격이 냉동새우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편의를 위해 냉동새우의 품목규격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냉동새우살 가운데 한국에서 TRQ 물량을 수입할 때 많이 가져오는 노바시 제품의 크기별 평균단가이다. 주로 바나메이 품종으로 같은 품종의 냉동새우에 비해 크기도 다양하고 크기별 단가차이도 많이 난다.

[표 5-13] 한·아세안 새우살(Nobashi) TRQ 이행 결과(2008년)

(단위 : Kg, \$)

| 크기     | 중량        | 금액         | 단가   | 가격차이 |
|--------|-----------|------------|------|------|
| 31/40  | 69,098.00 | 525,276.60 | 7.60 |      |
| 41/50  | 60,314.20 | 423,798.04 | 7.03 | 0.57 |
| 51/70  | 33,989.00 | 202,992.60 | 5.97 | 1.06 |
| 71/90  | 76,216.00 | 428,201.10 | 5.62 | 0.62 |
| 91/110 | 2,124.00  | 11,575.80  | 5.45 | 0.17 |
| 91/120 | 11,702.50 | 60,150.85  | 5.14 | 0.31 |

자료 : 2008년 한·아세안 TRQ 이행 결과 조사

#### 4. 가공새우 표준규격 검토

현재 한국의 가공새우 표준 규격은 블랙타이거와 바나메이 그리고 꼬리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없다. 다음은 아세안 3대 새우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가공새우(COOKED & PEELED)의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미국 평균가격이다. 같은 크기 기준으로 꼬리 있는 것이 꼬리 없는 것보다 가격이 높으며 태국산 바나메이의 경우 2008년에는 블랙타이거보다 가격이 높았으나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의 블랙타이거가 바나메이보다 가격이 높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바나메이보다 큰 규격인 냉동 블랙타이거와 같은 규격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마리 이하를 XL, 13-20은 UL, 21-30은 L, 31-50은 M, 51이상은 S이다.

[표 5-14] 미국의 아세안산 가공새우 평균 가격과 표준규격 제안

(단위 : \$/파운드(Dollars Per Pound))

| 국가    | 인도네시아   |      |          |      | 태국      |      |         |       |          |      | 베트남     |      | 크기 | 규격    |     |
|-------|---------|------|----------|------|---------|------|---------|-------|----------|------|---------|------|----|-------|-----|
|       | Whites  |      |          |      | Whites  |      | B/T     |       |          |      | B/T     |      |    |       |     |
|       | Tail-on |      | Tail-off |      | Tail-on |      | Tail-on |       | Tail-off |      | Tail-on |      |    |       |     |
| 년도    | 08      | 09   | 08       | 09   | 08      | 09   | 08      | 09    | 08       | 09   | 08      | 09   |    |       |     |
| 4-6   |         |      |          |      |         |      |         |       |          |      |         |      |    | 6 이하  | 2UL |
| 6-8   |         |      |          |      |         |      |         |       |          |      |         |      |    |       |     |
| U-12  |         |      |          |      |         |      | 11.50   | 11.50 |          |      |         |      |    | 7-12  | UL  |
| U-15  |         |      |          |      |         |      | 9.95    | 9.95  |          |      |         |      |    |       |     |
| 16/20 |         |      |          |      |         |      | 7.64    | 7.00  |          |      | 7.80    | 7.50 |    | 13-20 | XL  |
| 21/25 |         |      |          |      |         |      | 6.42    |       |          |      | 6.86    | 6.48 |    |       |     |
| 26/30 | 5.05    | 5.00 |          |      | 6.45    | 4.83 | 5.35    | 5.35  | 4.92     | 4.95 | 5.60    |      |    | 21-30 | L   |
| 31/40 | 4.31    | 4.50 |          |      | 5.11    | 4.25 | 4.43    | 4.40  | 4.07     | 4.10 | 4.70    |      |    |       |     |
| 41/50 | 4.19    | 4.40 | 3.91     | 4.00 | 4.38    | 4.10 | 4.20    | 4.21  |          | 3.25 | 3.70    |      |    | 31-50 | M   |
| 51/60 | 3.95    | 4.00 | 3.63     | 3.70 | 4.08    | 3.50 | 3.98    | 4.05  |          |      |         |      |    |       |     |
| 61/70 |         |      | 3.56     | 3.65 |         |      |         |       |          |      |         |      |    |       |     |
| 71/90 |         |      | 3.50     | 3.50 |         |      |         |       |          |      |         |      |    | 51 이하 | S   |

Source: USA Department of Commerce, NOAA, NMFS <<http://www.shrimpnews.com/>>(2009. 3. 6. 검색)  
New York, Average FOB Prices

다음은 2008년 한·아세안 FTA 가공새우 TRQ 물량 수입결과이다. 가공새우의 경우 대부분이 표준품명규격으로 신고를 하여 크기별로 정확한 단가를 알 수 없다. UL 사이즈의 평균 단가가 11.93불인데 2S 사이즈의 단가가 11.40불이다. M의 평균 수입단가는 10.71인데 S의 수입단가는 11.62불이다.

[표 5-15] 한·아세안 가공새우 TRQ 수입이행 결과(2008년)

(단위 : Kg, \$)

|         | 총량(KG)     | 금액(USD)      | 단가    |
|---------|------------|--------------|-------|
| 2S      | 3,079.40   | 35,092.00    | 11.40 |
| S       | 25,629.80  | 297,749.60   | 11.62 |
| M       | 177,777.00 | 1,904,108.65 | 10.71 |
| L       | 75,585.10  | 782,252.8    | 10.35 |
| 2L      | 68,271.10  | 802,872.60   | 11.76 |
| 3L      | 23,231.10  | 285,140.80   | 12.27 |
| 4L      | 47,529.90  | 601,190.64   | 12.65 |
| 5L      | 3,326.10   | 44,305.00    | 13.32 |
| 6L      | 2,090.70   | 35,494.60    | 16.98 |
| XL      | 8,899.00   | 107,410.00   | 12.07 |
| UL      | 15,806.92  | 188,508.60   | 11.93 |
| 71/90   | 144,589.20 | 784,235.04   | 5.42  |
| 90/100  | 10,880.00  | 68,544.00    | 6.30  |
| 100/200 | 13,222.50  | 74,560.20    | 5.64  |
| 200/300 | 42,337.00  | 220,715.60   | 5.21  |

자료 : 2008년 한·아세안 TRQ 이행 결과 조사

## 5. 새우 품목별 표준규격안

새우는 같은 냉동새우 제품이라도 머리가 있는 것(head on)과 없는 것(head off)의 가격차이가 있고, 꼬리 있는 것(tail on)과 없는 것(tail off), 껍질이 있는 것(shell on)과 없는 것(shell off)의 가격차이가 있다. 그리고 블랙타이거와 바나메이의 가격차이는 더욱 크다. 껍질 유무는 현재 HS 코드가 분리되어 있어 구분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 관세청에서 표준품명 규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음 표는 베트남 현지조사, 미국과 일본의 도매가격, 그리고 수입이행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품명규격의 개선 방안을 정리해본 것이다.

먼저 블랙타이거와 바나메이 규격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의 새우 표준품명규격은 기타새우에 대한 규격이 없고 블랙타이거와 바나메이에 대한 규격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 블랙타이거, 바나메이, 기타새우를 구분하고 크기 규격값을 통일할 경우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크기 규격에서 2UL과 3S 크기를 신설하여 정확한 가격과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30마리 이하크기를 4 단계로 구분하여 규격제

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규격번호를 하나 신설하여 튀김용 새우(Nobashi)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냉동새우살에서 평균 단가가 가장 높고 전체 냉동새우살 수입량의 30%를 차지하는 튀김용 새우를 구분하면 통계 및 저가수입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규격번호는 초밥용 새우 다음에 두는 것이 신고자에게 편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마지막에 신설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수는 블랙타이거와 바나메이, 가공여부 구분 없이 30이하 크기를 현재 1단계에서 3-4단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2UL 크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가격차이가 커서 별도로 구분을 하였다. 50이하의 경우도 현재 XL 한 사이즈로 되어 있으나 L과 M 등 2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50이상 크기를 4단계로 세분화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새우는 큰 크기일수록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표준품목규격은 저가신고 등 부정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가격이 높은 사이즈의 표준규격을 현행보다 세분화했다. 블랙타이거는 51이하 바나메이 71 이하는 소형으로 분류했는데 업계에서 소형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S(소형)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표 5-16] 새우 종류·크기별 표준품명규격안

| 크기      | 표준 규격안         |         |     | 현행 관세청 규격  |               |           |
|---------|----------------|---------|-----|------------|---------------|-----------|
|         | B/T            | VANAMEI | 가공  | B/T        | VANAMEI       | 가공        |
| 6 이상    | 2UL            | 2UL     | 2UL | UL         | UL            | UL        |
| 7/8     | UL             | UL      | UL  |            |               |           |
| 9/12    |                |         |     |            |               |           |
| 13/15   | XL             | XL      | XL  |            |               |           |
| 16/20   |                |         |     |            |               |           |
| 21/25   | L              | L       | L   |            |               |           |
| 26/30   |                |         |     |            |               |           |
| 31/35   | M              | M       | M   | XL         | XL            | XL        |
| 31/40   |                |         |     |            |               |           |
| 41/50   |                |         |     |            |               |           |
| 51/60   |                |         |     |            |               |           |
| 61/70   | S<br>(51-90)   | S       | S   | L(51-100)  | L(51-70)      | S(91-110) |
| 71/90   |                |         |     |            | M(71-90)      | M(71-90)  |
| 91/120  | 2S<br>(91-150) | 2S      | 2S  | M(101-200) | S(91-110)     | S(91-110) |
|         |                |         |     |            | 3S<br>(151이하) | 3S        |
| 121/150 |                |         |     |            |               |           |
| 151/200 |                |         |     |            |               |           |
| 200/250 |                |         |     |            |               |           |
| 250/300 |                |         |     |            |               |           |
| 301 이하  |                |         |     | 2S(301이하)  |               |           |

비고 : 크기는 파운드 당 마리수 기준

[표 5-17] 새우 표준품명규격안

| 표준품명<br>(한글) | 표준품명(영문)        | 규격<br>번호 | 규격<br>순번 | 필수규격(한글)     | 필수규격(영문)            | 규격값 | 세부분류내용             |
|--------------|-----------------|----------|----------|--------------|---------------------|-----|--------------------|
| 새우           | Shrimps, prawns | 1        | 1        | 홍다리얼룩새우      | Black tiger shrimps | B   | 블랙타이거              |
| 새우           | Shrimps, prawns | 1        | 2        | 흰다리새우        | Whiteleg shrimps    | W   | 바나메이(VANAMEI)      |
| 새우           | Shrimps, prawns | 1        | 3        | 기타           | Others              | O   | 기타                 |
| 새우           | Shrimps, prawns | 2        | 1        | 양식여부         | Farming             | R   | 양식                 |
| 새우           | Shrimps, prawns | 2        | 2        | 양식여부         | Farming             | N   | 자연산                |
| 새우           | Shrimps, prawns | 3        | 1        | 꼬리 유무        | Tail                | ON  | 꼬리 있는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3        | 2        | 꼬리 유무        | Tail                | OFF | 꼬리 제거              |
| 새우           | Shrimps, prawns | 4        | 1        | 초밥 또는 횡감용 여부 | For sushi           | Y   | 초밥 또는 횡감용          |
| 새우           | Shrimps, prawns | 4        | 2        | 초밥 또는 횡감용 여부 | For sushi           | N   | 초밥 또는 횡감용이 아니면     |
| 새우           | Shrimps, prawns | 5        | 1        | 냉동여부         | Freezing            | Y   | 냉동한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5        | 2        | 냉동여부         | Freezing            | N   | 냉동하지 않은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1        | 1Lbs당 마리수    | Size                | 2UL | 6마리이하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2        | 1Lbs당 마리수    | Size                | UL  | 7마리-12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3        | 1Lbs당 마리수    | Size                | XL  | 13마리-2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4        | 1Lbs당 마리수    | Size                | L   | 21마리-3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5        | 1Lbs당 마리수    | Size                | M   | 31마리-5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6        | 1Lbs당 마리수    | Size                | S   | 51마리-9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7        | 1Lbs당 마리수    | Size                | 2S  | 90마리-150마리         |
| 새우           | Shrimps, prawns | 6        | 8        | 1Lbs당 마리수    | Size                | 3S  | 151마리이상            |
| 새우           | Shrimps, prawns | 7        | 1        | 튀김용 여부       | Nobashi             | Y   | 튀김용으로 늘려 놓은 것      |
| 새우           | Shrimps, prawns | 7        | 2        | 튀김용 여부       | Nobashi             | N   | 튀김용으로 늘려 놓은 것이 아니면 |

업계에서도 블랙타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 바나메이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이즈별로 분리 될 것이며 관세 포탈로 인한 업자의 이익이 크지 않을 정도의 가격차이기 때문에 새우 종류별 분리는 업무 편의상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6. 갑오징어 새우 품목별 표준규격

한·아세안 TRQ 공매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냉동 갑오징어(0307-49-1010)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영문명이 Cuttlefish인 일반 갑오징어(라틴명 : Sepia ssp)와 영문으로 Baby cuttlefish로 표시되는 갑오징어(라틴명 : Sepiella japonica Sepiella ssp)이다. 작은 갑오징어는 스파게티 요리나 뷔페식당에서 주로 이용되고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이다.

[그림 5-1] 작은 갑오징어(Baby Cuttlefish)



일반 갑오징어 상품은 손질하지 않은 갑오징어(Whole round), 손질했지만 가공하지 않은 것(Whole cleaned), 피렛(Fillet), 칼집을 넣어 술방울처럼 만든 것(Matsukasa), 머리 가공한 것(Head) 등이 있다.

[그림 5-2] 일반 갑오징어 피레트



다음 표는 베트남 갑오징어 전문 수출기업의 바시푸드(Basefood)의 갑오징어 상

품별 2007년과 2008년의 수출단가표이다. 갑오징어의 경우 아세안 국가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의 변동은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10월에서 12월에는 수출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품별 단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 피렛과 마추카사는 가장 높은 단가이지만 제품별 단가 차이는 거의 없다. 머리, 손질하지 않은 것, 손질한 것, 피렛으로 단가 차이가 1불 이상 나고 있어 표준규격을 정한다면 일반 갑오징어 제품 종류와 baby cuttlefish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8] 갑오징어 상품 종류별 수출가격

(단위 : USD/KG - FOB HCM)

| 상품(COMMODITY)                                                |                  | 년도   | Jan to April             | May to Sep | Oct to Dec |
|--------------------------------------------------------------|------------------|------|--------------------------|------------|------------|
| Cuttlefish<br>(Latin : Sepia ssp)                            | Whole round      | 2007 | 3.2                      | 3.5        | 3.7        |
|                                                              |                  | 2008 | 3.7                      | 3.5        | 3.4        |
|                                                              | Whole cleaned    | 2007 | 4.3                      | 4.5        | 4.6        |
|                                                              |                  | 2008 | 4.6                      | 4.3        | 4.3        |
|                                                              | Fillet           | 2007 | 6.0                      | 6.2        | 6.5        |
|                                                              |                  | 2008 | 6.5                      | 6.4        | 6.4        |
|                                                              | Matsukasa        | 2007 | 6.1                      | 6.4        | 6.6        |
|                                                              |                  | 2008 | 6.6                      | 6.3        | 6.4        |
|                                                              | Head             | 2007 | 2.6                      | 2.7        | 2.8        |
|                                                              |                  | 2008 | 2.8                      | 2.5        | 2.7        |
| Baby cuttle fish<br>(Latin : Sepiella japonica Sepiella ssp) | Baby cuttle fish | 2007 | 3.1-3.3 USD/KG CNF Busan |            |            |
|                                                              |                  | 2008 | 3.1-3.3 USD/KG CNF Busan |            |            |

자료 : 베트남 수출회사

다음 표는 갑오징어 피렛의 단가와 수출 신고가격이다. 냉동 갑오징어 피렛은 일반적으로 1-2, 2-3, 2-4, 3-5, 5-7, 8-12 등 킬로그램 당 2-3마리 단위로 포장되며 단가는 크기가 클수록 높아진다. TRQ 품목으로 수입된 물량에 가장 많이 수입된 규격은 3-5 크기이며 다음으로 2-4 크기이다.

[표 5-19] 냉동 갑오징어 피렛 규격 및 가격

| 크기 구분         | 2007 수출단가 (USD/kg, CNF) | 수입신고가격 (USD/kg) |
|---------------|-------------------------|-----------------|
| 1-2(2-3)0l/kg | 8.5                     | 8.61            |
| 2-4(3-5)0l/kg | 8.2                     | 7.87            |
| 5-70l/kg      | 7.8                     | 7.40            |
| 8-120l/kg     | 7.4                     | 6.87            |

다음 표는 갑오징어 표준품명규격안이다. 소형 갑오징어는 제품형태, 가격 등이 달라 포함시키지 않았다. 갑오징어 형태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먼저 손질하지 않은 것, 손질한 것 피레트, 마추카사, 머리 등으로 나누었다. 초밥용 갑오징어도 일부 있어 구분을 했으며 모든 갑오징어가 자연산인 관계로 냉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나 신냉새우 등과 같이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포함시켰고 마리수는 편의상 5단계로 구분했다.

[표 5-20] 갑오징어 표준품명규격안

| 표준품명<br>(한글) | 표준품명(영문)                       | 규격<br>번호 | 규격<br>순번 | 필수규격(한글)        | 필수규격(영문)      | 규격값 | 세부분류내용            |
|--------------|--------------------------------|----------|----------|-----------------|---------------|-----|-------------------|
| 갑오징어         | Cuttlefish (Latin : Sepia ssp) | 1        | 1        | 손질하지 않은 것       | Whole round   | R   | 라운드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2        | 손질한 것           | Whole cleaned | C   | 손질된 것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3        | 피레트             | Fillet        | F   | 피레트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4        | 마추카사            | Matsukasa     | M   | 마추카사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1        | 5        | 머리              | Head          | H   | 머리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2        | 1        | 초밥 또는 횡감용<br>여부 | For sushi     | Y   | 초밥 또는 횡감용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2        | 2        | 초밥 또는 횡감용<br>여부 | For sushi     | N   | 초밥 또는 횡감용이<br>아니면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3        | 1        | 냉동여부            | Freezing      | Y   | 냉동한 것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3        | 2        | 냉동여부            | Freezing      | N   | 냉동하지 않은 것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1        | kg당 마리수         | Size          | UL  | 1-2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2        | kg당 마리수         | Size          | XL  | 2-3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3        | kg당 마리수         | Size          | L   | 3-4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4        | kg당 마리수         | Size          | M   | 5-7               |
| 갑오징어         | Cuttlefish(Latin : Sepia ssp)  | 5        | 5        | kg당 마리수         | Size          | S   | 8 이하              |

## 7. 소형 갑오징어 HS 코드 세번 분류 검토

다음 표는 소형 갑오징어 크기별 수출단가와 수입신고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Baby cuttlefish는 20-40, 40-60, 60-80, 80-100, 100-120(pc/kg) 등의 규격이 있으며 한국에서 선호하는 크기는 20-40, 40-60, 60-80(pc/kg) 등 세 가지 종류이다. 유럽에서는 60mm 이상을 선호한다. Baby cuttlefish는 갑오징어 피레트과는 달리 크기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 결과 베트남 수출회사가 제시한 Baby cuttlefish 수출단가와 TRQ 물량 평균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정확한 수입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형 갑오징어는 학명도 다르고 모양, 단가, 거래단위 등이 모두 달라 표준규격을 만드는 것보다 일반 갑오징어와 세번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1] 소형 갑오징어(Baby cuttlefish) 규격 및 가격

| 크기 구분      | 수출단가 (USD/kg, CNF) | 수입신고가격 (USD/kg) |
|------------|--------------------|-----------------|
| 20-40mm/kg | 3.1-3.3            | 3.28            |
| 40-60mm/kg |                    | 3.11            |
| 60-80mm/kg |                    | 3.31            |

자료: 2008년 TRQ 갑오징어 수입신고가격 전수조사 결과

### 제3절 건의사항 검토

#### 1. 냉동새우살 TRQ 공매 물량 증대

한·아세안 2008년 수산물 TRQ 공매 참여자들은 새우와 새우살의 공매 잔량을 근거로 냉동새우의 공매물량을 새우 3천톤과 새우살 2천톤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물량 가운데 냉동새우의 할당량은 HS 6단위 기준(030613)으로 5천톤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HS 10단위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냉동새우는 다시 냉동새우(0306131000)와 보리새우와 냉동새우살(0306139000)로 세분하고 있다.

| HS 코드<br>(6 단위) | HS 코드<br>(10 단위) | 품명         | 대아세안<br>할당량(톤) | 할당 수량내 세율 | 할당수량외 세율 |
|-----------------|------------------|------------|----------------|-----------|----------|
| 030613          | 0306131000       |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 5,000          | 0%        | 최혜국대우관세율 |
|                 | 0306139000       |            |                |           |          |

한국은 2008년 아세안 TRQ를 이행함에 있어 전체 냉동새우 5천톤 가운데 냉동새우 할당량을 3440톤, 냉동새우살 할당량을 1560톤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였다. 2007년 공매물량과 비교할 때 냉동새우살의 공매물량이 2백 1십 톤 증가했다. 2007년 통관량은 2천 4백 7톤이며 2008년 통관량은 3천 2백 1십 7톤으로 2007년 대비 8백 1톤 증가했다. 새우살의 경우 2008년 증가 할당량 2백 1십 톤 가운데 2백 6톤이 통관되었다. 냉동새우의 2007년과 2008년 공매잔량은 1243톤과 223톤으로 낙찰률은 각각 66%와 94%였다. 2008년 공매납입금 증가는 냉동새우가 2007년에 비해 8억 6천 4백만 원, 냉동새우살 2007년 대비 3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냉동새우살의 경우 2007년 공매잔량이 0톤, 2008년 공매잔량이 6톤으로 낙찰률 100%를 기록했다. 2007년의 경우 냉동새우 낙찰률이 현저하게 낮았으나 2008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다수의 입찰 참가 업체가 새우살의 할당량 증대를 원하고 있고 냉동새우살의 톤당 공매납입금이 냉동새우보다 높아 냉동새우살 할당량을 2천 톤으로 증대시키면 2008년 기준 4억 6천 4백만 원의 공매납입금 증대가 예상된다. 냉동새우살 TRQ 물량이 전체 새우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이고 냉동새우의 경우 25%에 해당하여 냉동새우살의 물량을 늘려도 수입이나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2] 2008년도 한·아세안 수산물 TRQ 입찰 결과

(단위 : 톤, 원)

| 품목명          | 공매 할당량 |       |      | 전체 통관량 |       |       | 공매납입금 징수액     |               |               | 톤당 공매납입금 |           |         |
|--------------|--------|-------|------|--------|-------|-------|---------------|---------------|---------------|----------|-----------|---------|
|              | 2007   | 2008  | 증감   | 2007   | 2008  | 증감    | 2007          | 2008          | 증감            | 2007     | 2008      | 증감      |
| 새우<br>(낙찰률)  | 3,650  | 3,440 | -210 | 2,407  | 3,217 | 810   | 2,168,807,200 | 3,033,219,480 | 864,412,280   | 901,042  | 942,872   | 41,830  |
| 새우살<br>(낙찰률) | 1,350  | 1,560 | 210  | 1,350  | 1,554 | 204   | 1,278,906,760 | 1,637,020,930 | 358,114,170   | 947,338  | 1,053,424 | 106,086 |
| 합계           | 5,000  | 5,000 | 0    | 3,757  | 4,771 | 1,014 | 3,447,713,960 | 4,670,240,410 | 1,222,526,450 | 917,677  | 978,881   | 61,203  |

## 2. 품목 크기별 물량 배분 필요 여부

한·아세안 2008년 TRQ 공매에서 새우살에 대하여 2차 공매부터 1차 공매 후 남은 물량을 크기별 공매물량을 정하여 공매를 실시하였다. 2차 공매에서 꼬리 없는 홍다리새우 대(大) 196톤, 꼬리 없는 흰다리새우 대(大) 40톤, 기타 새우 20톤 등 총 256톤에 대하여 크기별 공매물량을 배정했다. 3차 공매에서는 2차보다 더 세분화하여 꼬리 있는 홍다리새우 대 13톤, 중 2톤, 소 1톤과 꼬리 없는 흰다리새우 대 47톤, 중 1톤, 소 1톤 등 총 65톤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세부 물량 배정에 대하여 공매 참가자들은 첫째, 관세청 표준품명 규격을 기준으로 한 대, 중, 소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둘째, 세분화하여 공매를 할 경우 공매 이행이 더욱 어려워지며, 셋째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했다.

새우 종류별·크기별로 공매물량을 세분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 TRQ 물량 대부분이 대형 위주로 수입되고 있고 특히 홍다리새우(블랙타이거)는 중형과 소형의 입찰자가 전혀 없었다. 현지 생산지와 가공공장 상황에 따라 낙찰을 받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행이 어려워지고 수출입조합에서도 크기별 수입 이행여부 확인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표 5-23] 냉동새우살 공매 물량 배정 현황

(단위 : 톤, 원)

| 품 목 명                        | 전체 물량 | 1차    |            | 2차    |     |          | 3차    |    |         | 전체 통관 물량   | 통관잔량   |
|------------------------------|-------|-------|------------|-------|-----|----------|-------|----|---------|------------|--------|
|                              |       | 낙찰    | 통관         | 배정 물량 | 낙찰  | 통관       | 배정 물량 | 낙찰 | 통관      |            |        |
| 계                            | 1,560 | 1,560 | 1,303.6822 | 256   | 191 | 189.6931 | 65    | 61 | 60.3315 | 1,553.7068 | 1.9754 |
| 양식산<br>홍다리얼룩새우<br>(꼬리 없는 대형) | -     | -     | -          | 196   | 151 | 149.7126 |       | -  | -       | 149.7126   | 1.2874 |
| 양식산<br>홍다리얼룩새우<br>(꼬리 있는)    | -     | -     | -          |       | -   |          | 대13   | 13 | 13      | 13         | 0      |
|                              |       |       |            |       |     |          | 중2    | -  | -       | -          | -      |
|                              |       |       |            |       |     |          | 소1    | -  | -       | -          | -      |
| 양식산<br>흰다리새우<br>(꼬리 없는)      | -     | -     | -          | 대40   | 40  | 39.9805  | 대47   | 47 | 46.334  | 86.3145    | 0.6855 |
|                              |       |       |            |       |     |          | 중 1   | 1  | 0.9975  | 0.9975     | 0.0025 |
|                              |       |       |            |       |     |          | 소 1   |    |         |            |        |
| 자연산<br>꼬리 있는 기타새우            |       |       |            | 20    |     |          |       |    |         |            |        |

비고 : 대(L 이상) 중(M), 소(S)

### 3. 공매시기와 이행 기간

한·아세안 TRQ 공매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2회, 2008년에는 3회 실시했다. 2008년 1차 입찰은 4월 29일이었으며 수입이행기간은 8월 31일까지(9월 12일까지 연장)였다. 입찰 참여자들은 입찰시기를 새우의 출하시기와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야 하고 이행 기간 준수가 곤란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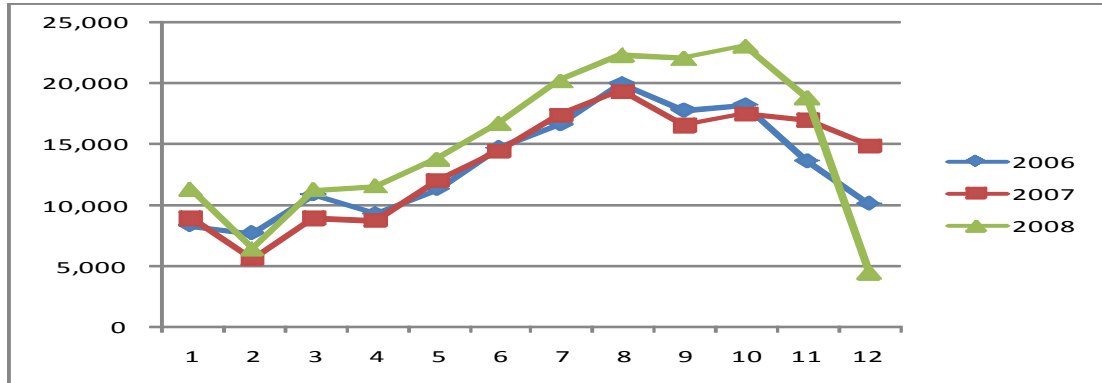
농산물의 경우 한·칠레 FTA를 포함한 모든 FTA TRQ는 분기마다 1회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 TRQ 공매를 분기마다 실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세안국가의 TRQ 품목 생산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주관기관이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낙찰 받은 기업이 이행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와 미이행 시에 잔여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이다.

베트남의 경우 갑오징어는 어선어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연중 생산하고 있어 이행시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어선어업의 경우 태풍이 오거나 기후 후 조건이 나쁠 경우 조업을 할 수 없고 어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새우의 경우 양식을 하기 때문에 매년 생산시기가 유사하므로 생산과 수출을 고려하여 공매주기 및 이행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베트남 월별 수출량을 보여준다. 2008년에는 2006년과 2007년보다 월별 수출량이 증가했지만 2008년 12월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3년간의 수출동향은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에 약간 감소하다 11월에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그림 5-3] 베트남 월별 새우 수출량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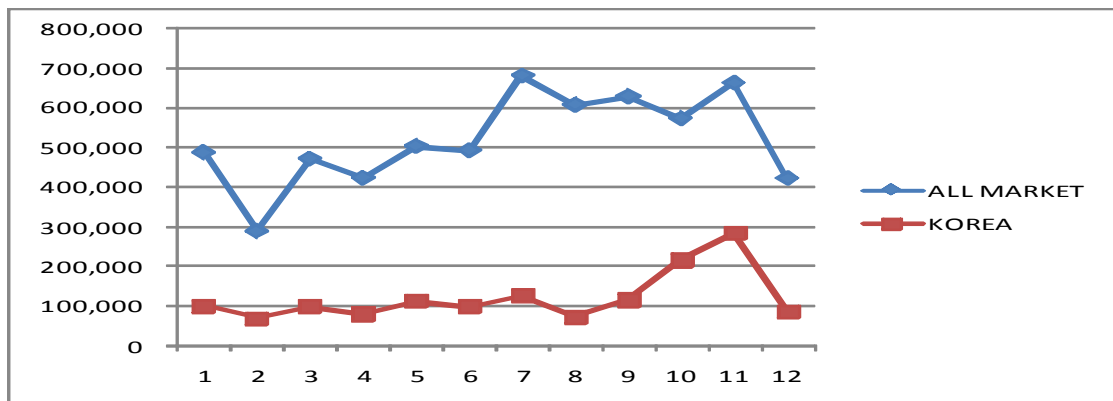


자료 : 베트남 수산물 수출협회(VASEP) 내부자료 정리

다음 표는 베트남 최대 수출기업 가운데 하나인 김안 기업(KIM AHN Company Ltd)의 2007년 수출실적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열대지역에 위치하여 연중 새우 양식이 가능하지만 주요 생산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김안 기업도 세계 수출량은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월에 정점을 이룬다. 기업과 양식장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7-8월부터 11월까지가 생산과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경우 저장창고 시설이 거의 없어 생산, 가공, 수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김안 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은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집중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8월에서 11월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5-4] 베트남 기업 2007년 수출 실적

(단위 : 톤)



자료 : 베트남 수산물 수출협회(VASEP) 내부자료 정리



한·아세안 TRQ 물량의 공매시기를 결정할 때 베트남과 아세안국가의 생산시기와 우리나라의 수입패턴을 고려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새우 주요 생산시기는 5월에서 11월이지만 연중 생산이 가능하므로 공매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행기간이 아세안 국가 주요 생산시기인 5월에서 11월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예정가격 산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예정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가공새우와 신냉새우의 예정가격을 낮추면 TRQ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수산물 수입관리 요령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공매납입금의 정의를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결정시 관세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단순히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관세차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매 입찰 경쟁률이 높을 경우 납입의사 표시 금액이 관세차액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고시에서 관세차액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4] 공매납입금 정의 비교

| 농산물 수입관리요령                                                           | 수산물수입관리요령                                                                                        |
|----------------------------------------------------------------------|--------------------------------------------------------------------------------------------------|
|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당해 농산물의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u>납입하기로 한 금액</u> 을 말한다. | 5.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u>관세차액 범위 내에서</u>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

한·아세안 TRQ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공매납입금은 수입금액이 아닌 ‘관세차액 범위내’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톤당 원(₩)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유효한 응찰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총 입찰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음 표는 2007년과 2008년 공매납입금 현황이다. 2008년 냉동새우 예정가격은 9십 4만 2천원 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5] 한·아세안 수산물 TRQ 공매납입금 현황

(단위 : 톤, 원)

| 품 목 명 | 톤당 평균 공매납입금 |          |       |           |           |           |     |          |       |           |           |           |      |
|-------|-------------|----------|-------|-----------|-----------|-----------|-----|----------|-------|-----------|-----------|-----------|------|
|       | 관세          | 2007     |       |           |           |           |     | 2008     |       |           |           |           |      |
|       |             | 평균단가(\$) |       | 평균<br>납입금 | 관세액       |           | 비율  | 평균단가(\$) |       | 평균<br>납입금 | 관세액       |           | 비율   |
|       |             | 세계       | 아세안   |           | 세계        | 아세안       |     | 세계       | 아세안   |           | 세계        | 아세안       |      |
| 냉동새우  | 20          | 5,800    | 6,100 | 901,042   | 1,078,800 | 1,171,200 | 77% | 5,700    | 6,000 | 942,872   | 1,242,600 | 1,308,000 | 72%  |
| 냉동새우살 | 20          | 5,300    | 7,700 | 947,338   | 985,800   | 1,478,400 | 64% | 4,500    | 4,800 | 1,053,424 | 981,000   | 1,046,400 | 101% |
| 가공새우  | 20          | 6,120    | 8,800 | 1,185,614 | 1,138,320 | 1,689,600 | 70% | 6,160    | 7,200 | 1,186,785 | 1,342,880 | 1,569,600 | 76%  |
| 신냉새우  | 20          | 5,990    | 6,010 |           |           |           |     | 5,760    | 5,079 | 1,180,517 | 1,255,680 | 1,107,222 | 107% |
| 갑오징어  | 10          | 3,430    | 3,440 | 171,483   | 329,280   | 330,240   | 52% | 3,600    | 3,680 | 214,972   | 392,400   | 401,120   | 54%  |

환율 : 2007년 960원/\$ 2008년 평균관세율 1090원/\$로 계산

수산물의 경우 예정가격은 관세차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므로 관세차액을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액은 새우류가 20%이고 갑오징어가 10%이다. 냉동새우를 제외한 가공제품을 수입 할 때에는 수입가격에다 관세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므로 관세차액은 가공새우류의 경우 수입가격에다 0.32를 곱한 금액이다. 현재 평균 공매납입금은 이러한 관세차액의 54%에서 67% 수준이다. 결국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참가하지 않은 업체보다 관세차익면에서 40%이상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경우 관세차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입이익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농안법 제16조에 따르면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참기름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입이익금 금액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는 판매수입금에서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두 번째 방법은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참기름 공매에 적용한다. 이는 수입권 공매시에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시한 공매납입금을 의미한다.<sup>22)</sup>

22) 유통공사에서 공매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방법

[표 5-26]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

| 품목             | 수입이익금 금액산정방법                                                                                                                                                                                        |
|----------------|-----------------------------------------------------------------------------------------------------------------------------------------------------------------------------------------------------|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 <sup>23)</sup> 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체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 참기름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농산물의 경우 수입이익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매가격과 공매납입금 예정가격 산정방법을 농수산물 유통공사 세부요령에서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sup>24)</sup> 제11조에서는 예정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실제차액의 30-50%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이익금 납입대상 품목 가운데 참기름은 수입자 결정시에 품목관세의 30-50%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결국 수입권공매에서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해야 낙찰이 되어 수입이익금은 예정가격과 같거나 예정가격보다 높게 징수된다.

‘FTA 지원 특별법’ 제19조에서는 FTA 관련 TRQ 품목의 수입이익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25)</sup>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 지원 특별법에서는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입금’과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매납입금도 관세차액 범위에서 결정되는 수입이익금의 일부이므로 용어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

에 대한 규정이 빠진 품목은 메밀, 감자, 인삼이다.

23) 수입 품목을 판매하여 이익이 날 수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판매금액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가격에서 수입가격 및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수입이익금이 되며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24)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4-6호, 2004. 5. 10.

제11조(예정가격) ①수입권공매 입찰시는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예정가격은 국내가격(도매가격, 단,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가격)과 수입가격(판매원가)의 차액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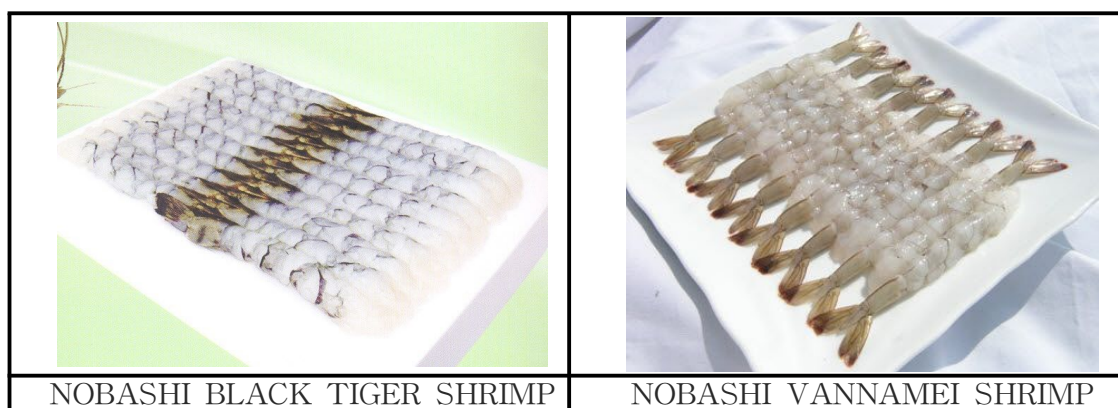
25) FTA 지원 특별법에서는 농안법 제16조와 같이 수입이익금의 징수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농안법 제15조의 ‘농산물의 수입추천’과 같은 규정이 없다.

다. 그리고 농안법의 경우 공매납입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FTA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매납입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용어의 정의를 괄호 속에 두고 있다. 입법론적으로 법의 정의 규정에 수입이익금, 공매납입금, 판매수입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입추천,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품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안법 및 FTA 이행 특별법 모두 다음에서 설명하는 추천 물량 수입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 냉동새우살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냉동새우살의 경우 수입권 공매 물량이 전량 소진되었다. 수입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단가가 높은 Nobashi 제품이다.

[그림 5-5] 튀김용 새우



Nobashi는 아래 그림과 같이 껍질을 벗기고 튀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품목보다 단가가 높다. 전체 냉동새우살 TRQ 수입량은 1,554톤이었으면 노바시는 477톤으로 전체 TRQ 냉동새우살에서 Nobashi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이다. TRQ 평균 수입단가가 7.78불인데 노바시의 경우 7.82불로 약간 높다. 그러나 TRQ 단가와 노바시 평균단가는 한국의 아세안 및 전체 수입 평균가격보다 3불 이상 높다. 그 이유는 아세안 특히 베트남 등으로부터 TRQ 물량으로 수입하는 새우는 크기가 크고 상품성이 좋은 블랙타이거 위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냉동새우살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아세안이나 전체 수입 평균으로 하더라도 수입업체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7] 노바시 제품 수입이행 현황(2008년)

(단위 : 천불, 톤)

|              | 총중량      | 총 금액   | 평균 단가 | 관세액(원)    | 공매납입금 비율<br>(평균납입금/관세액) |
|--------------|----------|--------|-------|-----------|-------------------------|
| 새우살(Nobashi) | 477(30%) | 3,731  | 7.82  | 1,704,760 | 62%                     |
| TRQ 새우살      | 1,554    | 12,094 | 7.78  | 1,696,040 | 62%                     |
| 아세안          | 9,302    | 44,458 | 4.8   | 1046400   | 101%                    |
| 전체           | 17,087   | 76,918 | 4.5   | 981000    | 107%                    |

환율 : 2008년 평균환율 1,090원/\$로 계산

노바시 제품에 대한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관세액을 계산하면 1백 7십 만원으로 평균 공매납입금 1백 4만원보다 7십 만원 높다. 2008년 냉동새우살 공매평균 납입금 1백 5만원은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냉동새우살 평균단가의 62% 수준이다. 공매납입금액이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임을 감안 할 때 입찰참가자들은 40% 내외의 관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가공새우

가공새우의 경우 TRQ 물량 2천톤 가운데 1천 8십 5톤이 낙찰되었다. 2008년 기준 전체 수입 가공새우 평균 단가는 6.2불이고 아세안 평균 수입단가는 7.2불이다. TRQ 가공새우 평균 수입단가는 8.9불이다.

[표 5-28] 스시에비 제품 수입이행 현황(2008년)

(단위 : 천불, 톤)

|                 | 총중량      | 총 금액   | 평균 단가 | 관세액       | 공매납입금 비율<br>(평균납입금/관세액) |
|-----------------|----------|--------|-------|-----------|-------------------------|
| 스시에비(Sushi Ebi) | 666(61%) | 6,740  | 10.12 | 3,529,856 | 44%                     |
| TRQ 가공새우        | 1,085    | 9,667  | 8.91  | 3,107,808 | 51%                     |
| 아세안 가공새우        | 3,598    | 25,887 | 7.2   | 2,511,360 | 63%                     |
| 전체 가공새우         | 6,755    | 41,619 | 6.2   | 2,162,560 | 73%                     |

환율 : 2008년 평균환율 1,090원/\$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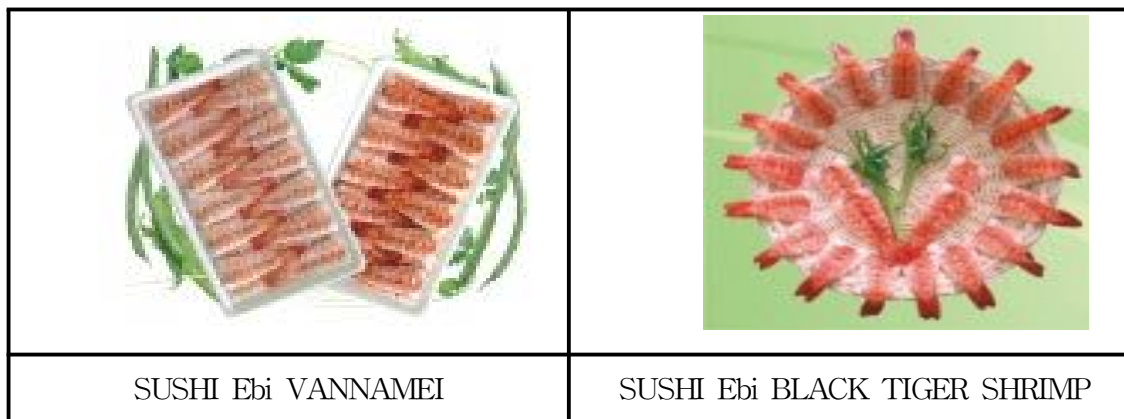
가공새우 가운데 수입업체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초밥용 재료로 쓰이는 다음 그림과 같은 스시에비(Sushi Ebi)이다. 스시에비는 전체 TRQ 물량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시에비의 평균단가는 10.12불로 아세안 평균단가보다 3불이 높고 전체 가공새우 평균 단가보다 4불이 높다. 스시에비는 TRQ 가공새우 평균 단가보다 1.2불이 높아 가공새우 세부 품목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가공새우는 10%의 부가세를 감안하면 관세액이 냉동새우류보다 매우 높다. 본 연

구과정에서 면담결과 TRQ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관세차익의 60% 수준을 예정 가격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의 가공새우 평균 수입단가 관세액의 60%는 1백 30만원이고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새우 평균단가의 60%는 1백 50만원이다. 가공새우 평균 공매납입금이 1백 5십 6만원이었으므로 많은 입찰 참가자들이 낙찰을 받지 못했고 예정가격이 높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체들이 2008년 평균 공매납입금을 납입하고 TRQ 가공새우 물량을 낙찰 받아 일반 가공새우를 수입하면 30% 이하의 관세차익을 볼 수 있다.

결국 전체 수입량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설정하거나 아세안 가공새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면 스시에비나 대형 가공새우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일반 크기의 새우를 수입할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림 5-6] 가공새우(스시에비)



2008년 일부 수입업체들은 전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TRQ 가공새우 예정단가가 높게 나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시에비에 대한 국내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스시에비 가공시설을 갖춘 공장이 소수이고 물량도 한정되어 있다. 현재 예정가격 체제에서는 작은 크기의 가공새우살을 수입하는 업체는 예정가격이 높게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은 크기의 새우살을 수입하는 업체를 고려한다면 스시에비와 기타 새우살을 분리하여 공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신냉새우

신냉새우 수입은 90%이상이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새우 양식장이 호치민 남부에 집중되어 있고 가공공장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하는 데에 7-8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 당국의 위생증명서 발급

이 원활하지 않아 신냉새우 수입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신냉새우의 경우 태국이 FTA를 비준할 경우 TRQ 물량이 전량 소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수입 불이행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금지 규제 검토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제14조에 의하면 낙찰자가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이행 보증금은 수발기금에 귀속되고 2년간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 참가자들 가운데 5개 품목에 모두 입찰에 참여하여 4개 품목을 수입완료 했고 1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하지 못한 업체에게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에 의거 모든 품목을 향후 2년간 입찰참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체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금지기간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WTO TRQ와 FTA TRQ 물량 수입 미이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금지를 각각 3년간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도 농산물과 같이 입찰참가 금지 기간이 3년이었으나 2008년 개정을 통해 2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경우 수입 미이행율이 매우 낮지만 수산물의 경우 수입 미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29] 농산물과 수산물 입찰참가 금지 기간 비교

| 한·아세안 FTA 농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
|---------------------------------------------------------------------------------------------------------------------------------------------------------------------------------------------------------------------------------------------------------------------------------------------------------------------------|------------------------------------------------------------------------------------------------------------------------------------------------------------------------------------------------------------------------------------------------------------------------------------------------------------------|
|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생략)<br>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br>③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b>3년간</b>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에 대한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br>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생략)<br>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한다.<br>③제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b>2년간</b>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br>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

먼저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추천대행기관과 실수요자간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위반 관련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위반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표 5-3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b>2년 이내의 범위에서</b>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b>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b>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여러 위반행위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1호에서 7호까지는 건설계약에 관한 부분이고 제8호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부분이다. 가장 중한 2년 동안 낙찰을 할 수 없도록 한 위반행위는 별표 2 제9호의 ‘담합행위를 한 경우’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2억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이다. 낙찰 받은 TRQ 물량의 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의하여 6개월이다.

[표 5-3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한기간 |
|-------------------------------------------------------------------------------|------|
| 8. 영 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b>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b>                              | 6월   |
|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 3월   |
|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를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
|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3월   |
|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를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1월   |
|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월   |
|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

농안법에서의 벌칙규정(법 제87조)에서 WTO TRQ 물량을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 연구과정에서 2008년도 수입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8년 8월말까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 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였다. 2개 기업은 환율상승 등으로 수입을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여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는 2개 기업 이외는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입찰 참가 금지와 관련하여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규모가 큰 기업들은 현행 제

도하에서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큰 기업이 물량을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리 입찰 또는 자회사 등과 함께 입찰참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기업이 수입이행을 못해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어도 다른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과정에서 전화 조사 결과 수입 미이행 업체 가운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입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고 다른 방법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도 있었다. 다른 방법이란 제제를 받은 업체들이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입찰참가 금지 규정은 사실상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미이행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입찰참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이행 사례와 정도를 구분하여 입찰 참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요령 개정안을 검토해 보았다. 수입미이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5-32] 한·아세안 수산물 TRQ 물량 관리 고시 개정안

| 현재                                                                                                                                                                                                                                                                                                                                                                                                                                                                             | 개정                                                                                                                                                                                                                                                                                                                                                                                              |
|--------------------------------------------------------------------------------------------------------------------------------------------------------------------------------------------------------------------------------------------------------------------------------------------------------------------------------------------------------------------------------------------------------------------------------------------------------------------------------|-------------------------------------------------------------------------------------------------------------------------------------------------------------------------------------------------------------------------------------------------------------------------------------------------------------------------------------------------------------------------------------------------|
| <p>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p> <p>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한다.</p> <p>③제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2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li> <li>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li> </ol> <p>④&lt;신설&gt;</p> | <p>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lt;현행과 같음&gt;</p> <p>②&lt;현행과 같음&gt;</p> <p>③제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b>수입미이행 확정된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b>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li> <li>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li> </ol> <p>④ <b>제3항에 따른 수입미이행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b></p> |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먼저 낙찰 받은 업체가 수입을 하지 못한 경우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 요령 제1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를 폭 넓게 해석하여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금지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이행보증금 귀속과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는다. 비고에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 인정 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추천기관이 판단을 하기 쉽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산물 검사 지연으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은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 참가 업체들은 수입검사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이행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려면 검사기간을 고려하여 수입을 추진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제1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출국가의 소요사태나 기상악화 등 수입 불이행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금지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수입관리요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현재 과부족 비율을 3%로 인정하여 97%까지 수입을 한 경우 수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권 공매에서는 과부족 비율을 3%까지 인정하고 실수요자 공매에서는 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입찰참여 금지 규정 적용에 있어서 과부족 비율을 5-1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체가 낙찰 받은 물량의 90%까지 이행을 한 경우 수입 금지를 2년간 하는 것이 국익과 개인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TRQ 물량을 낙찰 받은 기업은 낙찰 물량 전체를 수입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물량의 90%를 수입했다는 것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95-7%를 수입이행완료 기준으로 90%를 수입이행 보증금은 귀속시키되 수입금지 조항 적용을 하지 않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 중 감모등 소량 수입미행의 기준도 입찰 공고 때 마다 공고할 필요 없이 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입미이행 비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5-33] 미이행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안

| 사유                                                | 미이행 비율 | 수입이행보증금<br>귀속 비율 | 제한기간 | 비고                                       |
|---------------------------------------------------|--------|------------------|------|------------------------------------------|
|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br>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 0                | 0    | - 전쟁, 태풍 등 불가항력의<br>사유<br>- 수산물 검사지연 불포함 |
|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br>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br>소량인 경우 | 97%이상  | 0                | 0    |                                          |
| 3. 기타 사유                                          | 90-96% | 100              | 0    |                                          |
|                                                   | 80-89% | 100              | 1회   |                                          |
|                                                   | 70-79% | 100              | 2회   |                                          |
|                                                   | 50-69% | 100              | 3회   |                                          |
|                                                   | 49% 이하 | 100              | 4회   |                                          |
| 4. 담합                                             |        | 100              | 2년   |                                          |

## 6. 구매 결과 공개

구매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소량으로 낙찰을 받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입찰예정가와 낙찰물량과 낙찰 금액이다. 현재 수출입조합에서는 낙찰업체수와 낙찰물량만 공개하고 있다. 입찰예정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또한 입찰예정가를 공개할 경우 담합의 우려와 함께 낙찰을 받고자 하는 큰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 모든 물량을 독점할 가능성도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입권 구매 주의사항에는 ‘구매예정가격은 개찰 완료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낙찰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낙찰결과는 기업별 낙찰물량과 평균낙찰단가를 포함하고 있다. 입찰 예정가와 달리 기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업별 낙찰물량과 평균 낙찰단가를 포함한 낙찰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낙찰단가를 공개하면 입찰에 떨어진 기업들이 자신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 결과에 쉽게 승복하고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신선양파 수입권공매 최종 입찰결과 공고

신선양파 수입권공매 최종 입찰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1.8(목), 1.9(금), 1.12(월) 실시한 신선양파 7,500톤 수입권공매 입찰결과

| 입찰일자    | 업체명      | 낙찰물량(톤) | 평균낙찰단가(원/톤) |
|---------|----------|---------|-------------|
| 1/8(목)  | (주)구일농산  | 216     | 150,052     |
|         | (주)굿모닝팜  | 230     |             |
|         | (주)부광씨에이 | 360     |             |
|         | 아이푸드     | 300     |             |
| 1/9(금)  | (주)구일농산  | 48      |             |
| 1/12(월) | (주)구일농산  | 72      |             |
|         | (주)굿모닝팜  | 130     |             |
|         | (유)남부농산  | 1,000   |             |
| 계       |          | 3,916   |             |

※ 업체별 낙찰결과는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http://www.atbid.co.kr))의 “나의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6장 한·EFTA TRQ 제도 검토

### 제1절 고등어 생산과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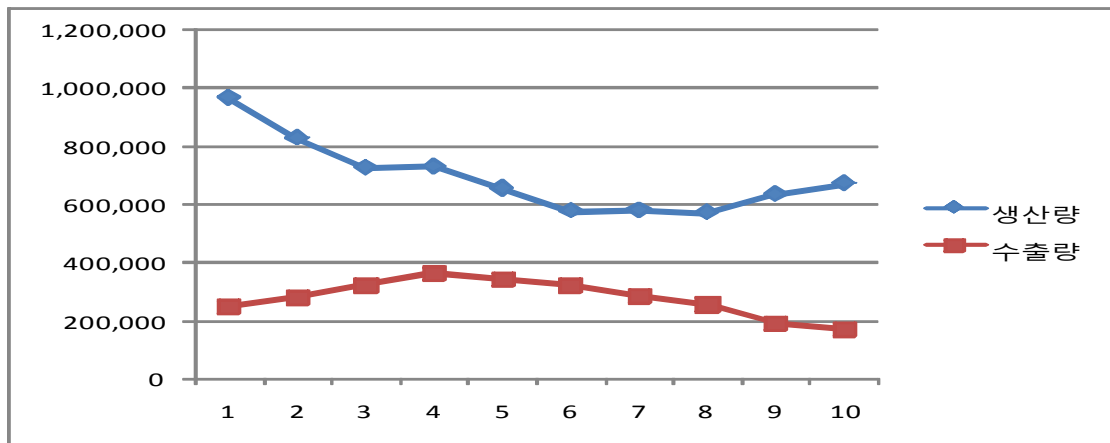
#### 1. 세계 생산과 무역

다음 표는 FAO 통계상 고등어 생산과 무역 현황이다. 영어로 고등어(mackerel)로 표현되는 품목 가운데 한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학명으로 표시된 품목(Blue mackerel, Chub mackerel, Atlantic mackerel)의 생산 및 무역현황이다.

세계 고등어 생산은 1997년 9십 8만 톤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5년과 2006년 소폭 상승하여 6십만 톤 이상 생산되고 있다. 수출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2005년과 2006년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수출은 늘지 않고 있다.

[그림 6-1] 세계 냉동 고등어 생산 및 수출 추세

(단위 : 톤)



자료 : FAO Fishstat plus

수출 단가는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05년 톤당 1.97천불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5년에 3억 7천 7백만 불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수출량과 단가가 하락하여 수출금액도 2억 8천 3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표 6-1] 세계 냉동 고등어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 연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생산량 | 968,790 | 829,120 | 728,391 | 731,936 | 655,797 | 577,369 | 580,785 | 572,518 | 635,338 | 674,181 |
| 수출량 | 250,139 | 281,254 | 323,836 | 365,156 | 346,080 | 324,460 | 289,096 | 258,566 | 191,509 | 172,788 |
| 수출액 | 319,493 | 285,128 | 254,307 | 277,464 | 326,456 | 355,241 | 313,303 | 357,709 | 377,586 | 283,712 |
| 단가  | 1.28    | 1.01    | 0.79    | 0.76    | 0.94    | 1.09    | 1.08    | 1.38    | 1.97    | 1.64    |

자료 : FAO Fishstat plus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 가운데 고등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이다. FA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TRQ 고등어를 수입하는 노르웨이는 1997년부터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0년 3만 4천 톤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평균 1만 3천톤에서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표 6-2] EFTA 국가 냉동고등어 생산 및 수출

(단위 : 천만 불, 톤)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노르웨이  | 생산량  | 245,723 | 294,643 | 329,679 | 321,619 | 290,121 | 249,319 | 224,035 | 163,294 | 138,366 |
|       | 수출량  | 245,723 | 294,643 | 329,679 | 321,619 | 290,121 | 249,319 | 224,035 | 163,294 | 138,366 |
|       | 수출금액 | 257,236 | 236,705 | 257,867 | 311,729 | 327,145 | 281,898 | 327,304 | 349,481 | 248,381 |
|       | 단가   | 1.05    | 0.80    | 0.78    | 0.97    | 1.13    | 1.13    | 1.46    | 2.14    | 1.80    |
| 아이슬란드 | 생산량  | 10,738  | 21,599  | 33,942  | 24,575  | 13,764  | 19,677  | 22,719  | 13,037  | 17,205  |
|       | 수출량  | 3,362   | 1,461   | 3,259   | 328     | 2,315   | 3,431   | 2,203   | 1,886   | 3,636   |
|       | 수출금액 | 2,174   | 649     | 1,983   | 269     | 1,953   | 2,990   | 2,005   | 1,935   | 3,953   |
|       | 단가   | 0.65    | 0.44    | 0.61    | 0.82    | 0.84    | 0.87    | 0.91    | 1.03    | 1.09    |

자료 : FAO Fishstat plus

## 2. 한국 고등어 생산과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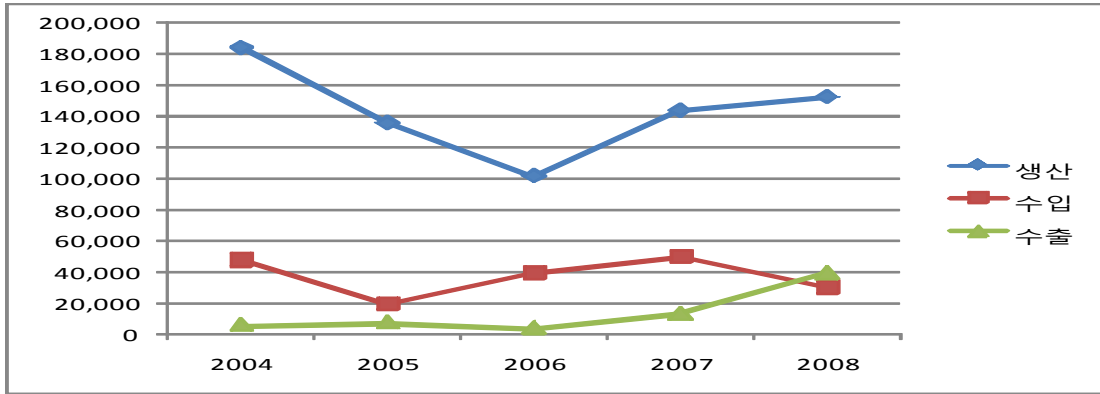
### 1) 총괄

다음 그림은 한국의 고등어 생산과 무역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고등어 생산은 2006년 10만 톤까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수출은 2007년과 2008년에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며 그 양도 4만 톤으로 역사상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여 많은 양의 고등어를 해외로 수출했기 때문이다. 고등어 수입은 4만 톤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8년에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2005년 1만 8천톤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2만 6천톤을 수입했다.

[그림 6-2] 한국의 고등어 생산과 무역현황

(단위 : 톤)



자료출처 : FAO Fishstat plus

## 2) 생산

한국의 고등어 생산량은 2001년 20만 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6년 10만 톤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2007년에는 14만 톤, 2008년에는 15만 톤을 생산하였고 2001년 이후 연평균 15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8년간의 평균 톤당 생산원가는 120만원 이다.

[표 6-3] 한국의 고등어 생산현황

(단위 : M/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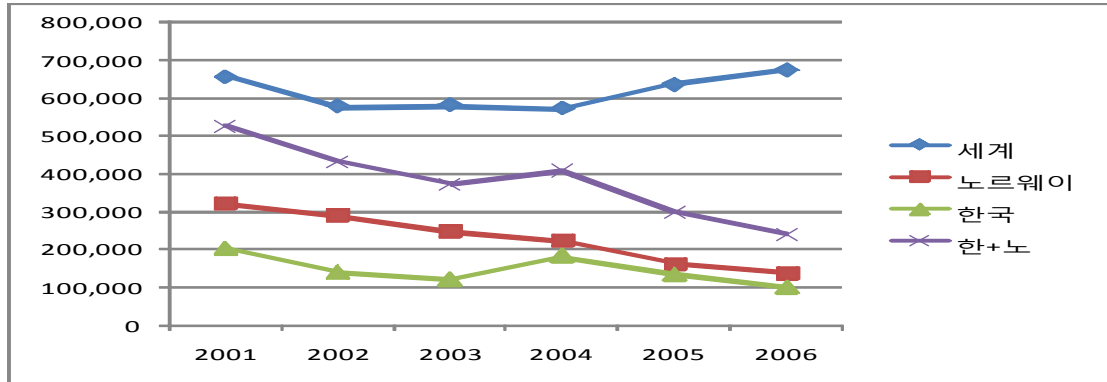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생산량 | 203,717     | 141,751     | 122,044     | 184,274     | 135,596     | 101,427     | 143,776     | 152,448     |
| 금액  | 183,370,839 | 170,776,384 | 157,906,034 | 233,855,568 | 167,381,930 | 147,817,335 | 179,313,628 | 174,602,492 |
| 단가  | 900         | 1205        | 1294        | 1269        | 1234        | 1457        | 1247        | 1145        |

자료 : 어업생산통계 <<http://fs.fips.go.kr/index.jsp>>

다음 그림은 한국과 노르웨이의 고등어의 생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노르웨이 모두 고등어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세계 고등어 생산량 가운데 한국과 노르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0%였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36%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세계 고등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르웨이와 한국의 생산량은 감소하여 세계 전체 고등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노르웨이의 생산량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2007년과 2008년 고등어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림 6-3] 한국과 노르웨이 고등어 생산현황

(단위 : 톤)



자료출처 : FAO Fishstat plus

3) 수입

다음은 한국의 고등어 수입현황이다. 수입량의 95%는 냉동고등어이며 신냉 고등어가 5%이다.

[표 6-4] 한국의 고등어 수입현황

(단위 : 톤)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냉동  | 43,444 | 45,084 | 24,323 | 18,779 | 35,185 | 34,820 | 51,175  | 45,922 | 31,014  | 28,561 | -20,161 | -17,361 |
|     |        | 0.96   |        | 1.30   |        | 1.01   |         | 1.11   |         | 1.09   |         |         |
|     | 90.8%  | 94.5%  | 94.1%  | 96.2%  | 83.1%  | 87.9%  | 90.4%   | 92.3%  | 89.5%   | 94.5%  |         |         |
| 신냉  | 4,040  | 2,585  | 1,152  | 675    | 6,631  | 4,619  | 4,679   | 3,533  | 3,279   | 1,546  | -1,400  | -1,987  |
|     |        | 1.56   |        | 1.71   |        | 1.44   |         | 1.32   |         | 2.12   |         |         |
|     | 8.4%   | 5.4%   | 4.5%   | 3.5%   | 15.7%  | 11.7%  | 8.3%    | 7.1%   | 9.5%    | 5.1%   |         |         |
| 통조림 | 14     | 3      | 7      | 1      | 238    | 156    | 457     | 234    | 155     | 86     | -302    | -148    |
|     |        | 4.67   |        | 7.00   |        | 1.53   |         | 1.95   |         | 1.80   |         |         |
|     | 0.0%   | 0.0%   | 0.0%   | 0.0%   | 0.6%   | 0.4%   | 0.8%    | 0.5%   | 0.4%    | 0.3%   |         |         |
| 염장  | 13     | 6      | 2      | 1      | 3      | 1      | 10      | 3      | 0       | 0      | -10     | -3      |
|     |        | 2.17   |        | 2.00   |        | 3.00   |         | 3.33   |         |        |         |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기타  | 345    | 45     | 356    | 71     | 300    | 35     | 287     | 38     | 215     | 27     | -72     | -11     |
|     |        |        |        | 5.01   |        | 8.57   |         | 7.55   |         | 7.96   |         |         |
|     | 0.7%   | 0.1%   | 1.4%   | 0.4%   | 0.7%   | 0.1%   | 0.5%    | 0.1%   | 0.6%    | 0.1%   |         |         |
| 합계  | 47,856 | 47,723 | 25,840 | 19,527 | 42,357 | 39,631 | 56,608  | 49,730 | 34,663  | 30,220 | -21,945 | -19,510 |
|     |        | 1.00   |        | 1.32   |        | 1.07   |         | 1.14   |         | 1.15   |         |         |
|     |        |        |        |        |        |        |         |        |         |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다음 그림은 한국의 고등어 수입현황이다. 2006년과 2007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5천톤 정도이다.

한국은 매년 평균 3만 4천톤 정도의 고등어를 수입하고 있다. EFTA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5백톤은 전체 연평균 수입량의 1.5%에 해당하여 영향이 크지 않다.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달러와 엔화 강세 등의 이유로 수입량이 전년대비 1만 9천톤 감소하였다. 2007년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는데 일본의 수입 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엔고(円高)의 영향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낮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1만 4천톤이 수입되었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수입 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3-4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5천 4백톤 수입되었으나 2008년에는 외환위기와 수요 감소로 연평균 수입량보다 적은 3천2백톤이 수입되었다. 2008년 중국 고등어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4백불이었는데 노르웨이 수입단가는 톤당 2300불로 약 5배 높았다.

[표 6-5]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금액      | 총량      |
| 중국   | 2,592  | 7,141  | 1,273  | 3,094  | 3,827  | 5,595  | 1,228   | 841    | 5,069   | 13,855 | 3,841   | 13,014  |
|      |        | 0.4    |        | 0.4    |        | 0.7    |         | 1.5    |         | 0.4    |         |         |
|      | 6.3%   | 16.8%  | 5.3%   | 16.9%  | 11.0%  | 16.2%  | 2.4%    | 1.8%   | 19.3%   | 52.2%  |         |         |
| 일본   | 5,199  | 7,022  | 2,032  | 4,516  | 12,982 | 19,057 | 30,819  | 33,210 | 12,078  | 8,309  | -18,741 | -24,901 |
|      |        | 0.7    |        | 0.4    |        | 0.7    |         | 0.9    |         | 1.5    |         |         |
|      | 12.6%  | 16.5%  | 8.5%   | 24.6%  | 37.4%  | 55.3%  | 60.5%   | 72.9%  | 46.0%   | 31.3%  |         |         |
| 노르웨이 | 13,180 | 8,898  | 7,285  | 3,145  | 9,651  | 4,481  | 14,266  | 7,212  | 7,342   | 3,262  | -6,924  | -3,950  |
|      |        | 1.5    |        | 2.3    |        | 2.2    |         | 2.0    |         | 2.3    |         |         |
|      | 32.0%  | 20.9%  | 30.6%  | 17.1%  | 27.8%  | 13.0%  | 28.0%   | 15.8%  | 28.0%   | 12.3%  |         |         |
| 대만   | 4,186  | 5,864  | 1,045  | 1,331  | 2,197  | 2,522  | 2,033   | 2,555  | 560     | 471    | -1,473  | -2,084  |
|      |        | 0.7    |        | 0.8    |        | 0.9    |         | 0.8    |         | 1.2    |         |         |
|      | 10.2%  | 13.8%  | 4.4%   | 7.3%   | 6.3%   | 7.3%   | 4.0%    | 5.6%   | 2.1%    | 1.8%   |         |         |
| 네덜란드 | 4,829  | 4,092  | 1,179  | 631    | 0      | 0      | 0       | 0      | 673     | 336    | 673     | 336     |
|      |        | 1.2    |        | 1.9    |        |        |         |        |         | 2.0    |         |         |
|      | 11.7%  | 9.6%   | 5.0%   | 3.4%   | 0.0%   | 0.0%   | 0.0%    | 0.0%   | 2.6%    | 1.3%   |         |         |
| 캐나다  | 2,595  | 2,123  | 1,821  | 1,170  | 1,411  | 805    | 1,252   | 983    | 337     | 190    | -915    | -793    |
|      |        | 1.2    |        | 1.6    |        | 1.8    |         | 1.3    |         | 1.8    |         |         |
|      | 6.3%   | 5.0%   | 7.7%   | 6.4%   | 4.1%   | 2.3%   | 2.5%    | 2.2%   | 1.3%    | 0.7%   |         |         |
| 영국   | 7,412  | 6,445  | 8,489  | 4,151  | 2,701  | 1,168  | 1,351   | 726    | 175     | 96     | -1,176  | -630    |
|      |        | 1.2    |        | 2.0    |        | 2.3    |         | 1.9    |         | 1.8    |         |         |
|      | 18.0%  | 15.1%  | 35.7%  | 22.6%  | 7.8%   | 3.4%   | 2.7%    | 1.6%   | 0.7%    | 0.4%   |         |         |
| 총계   | 41,226 | 42,626 | 23,800 | 18,351 | 34,743 | 34,470 | 50,949  | 45,527 | 26,234  | 26,519 | -24,715 | -19,008 |
|      |        | 0.97   |        | 1.30   |        | 1.01   |         | 1.12   |         | 0.99   |         |         |

자료출처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한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신선 고등어는 일본산이다. 2008년에는 엔고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표 6-6] 한국의 신선, 냉장(0302640000) 고등어 수입

(단위 : 톤)

| 국가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일본 | 3973 | 2537  | 1105 | 631  | 6572  | 4567  | 4677    | 3531  | 3,126   | 1,440 | -1,551  | -2,091 |
|    |      | 1.57  |      | 1.75 |       | 1.44  |         | 1.32  |         | 2.17  |         |        |
|    | 98%  | 98%   | 95%  | 93%  | 99%   | 98%   | 99%     | 99%   | 100%    | 100%  |         |        |
| 중국 | 66   | 48    | 47   | 44   | 57    | 51    | 3       | 2     | 0       | 0     | -3      | -2     |
|    |      | 1.38  |      | 1.07 |       | 1.12  |         | 1.50  |         |       |         |        |
|    | 1.6% | 1.9%  | 4.1% | 6.5% | 0.9%  | 1.1%  | 0.1%    | 0.1%  | 0.0%    | 0.0%  |         |        |
| 합계 | 4039 | 2,585 | 1152 | 675  | 6,629 | 4,618 | 4680    | 3,533 | 3,126   | 1,440 | -1,554  | -2,093 |
|    |      | 1.56  |      | 1.71 |       | 1.44  |         | 1.32  |         | 2.17  |         |        |

자료출처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 4) 수출

다음 표는 한국의 수출현황이다. 수출량의 대부분이 냉동고등어이며 신선, 통조림, 염장은 그 양이 많지 않다. 통조림 수출은 대부분 중국으로 하고 있다. 신선고등어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표 6-7] 한국의 고등어 수출현황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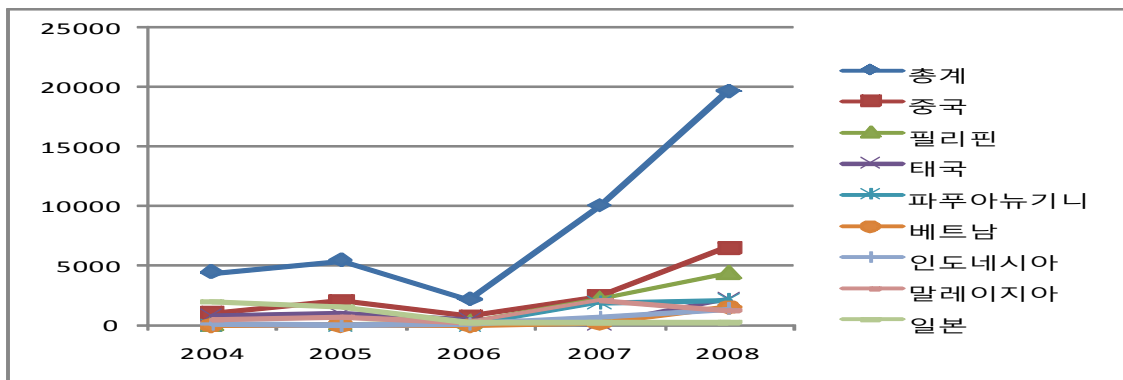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냉동  | 6,405 | 5,584 | 9,953  | 6,747 | 5,051 | 3,352 | 10,728  | 12,217 | 26,469  | 38,631 | 15,741  | 26,414 |
|     |       | 1.15  |        | 1.48  |       | 1.51  |         | 0.88   |         | 0.69   |         |        |
|     | 82.4% | 92.9% | 75.5%  | 90.1% | 68.9% | 85.6% | 78.0%   | 91.5%  | 89.7%   | 97.6%  |         |        |
| 통조림 | 334   | 167   | 450    | 186   | 481   | 226   | 908     | 746    | 1,604   | 667    | 696     | -79    |
|     |       | 2.00  |        | 2.42  |       | 2.13  |         | 1.22   |         | 2.40   |         |        |
|     | 4.3%  | 2.8%  | 3.4%   | 2.5%  | 6.6%  | 5.8%  | 6.6%    | 5.6%   | 5.4%    | 1.7%   |         |        |
| 신냉  | 205   | 38    | 949    | 186   | 405   | 94    | 705     | 142    | 390     | 78     | -315    | -64    |
|     |       | 5.39  |        | 5.10  |       | 4.31  |         | 4.96   |         | 5.00   |         |        |
|     | 2.6%  | 0.6%  | 7.2%   | 2.5%  | 5.5%  | 2.4%  | 5.1%    | 1.1%   | 1.3%    | 0.2%   |         |        |
| 염장  | 827   | 223   | 1,346  | 297   | 1,194 | 211   | 1,330   | 236    | 1,004   | 178    | -326    | -58    |
|     |       | 3.71  |        | 4.53  |       | 5.66  |         | 5.64   |         | 5.64   |         |        |
|     | 10.6% | 3.7%  | 10.2%  | 4.0%  | 16.3% | 5.4%  | 9.7%    | 1.8%   | 3.4%    | 0.4%   |         |        |
| 기타  | 2     | 0     | 489    | 75    | 196   | 34    | 86      | 15     | 42      | 9      | -44     | -6     |
|     |       |       |        | 6.52  |       | 5.76  |         | 5.73   |         | 4.67   |         |        |
|     | 0.0%  | 0.0%  | 3.7%   | 1.0%  | 2.7%  | 0.9%  | 0.6%    | 0.1%   | 0.1%    | 0.0%   |         |        |
| 합계  | 7,773 | 6,012 | 13,187 | 7,491 | 7,327 | 3,917 | 13,757  | 13,356 | 29,509  | 39,563 | 15,752  | 26,207 |
|     |       | 1.29  |        | 1.76  |       | 1.87  |         | 1.03   |         | 0.75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한국의 고등어 수출은 2006년 이전까지는 매년 5천톤 이하의 고등어를 수출했다. 2007년에는 1만 톤, 2008년에는 환율 상승 등의 원인으로 2만 톤의 고등어를 수출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필리핀, 태국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2008년 고등어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고등어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였다.

[그림 6-4]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출현황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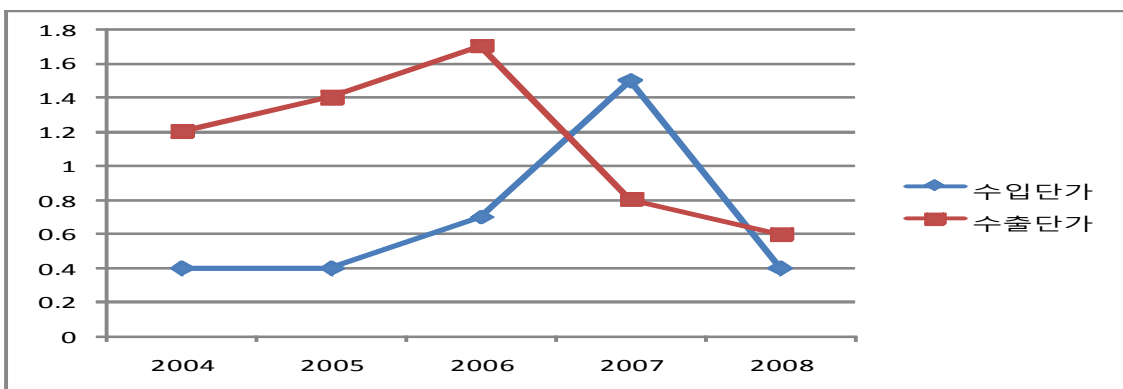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다음 그림은 고등어 수출입 단가 비교를 하고 있다. 2007년을 제외하고는 수출 단가가 항상 높았다. 크거나 품질이 좋은 고등어를 수출하고 크기가 작은 고등어를 미끼용 등으로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5] 대중국 고등어 수출입 단가 비교

(단위 : 톤)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고등어 수출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일본 등으로 중국, 일본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하면 모두 아세안 국가이다. 중국과 필리핀을 제외하면 5년

평균 수출량이 1천톤 이하이다. 일본의 수출단가는 2달러가 넘어 크기가 큰 고등어를 주로 수출했고 그 외 국가들은 단가가 비교적 낮아 적은 크기의 고등어를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8] 한국의 국가별 냉동 고등어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        | 2004  |       | 2005  |       | 2006  |       | 2007(a) |       | 2008(b) |        | 증감(b-a) |      |
|--------|-------|-------|-------|-------|-------|-------|---------|-------|---------|--------|---------|------|
|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 중국     | 1,236 | 1,008 | 2,773 | 2,016 | 1,241 | 750   | 2,037   | 2,423 | 4,170   | 6,504  | 2133    | 4081 |
|        |       | 1.2   |       | 1.4   |       | 1.7   |         | 0.8   |         | 0.6    |         |      |
|        | 15.4% | 22.7% | 33.7% | 37.5% | 41.2% | 35.4% | 25.1%   | 24.3% | 31.1%   | 33.2%  |         |      |
| 필리핀    | 46    | 65    | 57    | 79    | 140   | 284   | 1,439   | 2,280 | 2,831   | 4,425  | 1392    | 2145 |
|        |       | 0.7   |       | 0.7   |       | 0.5   |         | 0.6   |         | 0.6    |         |      |
|        | 0.6%  | 1.5%  | 0.7%  | 1.5%  | 4.6%  | 13.4% | 17.7%   | 22.8% | 21.1%   | 22.6%  |         |      |
| 태국     | 577   | 807   | 728   | 974   | 444   | 494   | 85      | 139   | 1,419   | 2,215  | 1334    | 2076 |
|        |       | 0.7   |       | 0.7   |       | 0.9   |         | 0.6   |         | 0.6    |         |      |
|        | 7.2%  | 18.2% | 8.8%  | 18.1% | 14.7% | 23.3% | 1.0%    | 1.4%  | 10.6%   | 11.3%  |         |      |
| 파푸아뉴기니 | 0     | 0     | 0     | 0     | 0     | 0     | 1,252   | 1,858 | 1,797   | 2,093  | 545     | 235  |
|        |       |       |       |       |       |       |         | 0.7   |         | 0.9    |         |      |
|        | 0.0%  | 0.0%  | 0.0%  | 0.0%  | 0.0%  | 0.0%  | 15.4%   | 18.6% | 13.4%   | 10.7%  |         |      |
| 베트남    | 2     | 2     | 53    | 45    | 1     | 0     | 58      | 211   | 795     | 1,505  | 737     | 1294 |
|        |       | 1.0   |       | 1.2   |       |       |         | 0.3   |         | 0.5    |         |      |
|        | 0.0%  | 0.0%  | 0.6%  | 0.8%  | 0.0%  | 0.0%  | 0.7%    | 2.1%  | 5.9%    | 7.7%   |         |      |
| 인도네시아  | 85    | 100   | 22    | 18    | 64    | 114   | 445     | 661   | 810     | 1,359  | 365     |      |
|        |       | 0.9   |       | 1.2   |       | 0.6   |         | 0.7   |         | 0.6    |         |      |
|        | 1.1%  | 2.3%  | 0.3%  | 0.3%  | 2.1%  | 5.4%  | 5.5%    | 6.6%  | 6.0%    | 6.9%   |         |      |
| 말레이시아  | 509   | 456   | 708   | 641   | 226   | 217   | 1,953   | 2,125 | 909     | 1,258  | -1044   | -867 |
|        |       | 1.1   |       | 1.1   |       | 1.0   |         | 0.9   |         | 0.7    |         |      |
|        | 6.3%  | 10.3% | 8.6%  | 11.9% | 7.5%  | 10.2% | 24.1%   | 21.3% | 6.8%    | 6.4%   |         |      |
| 일본     | 5,595 | 1,995 | 3,890 | 1,608 | 898   | 261   | 848     | 292   | 664     | 249    | -184    | -43  |
|        |       | 2.8   |       | 2.4   |       | 3.4   |         | 2.9   |         | 2.7    |         |      |
|        | 69.5% | 45.0% | 47.3% | 29.9% | 29.8% | 12.3% | 10.4%   | 2.9%  | 5.0%    | 1.3%   |         |      |
| 총계     | 8,050 | 4,433 | 8,231 | 5,381 | 3,014 | 2,120 | 8,117   | 9,989 | 13,395  | 19,608 | 5278    | 9619 |
|        |       | 1.8   |       | 1.5   |       | 1.4   |         | 0.8   |         | 0.7    |         |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 제2절 고등어 TRQ 관리제도 개선방안

### 1. EFTA 고등어 TRQ 영향검토

고등어 TRQ 물량 500톤이 한국의 전체 고등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 2008년 2%로 매우 낮다. 2007년과 2008년 한국이 수입한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 물량에서 TRQ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 2008년 15%였다. 2008년에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이 적었던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의 하락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6-9] 고등어 TRQ 물량 비중

(단위 : 톤)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수입량      | 47,723 | 19,527 | 39,631 | 49,730 | 30,220 |
| 노르웨이 수입량  | 8,898  | 3,145  | 4,481  | 7,212  | 3,262  |
| TRQ 수입량   |        |        |        | 500    | 500    |
| TRQ 비중(%) | 전체     |        |        | 1      | 2      |
|           | 노르웨이   |        |        | 7      | 15     |

자료 :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한·EFTA 고등어 TRQ 수입 물량이 적어 국내 고등어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은 TRQ 물량이 전체 노르웨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2007년보다 8%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환율이 상승하여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업체들이 고등어 수입량을 줄였으나 EFTA 고등어 TRQ 의무수입 물량 500톤을 환율과 관계없이 수입했기 때문이다.

한·EFTA에서 고등어 TRQ 제도가 도입되어 고등어 수입량이 매년 500톤 증가겠지만 국내 고등어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국내 선망 고등어는 선어형태로 유통되고 노르웨이 고등어는 냉동 고등어 형태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선호도와 수요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전남 여수, 제주 등지에서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는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업체들이 TRQ 물량을 감안하여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이 TRQ 물량 만큼 감소하고 감소 물량은 TRQ 수입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 2. 관리제도

### 가. 근거 및 관리 고시

한·EFTA 관세율할당대상 품목은 FTA 협정 [부속서 V] 6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냉동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500톤에 대하여 5년간 실시한다.

[표 6-10] 한·EFTA [부속서 V] 제6호

|                                                                                                                                                                                                                                                                                                                                                                                                                                                                                     |
|-------------------------------------------------------------------------------------------------------------------------------------------------------------------------------------------------------------------------------------------------------------------------------------------------------------------------------------------------------------------------------------------------------------------------------------------------------------------------------------|
| <p>6. 표 3에 “TRQ”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다음에 따라 관세율 할당 제도를 적용한다.</p> <p>가. 연간 총 할당량은 500 메트릭 톤이 된다.</p> <p>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할당량 내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무세화된다.</p> <p>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할당량 외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대한민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적용된다.</p> <p>라. 가호 및 나호 목적상, 관세율할당은 수입 당사국이 시행한다. 관세율할당은 수입당사국이 수출 당사국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총 할당량 비율은 수입 당사국이 배분한다.</p> <p>마. 관세율할당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년째부터 검토한다.</p> |
|-------------------------------------------------------------------------------------------------------------------------------------------------------------------------------------------------------------------------------------------------------------------------------------------------------------------------------------------------------------------------------------------------------------------------------------------------------------------------------------|

한·EFTA 고등어 TRQ는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EFTA에서 스위스 치즈 45톤(2011년 이후 60톤)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권공매 방식에 의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표 6-11] 한·EFTA 수산물과 농산물 TRQ 비교

| 품목 구분 | HS 번호        | 기준 세율 | 관세율할당 물량 품명 | 관세율할당 물량배정방식 |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 적용수량                                 | 원산지                                          |
|-------|--------------|-------|-------------|--------------|---------------|--------------------------------------------|----------------------------------------------|
| 고등어   | 0303-74-0000 | 10    | 냉동 고등어      | 지정기관배정       |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 | 500톤(6년부터 검토)                              |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
| 치즈    | 0406.90.0000 | 36    | 기타 치즈       | 수입권공매        |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톤,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60톤 | 스위스연방                                        |

## 나. 관리방식과 관리기관

고등어 TRQ 물량 배정방식은 지정기관배정방식이며, 추천대행기관은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이다. 정부에서 고등어에 대한 TRQ 관리방식을 FTA TRQ 물량의 일반적인 관리방식인 수입권공매가 아닌 지정기관 배정방식을 채택한 근거는 협정문 제2.3조(관세) 제2항과 제3항이다.

### 제 2.3조 관세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VI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며,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3항 GATT 제3조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이고 제8조는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은 실제 비용을 초과하거나 국내 산업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인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어 TRQ 물량에 대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한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등 세금이나 실비수준의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관세 상당치에 해당하는 수입차입금 납부하게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지정기관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다. 이행현황

### 1) 절차

고등어 TRQ 이행은 구매결정(조합) → 외자구매 입찰공고 → 현지 입차 및 수입(대행사) → 추천서(조합→조합) → 공매(조합) → 수입금 사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매 결정은 조합에서 어가나 시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등어 TRQ 첫해인 2006년에는 여러 사정으로 수입을 하지 않았다. 고등어 해외구매(수입)는 조합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대행사를 통해서 한다. 대행사가 자기자본으로 선망조합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수산물검사원 검사를 마치면 조합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외자구매자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서 중 가장 낮은 톤당 금액을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시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수량이 구매수량 미만일 경우 잔량에 대하여는 차저가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7년과 2008년 모두 1개의 회사가 TRQ 고등어 500톤 전량을 대형선망수협을 대신하

여 수입하였다. 현재 입찰에서 수입까지 45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1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대행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냉동고등어 외자구매 입찰공고  
(구매번호 : 선망-2008-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품목 : 냉동고등어(HS : 0303-74-0000)
  - 나. 규격 : 400g-600g(단, 포장단량의 중심규격중 80%이상 이 450g이상이어야 함.)
  - 다. 물량 : 500톤
  - 라. 원산지 :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화국)
  - 마. 수입이행기간 : 2008년 12월 20일까지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설명 일시, 장소 : 2008년 10월 27일 14:00 본조합회의실(6층)
3. 입찰등록 마감일시, 장소 : 2008년 10월 27일 15:00 본조합사무실
4. 입찰일시, 장소 : 2008년 10월 27일 16:00 본조합회의실(6층)
5. 입찰참가 자격 : ○ 외자공급자의 물품공급약서에 외자공급자를 대리하여 입찰 및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업체.  
○ 우리수협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입찰방법 : 희망수량(최대응찰500톤, 최소응찰 50톤이상)에 의한 일반공개입찰.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함(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5)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서중 가장 낮은 톤당 금액을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시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수량이 구매수량 미만일 경우 잔량에 대하여는 차저가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입찰은 다음 공고와 같이 컨테이너 단위(23.8톤-1,190상자)로 실시한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서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참가자 순으로 물량 소진시까지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은 관세액(10%) 범위 내에서 조합에서 결정한다.

냉동고등어 공개매각 입찰공고(구매번호 : 선망-2009-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품목 : 냉동고등어(HS : 0303-74-0000)
  - 나. 규격 : 400g-600g
  - 다. 물량 : 21 컨테이너(499.8톤 - 24,990box)
  - 라. 원산지 : 노르웨이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설명 일시, 장소 : 2009년 2월 23일 14:00 본조합회의실(6층)
3. 입찰등록 마감일시, 장소 : 2009년 2월 23일 15:00 본조합사무실
4. 입찰일시, 장소 : 2009년 2월 23일 16:00 본조합회의실(6층)
5. 입찰참가 자격 : 우리수협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입찰방법 :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공개입찰 [최소 입찰 단위: 1컨테이너(23.8톤-1,190개)]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입찰유의서 제5조에 의함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10)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으로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입찰서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참가자 순으로 물량 소진시까지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수입 및 판매현황

대형선망수협에서는 2007년 노르웨이 고등어 20kg들이 24,990 상자 499.8톤을 수입했다. 수입량을 전량 공매하여 약 1억원의 판매수익을 기록했다.

[표 6-12] 고등어 수입 및 판매현황

(단위:box/20kg, 원)

|      | 수입수량   | 판매수량   | 판매대금          | 판매원가                                                                                     | 판매수익        |
|------|--------|--------|---------------|------------------------------------------------------------------------------------------|-------------|
| 2007 | 24,990 | 24,990 | 1,162,230,000 | 1,061,388,139<br>- 구매대금 : 1,007,002,038원<br>- 통관수수료 : 16,702,659원<br>- 냉장료 : 37,683,442원 | 100,841,861 |
| 2008 | 24,990 |        |               |                                                                                          |             |

2) 수익금 지출 내용

공매 수입금은 감천도매시장 고기 상자 구입, 고등어 축제 후원, 수출업체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고기 상자 구입의 경우 노조 등의 반대로 위관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없었던 감천 도매시장 플라스틱 고기 상자를 구입을 지원하여 신선도 향상,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조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거부하였으나 TRQ 판매대금으로 지원되는 고기 상자사용을 수용하였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던 부산 고등어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인원이 축제에 참가하여 고등어 소비촉진과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표 6-13] 공매 수익금 지출 내용

| 일자                 | 내역                                                                                                                      | 금액(원)      |
|--------------------|-------------------------------------------------------------------------------------------------------------------------|------------|
| 2008.04.21 ~ 04.27 | - 브뤼셀수산물전시회 참관 및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업체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br>- 노르웨이(베르겐) Austevoll 공장 어획물자동화 시스템 시찰 및 2008년 TRQ 고등어 사업을 위한 현지 업체 사전 탐방 | 16,830,106 |
| 2008.10.24         | - 감천도매시장 어상자 구입비                                                                                                        | 21,120,000 |
| 2008.11.01 ~ 11.02 | - 2008 고등어 축제 후원<br>·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주체하고 조합과 수협중앙회 등에서 후원으로 (사)아태수산 물류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고등어 축제행사 후원금                            | 50,000,000 |
| 2008.10.31 ~11.05  | - 2008 TRQ 냉동고등어 현지 업무 출장                                                                                               | 3,846,970  |



## 2. 고등어 TRQ 관리제도 검토

### 가. 관리기관

고등어 TRQ 물량은 “지정기관배정” 방식으로 수입되는데 추천대행기관인 대형선망 수협이 고등어 관세율할당 적용수량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한편 고등어 TRQ 물량을 관리하는 대형선망수협은 고등어 생산자 단체이다. 생산자 단체에 의한 TRQ 운영은 WTO TRO 관리방식 중 약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sup>27)</sup> 농산물 FTA TRQ 관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WTO TRQ의 경우 일부 품목이 농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 의한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 연합회로 대형선망 수협과 같은 직접적인 생산자 단체는 아니다.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운영은 시장개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생산자단체의 특성상 그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수입량과 수입품종, 수입시기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의 보장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에서는 고등어를 공매할 때 이익금은 관세(10%)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익금은 세관이나 국가기관이 직접 관세나 세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EFTA 협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등어 TRQ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충실히 따르려고 한다면 선착순 실수요자 배정이 가장 적합한 관리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형선망수협이 이행하는 TRQ 수입이 협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유통공사나 수협중앙회가 TRQ 물량을 관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고시검토

고등어 TRQ는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9월 제정했고 2007년 개정을 했으며 2008년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2008년 4월 개정되었다. 이 고시는 다음에서 한·EFTA 치즈 TRQ 관리를 위한 농림수산물식품부와 산림청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등의 관련 고시를 비교하여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개선 필요 사항을 정리해 본다.

27) 서진교 외 앞의 보고서 35쪽.

1) 고시 적용범위

농산물의 경우 FTA 마다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TRQ를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아세안 TRQ 물량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고시가 있다. 그런데 고등어 TRQ 관리를 위한 고시는 ‘모든 수산물 TRQ 관리’를 위한 고시 형태로 되어 있다. 고시 제정당시 수산물 TRQ 물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 만들었지만 아세안, 미국과의 FTA에서 TRQ가 도입되어 고시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TO TRQ를 관리하기 위한 고시는 하나이므로 FTA TRQ 운영을 위한 고시도 1개로 운영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시 제3조 제1항은 통일적인 고시 운영을 위한 조치였으나 현재 개별 고시를 통한 TRQ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EFTA 치즈 TRQ 운영을 위한 고시에서는 추천 대행기관이 유통공사임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
|--------------------------------------------------------------------------------------------------------------------------------------------------------------------------------------------------------------------------------------|----------------------------------------------------------------------------------------------------------------------------------------------------------------------------------------------|
| <p>제3조(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①협정관세적용물량 추천대상 품목은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이며 물량 및 세율은 별표1과 같다. 단, 가속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p> <p>②협정관세적용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부장관을 대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p> | <p>제3조(관세율할당추천품명 등) ①관세율할당추천품명,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은 별표1과 같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1의 관세율할당추천품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세율할당적용수량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p> |

2) 관리계획의 수립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어에 대한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행시기, 방법, TRQ 물량 수입여부 결정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이행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
|-------------------------------------------------------------------------------------------------------------------------------------------------------------------------------------------------------------------------------------------------------------------------------------------------------------------------------------|-------------------------|
| <p>제5조(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과 추천대행기관별로 양허 관세 적용물량을 정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과거 수입실적, 가공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장 및 가공정도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정할 수 있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통관사용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p> | <p>-</p>                |

### 3) 수익금 사용계획의 수립·승인 및 기금 설치 검토 필요

현재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고시는 제3조와 별표 1에 의한 지정기관 지정, 제10조 보고, 제13조 이행상황조사 이외는 지정기관배정에 의한 수입방식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고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천서 발급은 지정기관인 대형선망수협이 대형선망수협에게 발급하므로 전혀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향후 원활한 고등어 TRQ 이행을 위하여 수입대행자 지정, 수익금 사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 결과 보고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는 사업의 정산·결산, 수입이익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
| 제19조(사업의 정산·결산) ①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산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br>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br>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br>3. 당해 사업의 손익상황<br>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③ 삭제('06.6) |
| 제20조(수입이익금 납입) 산림조합중앙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산결과 수입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주 감귤농협은 1995년부터 오렌지를 지정기관배정방식에 의해 수입하면서 기금을 설치했다. 제주도 학계, 공무원 등으로 기금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였다. 오렌지 TRQ 물량 수입을 하면서 2회 정도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은 기금에서 충당하였다. 현재는 오렌지 TRQ 물량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아 기금을 정리한 상태이다.

### 3. 지정기관 손실방지 대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농산물 기금관리자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TRQ 물량을 지정기관배정 방식에 의해 외자구매 할 경우 구매대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출하고 판매대금도 농안기금에 납입하고 있다. 한·EFTA 고등어 TRQ 물량 수입을 통해 2008년과 2009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이익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환율과 조업실적에 따라 지정기관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농산물 TRQ 이행을 농안기금을 통해 하는 것처럼

수산물 TRQ 물량 구매자금도 수발기금에서 출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발기금 관련기관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어 TRQ 운영 지정기관인 선망조합은 고등어를 수입하여 관세액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산정하여 공매를 하고 있다. 고등어 관세가 10%로 높지 않고 수입 자유화가 되어 있어 누구나 고등어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500톤의 고등어 공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 고등어 수입을 대행하는 회사도 고등어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반비용이 노출되어 있으며 공매에 있어서 유일한 변수는 관세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수익금의 규모이다. 고등어 수입회사들은 선망수협이 대행사를 통해 수입한 고등어 공매가격이 관세액보다 높거나 관세액과 차이가 적게 책정되면 공매에 참가하지 않고 직접 수입을 한다. 고등어 수입회사들은 세계 고등어 생산국가 가운데 가격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의 고등어를 국내수요를 감안하여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어 TRQ 물량은 노르웨이에서 매년 하반기에 선망으로 어획되는 고등어 500톤을 연말에 수입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조건, 제품조건, 공매시기 등이 정해진 상황에서 환율변동, 조업상황 등에 따라 지정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 2008년의 고등어 TRQ 물량 수입시기에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TRQ 물량 수입에 따른 위험이 많이 있었다. 다행스럽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과 2월에 환율이 계속 상승하였고, 노르웨이 선망조합에 의한 고등어 생산량도 많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고등어 물량도 적어 TRQ 물량을 전량 공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TRQ 물량을 수입한 이후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업자들이 노르웨이 고등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TRQ 물량의 공매를 전량 공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시기를 늦게 잡는 방법도 있으나 보관비용 등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어 TRQ 공매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TRQ 물량에 대한 제1회 공매에서 고등어 관세 10%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책정하여 공매를 실시했으나 전량 유찰되었다. 제2회 공매에서는 관세액 범위 내에서 수익 규모를 낮게 책정하여 물량을 전량 소진할 수 있었다.

향후 고등어 TRQ 물량 공매에서 농산물과 같이 관세 차액 범위를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수입일로부터 빠른 시일(1개월 이내)에 공매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차액 범위를 결정할 때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고등어의 구입가격은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공매에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대부분 노르웨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 제반 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사전에 관세차액 범위(50-60%)를 알려주면 입찰 참여업체는 어렵지 않게 적정 공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RQ 물량 수입 시기로부터 판매 시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보관료를 포함한 비용이 증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커지게 된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으나, 향후 관세차액보다 환율이 더 많이 하락할 경우 공매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참고문헌

- 김현용, 2000, 「수산물 장기수급전망과 대책(2)」, 『수협조사월보』, 수협중앙회.
- 박동규, 2007, 「콩 생산안정 및 TRQ 물량 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박민규, 2008. 『한·아세안 수산물 관세율할당(TRQ)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운용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인하대학교.
- 임정빈, 2005, 「농산물 관세할당제도의 국제적 이행실태와 WTO 규정」, 통상법률 통권 제62호, 법무부.
- 임정빈 · 이재옥 · 어명근. 2000.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외. 2004.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외. 1993.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과급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kully W. David, *The Economics of TRQ Administration, working paper #99-6*, IATRC, 1999.
-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46 December 2008
- 관세청 무역통계(<http://www.customs.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http://www.kita.net))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
- WTO(<http://www.wto.org>)